

第147回國會 勞動委員會會議錄 第8號

大韓民國國會事務處

日 時 1989年11月14日(火)

場 所 勞動委員會

議事日程

1. 勞使紛糾中인懸案問題등에관한報告

- 가. 서울地下鐵公社
- 나. 地域醫療保險組合
- 다. 馬·昌地域勞使紛糾
- 라. 其他勞使懸案問題등

審査된案件

1. 勞使紛糾中인懸案問題등에관한報告

- 가. 서울地下鐵公社 1面
- 나. 地域醫療保險組合 1面
- 다. 馬·昌地域勞使紛糾 1面
- 라. 其他勞使懸案問題등 1面

(15時6分 開議)

○委員長 金令培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8次 勞動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니다.

오늘 會議에서는 지난 7次 委員會에서 제기되었던 勞使紛糾가 繼續中인 懸案問題 등과 관련해서 政府의 報告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서울地下鐵公社 地域醫療保險組合 馬·昌地域勞使紛糾 및 勞使連帶罷業 그리고 其他勞使懸案問題 등으로 최근 勞使紛糾와 관련된 勞動現場의 紛糾內容을 파악해서 勞使安定을 위한 衆智를 모으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政府側에서는 勞使紛糾의 實相을 소상하게 報告해 주시고 委員 여러분들께서는 자세한 質疑를 통해서 問題解決에 좋은 代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勞使紛糾中인懸案問題등에관한報告

- 가. 서울地下鐵公社
- 나. 地域醫療保險組合
- 다. 馬·昌地域勞使紛糾
- 라. 其他勞使懸案問題등

(15時8分)

○委員長 金令培 그러던 議事日程 第1項 勞使紛糾中인懸案問題등에관한報告를 上程하겠습니니다.

니다.

먼저 勞動部次官 나오셔서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勞動部次官 鄭東佑 勞動部長官께서 지금 이 시간에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 參席中이시기 때문에 부득이 次官인 제가 우선 나와서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金令培委員長님 그리고 勞動委員會 委員님 여러분!

그간 많은 勞使紛糾가 勞使 當事者의 自制的인 노력과 社會安定을 바라는 國民의 共感帶 형성 등으로 지난 6月以後 鎮靜局面에 접어들었습니다마는 근간에 發生한 地域醫療保險組合과 株式會社 同業의 勞使紛糾 등으로 委員 여러분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企業의 經營與件이 나빠짐에 따라서 一部 外國人 投資企業이 經營을 축소하거나 撤收하는 事例마저 자주 일어남으로써 勞使間의 安定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政府는 아직 타결을 보지 못하고 있는 勞使紛糾에 대해서는 조속한 時日內에 法테두리 內에서 對話와 妥協을 통해서 平和

의인 方法으로 원만히 해결되도록 最善의 노력을 다하면서 外國人 投資企業에 대해서는 正當한 事由없이 休·廢業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는 동시에 經營上 부득이한 경우라 할지라도 貨金 채권 확보와 失職勤勞者 취업보장 등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90年度의 最低貨金額도 勞使間 합의로 결정된 바 있고 앞으로 勞使關係도 國民經濟의 성장에 기여하는 方向으로 적극 지도해서 勞使自律에 의한 勞使間의 安定이 더욱 定着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委員님 여러분들께서도 계속하여 積極的인 협조를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主要懸案 勞動問題에 대해서 준비된 油印物에 의해서 所管 勞政局長으로 하여금 자세히 報告드리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勞勤部勞政局長 具然春 勞政局長입니다.

준비된 油印物에 의하여 報告드리겠습니다.

(報 告)

目 次

- I. '89勞使關係 動向
- II. 主要勞使紛糾 事例
 - 1. 서울地下鐵公社
 - 2. 地域醫療保險組合
 - 3. (株)통일 및 馬·昌地域
 - 4. 其 他
 - 가. 現代엔진工業(株)
 - 나. 現代綜合木材(株)
- III. 外國人 投資企業 休·廢業 現況 및 對策

I. '89勞使關係 動向

1. 紛糾現況

區 分	發 生	解 決	進行中
'89.11.12	1,556件	1,484	72
'88.동기	1,703	1,660	43
증 감	△ 147	△ 176	

○業種別

891(717)	417(774)	62(38)	186(174)
製造業	運輸業	鑛業	其 他
()는 前年同期			

○規模別

1,173(1,313)	241(259)	142(131)
300인 미만	300-999인	1,000인 이상

○原因別

732(922)	406(252)	78(102)	340(427)
賃金引上	團體協約締結	不當解雇	其 他

2. 主要特徵

○勞使紛糾의 大型 長期化

- 前年과는 달리 年初부터 풍산금속 현대중공업 등 産業關聯 效果가 큰 主要基幹産業에서 集中 發生

· 紛糾件數는 昨年 同期 對比 약 10%減少하였으나 製造業 紛糾 件數는 오히려 增加

· 地域別 業種別 大企業群別 連帶關爭의 增加로 紛糾가 長期化 大型化

紛糾持續日數	'87	'88	'89.10
	5.3일	10.0일	17.8일

○爭點事項의 多樣化

- 紛糾의 原因은 아직도 賃金引上등 利益紛爭이 대부분

최근 急增한 新規組合의 團體協約 관련 紛糾가 늘어나는 傾向

勞組側의 主要 要求 事項

週 44時間 勤務制 退職金 累進制

勞組 專任幹部 過多要求

- 編輯權 獨立(言論勞組) 研究自律性 保障 (研究院 勞組)

人事 懲戒過程에 勞組代表 參加 또는 事前 協議 要求등

○勞·使關係 준법관행 미정착

- 表面的으로는 法節次에 따른 勞動爭讓가 增加하는 趨勢이나

· 아직 대부분의 紛糾가 勞動爭讓 調整法 규정을 따르지 않는 不法爭讓이며

	'88	'89 (10월말 기준)
不法爭讓	80.9%	69.1% (11.8%감)

· 合法爭讓의 경우에도 充分한 交涉

과 調整을 거치기보다는 몇차례 교섭후 爭議申告를 해놓고 冷却期間이 끝나면 바로 罷業에 돌입하는 등 형식적인 節次履行 過程에 不過
·使用者에 대한 勞組側의 不當勞動行爲 救濟申請도 增加하는 傾向

'88 '89 (10월말 접수 건수 기준)
1,509건 1,811건 (20%증)

- 노사쌍방의 不法行爲 상존
 - 使用者의 不法 不當事例
 - 구사대를 動員한 組合員 暴行 拉致 勞組와해를 目的으로 한 偽裝廢業 집단해고
 - 勞組幹部 解雇 및 不利益 처분
 - 勤勞者의 暴力 破壞行爲
 - 관리직의 事業場 出入을 沮止하고 暴力 감금
 - 交渉後 合意署名한 組合長을 監禁 器物破壞와 公共施設 占據
- (金令培委員長, 盧仁煥幹事와 司會交代)

II. 主要 勞使紛糾 事例

1. 서울地下鐵公社

사업체 개요

- 소재지: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447-4
- 대표자: 한진희
- 업종: 지하철 운수업
- 근로자수: 7,100명
- 노동조합: 정윤광(구속) 5,983명(여 252명) 87.8.12설립
직무대행 최낙용(수석 부위원장)

가. 紛糾經緯

- 89.10.18 勞動部 및 中勞委會 爭議發生 申告
 - '89 賃金引上等 勤勞條件 改善
 - 3.16罷業 事後 關聯 對策
 - 拘束者 釋放 및 職位解除者 원직복직
 - 無勞動 無賃金 原則 撤回등
- '89.10.26 구속자釋放 원직복직 '89賃金鬭爭 원전 爭取 促求 組合員 總

會 開催(군자기지 1,000여명)

- '89.11.1-2 爭議行爲 與否에 대한 찬반투표 실시 爭議行爲 決議(88%)

나. 勞使合意 解決

- 89.11.2 使用者側의 要請으로 中勞委에서 중재회부 決定하였으나 당사자간의 수차 交渉 結果 11.4 勞使間 “合意覺書” 및 “89賃金協約에 따른 부대약정서” 締結
 - 賃金引上(정율 9%)
 - 안전봉사 手當 支給(월 35,000원)
 - 급식비 引上 학자금 전액 보조등
- 89.11.9 勞組規約에 따라 勞使合意事項에 대한 組合員 찬반投票 結果 4,462명 投票(투표율 78.3%) 찬성 2,491명 (찬성율 65.9%)으로 合意事項 確定 完全妥結

(參 照)

勞使 合意內容

區 分	項 目	合 意 內 容
· 3.16과업 관련사후 대책	· 구속자 및 직위 해제 자 원직 복귀 · 무노동 무 임금 원칙	· 재관계류중에 있는 직원의 원직복직 문제는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논의 유보 · 3.16과업과 4월 휴무사 용으로 유·무계 결근 처리되어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직원을 위해 12.1부터 특별근로 실시 90.1월에 지급하고 6월말에 실시한 근 무평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
· 노조활동 관련 징계 자 징계 철회		· 3.16과업이후 노조활동 과 관련하여 징계처리 자 19명과 경고 및 주의처분된 직원에 대한 인사(승급·승진)문제는 노사협의를 의하여 처리
· 3.16과업당사 경찰이 압수한 서류		· 공사가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사전에 종결되는 대로 반환되도록

區分	項目	合意內容
'89임금 인상	비품반환	노력하고 노조사무실용 T.V 비디오는 89.11 월중 공사에서 구입제공
	· 부상자 치료	· 부상자 31명에 대한 치료비 1,800만원 기 지급 그이후 계속 치료자와 현재 통원치료중인 3명에 대한 치료비 공사부담
	· 기본급	· 88.12.31 기준 기본급의 정율 9%인상 89.1.1부터 소급 적용
	· 건강관리비	· 건강관리비 위험수당
	· 위험수당	· 위험수당과 신설 지급을 요구한 조정수당을 통합하여 안전 봉사수당으로 명칭변경 89.10.1
	· 조정수당	· 부터 월 35,000원을 지급하고 통상임금에 포함
	· 급식비	· 근무형태 변경전(89.10-11월) - 일근자 : 1식 2,000원 월 25식 50,000원 - 교대 및 교번근무자 : 1식 2,000원 월 30식 60,000원 · 근무형태 변경후(89.12.1) - 일근자 : 1식 2,000원 월 25식 50,000원 - 교대 및 교번근무자 : 1식 2,000원 기준 실근무 일수기준으로 주간근무 1식 야간근무 2식 지급
· 학자 보조금	· 90.1부터 자녀 2인 한도 내에서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등록금의 100% 지급	
· 월동 보조금	· 12월중 전직원에게 70,000원 지급	
· 임금인상 지급 시기	· 기본급 안전봉사수당 급식보조비중 근무형태 변경전까지 소급분은	

區分	項目	合意內容
	· 기술자격 수당	89.11.30까지 89년도 임 금인상 기준에 의한 급여는 89.12월 급여일 지급 · 업무분야 열차조작 기능사 자격 취득자에 대한 수당문제는 90년도 기술자격 시험전까 지 별도 협의

2. 地域醫療保險組合

— 사 업 체 개 요 —

- 지역의료보험조합 : 254개소 8,689명
- 노동조합 : 14개지역(239개 지부) 7,441명

가. 主要爭點

- 醫療保險의 統合 管理
- 賃金引上等 勤勞條件 改善

나. 各 地域別 紛糾 狀況

地域別	組合員數	爭議申告日	罷業日時	最近動向
서울	1,262	10. 6	10.23	○ 10.23. 전면파업 의보 통합등 요구 가두서 명운동 전개 ○ 10.26의보통합 쟁취 및 연합회장 각성 촉구 대회 개최 ○ 10.23 평민당사 공화당사 민주당사 점거 농성후 해산 ○ 11.6-8 서울의보 전 산사무실 점거농성 ○ 11.11현재 전면 파업 중
부산	542	10.18	10.30	○ 10.27의보통합 관철 전진대회 개최 ○ 10.30이후 전면파업 각 지역별로 대기 ○ 11.8 지역내 3개 민주당사에서 농성 ○ 11.10 의보사무실 농성

地域別	組合員數	爭議申告日	罷業日時	最近動向
경남	850	10.17	11. 2	○11.2부터 전면파업 ○11.7. 의보통합 일원화 관철 촉구대회 개최 ○11.11현재 각 의보조 합 사무실에서 농성중
전북	530	10.17	11. 3	○11.3 의보통합 관철을 위한 촉구대회 개최 이후 파업 ○11.11현재 각 의보조 합사무실에서 농성중
대구	352	10.23	11. 3	○11.3 승리쟁취 출정 식 개최후 전면 파업 ○11.11현재 각 지부별 로 농성
경기	1,000	10.25	11. 6	○11.6부터 각 노조지 부별 파업(오산등 5 개지부 제외) ○11.11 현재 각 지부 별로 농성
대전	110	10.28	11.8	○11.8부터 전면 파업 ○11.11현재 각 지부별 로 농성중
인천	265	10.27	11. 9	○10.28 쟁의행위 결의 ○11.9부터 전면 파업
강원	458	10.31	11.13	○11.13부터 부분파업
제주	125	10.23	11.13	"
충남	420	10.26	-	○현재 정상근무중이나 타지역 조합의 선례 에 따를 것으로 전망

※光州·全南 忠北 등 2個地域도 금명간 爭議 發生 申告 豫想되며 慶北地域은 11.2 일 爭議申告를 하지 않기로 결의한 바 있음

다. 問題點

- 노사간의 爭點이 사용자(지역의보조합 대표)의 決定權이 없는 事項으로서 노사간 협의로 수습 될 수 없는 점
- 醫療保險 統合問題는 國家政策으로 決定될 事項
- 醫療保險組合 運營이 피보험자의 保險料와 國庫支援으로 運營
- 使用者의 勞動條件 결정권이 없음 (정부예산의 통제)

- 使用者는 시·군·구별 醫療保險組合으로 組織된 반면 勞動組合은 시·도별로 組織되어 있어 적정한 對話 窓口 미설정
- 勞使 兩側의 勞使問題 經驗 및 對 應能力 不足
- 라. 向後 指導方向
- 시·도 단위로 勞使對話 창구 마련 共同交涉 誘導
- 시·도별 사용자 단체 構成 ·군단위 의보조합 대표→5명이내의 대표를 選定하고 團體交涉 및 締結權 委任
- 地域勞動組合 대표와 선정된 사용자 대표간 團體交涉
- 醫療保險 統合 管理問題 주무부처에서 政策的으로 檢討 處理할 事項임을 勞使側에 이해 촉구
- 勞動條件 改善 事項은 주무부처에서 方針을 決定한 후 그에 따라 대화 를 통한 解決 指導

3. (株) 통일 및 馬·昌地域 가. (株) 통일

사 업 체 개 요

- 소재지: 경남 창원시 외동 853-5
- 대표자: 문성균
- 업종: 수송용 기계 기구 제조업
- 근로자수: 5,350명
- 노동조합: 진영규(구속) 3,080명 '74.2.7설립

1) 紛糾經緯

- 勞組側은 會社側과의 團體交涉 過程에서 「先 雇傭者 復職」 要求가 拒否(노조: 원직복직 회사: 협력업체 취업)되자 89.7.27이래 4차례에 걸쳐 馬山·昌原 地域에 統一敎를 誹謗하는 油印物 1만여매를 撒布하는 한편 89.8.3부터 操業中斷 및 製品搬出을 遮斷함으로써
- 통일교신도들이 노조원들과 集團衝突 勞組事務室과 會社앞에서의 철야농성(8.7-8.14간)에 이어 勞組糾彈 決意大會를 開催(8.21)하는 등 반발을 보이는 한편
- 管理職 社員들도 평소 勞組員들의 폭

언·폭행 등 모독행위에 대한 公開謝過를 要求 出勤을 拒否(8.9-8.15)하는 등 事態가 擴散됨으로써

- 會社側도 操業中斷公告(8.16)에 이어 第4工場을 協力業體인 『삼우산기』에 매각 후 勤勞者 265명을 解雇하는 등 勞使間 強硬對立이 持續

2) 最近의 動向

- 89.10.28(22:50) 業務妨害 및 暴力行爲 등으로 사전영장이 발부된 사람들의 檢擧를 위하여 公權力投入
- 89.10.29 管理職社員 出勤 操業 準備
- 89.11.2 조업재개 11.12現在 正常操業中
- 89.11.6-13까지 제4공장 매각 관련 解

雇者(265명)에 대한 勞使協議 繼續

- 4공장 매각과 관련된 부분은 노사협의 결과 89.11.13 다음과 같이 합의함
 - 퇴직과 보상금은 440만원을 11.18한 지급(통일이나 인수업체인 삼우산기에 입사 불원자)
 - 삼우산기에 입사자는 기존업사자와 동일 처우
 - 통일에 전보를 원하는 자는 T/O가 있으면 즉시 조치 T/O가 없으면 소정교육후 전보조치
 - 4공장 매각 관련 사항은 향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음
- (관계기관 고소 고발 취하)

(參 照)

3) 主要爭點

區 分	勞 組 側 要 求	使 用 者 側 代 案
○ 제4공장 매각 철회 및 원직복직	○ 1안: 매각철회 원상회복 ○ 2안: 삼우산기가 아닌 제3의 독립 법인 별도 설립 ○ 3안: 위 1·2안을 수락할 수 없을 경우 1인당 750만원 손해 배상	○ 매각고수 통일에 계속 근무 희망자는 현직중에 따라 보직부여 직종이 맞지 아니한 자는 6개월 훈련후 근무케함 - 통일 및 삼우산기가 아닌 계열협력업체 근무희망자 취업보장 - 위 두가지 안을 모두 희망치 아니한 경우 보상금으로 400만원 지급
○ 구속자 사후대책	○ 구속기간 임금지급 ○ 조기 석방 노력 ○ 석방후 원직복직 ○ 수배자 6개월간 임금지급 ○ 고소·고발 취하 ○ 더이상 구속자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	○ 1심 판결시까지 기본급 상당지급 ○ 수용 ○ 회사내 노조활동으로 인한 구속자는 원직복직 타회사 쟁의 행위 개입으로 인한 구속자는 불가
○ 임금 및 상여금 지급	○ 8.9-15: 통상임금 10% (관리직 출근 거부기간) ○ 8.10-9.3: 평균임금 70% (조업중단 기간) ○ 9.4-9.30: 미지급분 100% ○ 9월 미지급 상여금 50% 전액지급	○ 미제시 ○ 수용 ○ 미제시 ○ 8.9-9.3 생계보조비 20만원지급 ○ 미제시
○ 조업중단기간중 금품 지급	○ 주·부식대 등 3,200만원지급 ○ 회사측 손해배상 청구 (8천만원)민사소송 취하	○ 9.4-9.30 미지급분의 50% 지급 ○ 상여금은 7-9월 지급율 계산 개인별 지급을 결정
○ 출근부 제도	○ 체크리스트 제도를 노사 공동참여로 개선	○ 수용 ○ 미제시 ○ 수용검토

4) 그간의 措置事項

- 勞使兩側에 대하여 對話 및 正常作業 促求
- 本部 特別機動班 編成 現地指導(10.23-11.2)
- 會社 正常化를 위한 對策會議 開催(5회)
- 勞使協議會 開催 指導(15회)
- (株) 통일代表理事 문성균 出國禁止 措置(10.24)하고 勞動關係法 違反嫌疑로 搜查中

5) 問題點

- 公權力 投入으로 表面上 一部 部署를 除外하고 正常操業中이나 勞使兩側의 基本的인 立場에는 別다른 變化가 없음
- 제4공장 매각 철회 拘束者 事後 對策 등에 대하여 勞使協議를 계속중이나 短時日內 意見接近이 어렵다고 보임
- 會社側의 專門的인 勞務管理 能力 不足
- 現 勞組執行部 독자적인 解決 能力 未洽

6) 向後 指導方向

- 勞使兩側에 대한 감정적인 對立을 解消하고 紛糾의 후유증을 最小化하기 위하여 勞使 共同으로 會社 正常化 收拾對策委員會 構成 指導
 - 勞務管理體制 改善으로 勤勞者 不信 解消
 - 노사 공히 違反行爲가 있을 경우에는 모두 處罰한다는 雙罰原則 적용
- 나. 馬·昌地域 勞動組合 聯合會 動向

사업체 개요

- 소재지: 마산시 산호1동 7
- 대표자: 이홍석(구속중)
이종엽(직무대리 한국중천전화 조합장 역)
- 가입노조: 40개소 28,000여명
- 설립: 87.12.14

1) 最近動向

- '89.10.29(20:40) (株)통일 手配勤勞者 檢舉를 위하여 馬·昌勞聯 사무실 搜索 사전영장 발부자 5명 檢舉

- '89.10.23(21:30) (株)통일手配勤勞者 檢舉를 위하여 馬·昌勞聯 사무실 進入 幹部 19명 연행
- '89.10.23(10:50-14:10) 연행자 所屬事業場 勤勞者 600여명이 馬山東部警察署 앞에서 항의
- '89.11.1-2 個別 事業場別로 동조 파업

日 時	罷業事業場數	勤勞者數
11. 1	15개소	11,720명
11. 2	12개소	5,700명

- '89.11.2 馬·昌勞聯 運營委員會 開催 罷業中斷 決議 11.3부터 正常勤務
- '89.11.4-11.8 平民黨 馬山乙地區黨 廳舍에서 馬·昌勞聯 幹部 31명 斷食籠城 民主黨 黨舍에서 통일拘束者 手配者 家族 15명 籠城

2) 對處方向

- 일제 爭議申告 일제 罷業등의 不法行爲 中止 違法秩序 確立 指導
- 個別 事業場 勞使問題 介入 배제

4. 其他

가. 現代엔진工業(株)

사업체 개요

- 소재지: 경남 울산시 전하동 1-5
- 대표자: 김형벽
- 업 종: 선박엔진 제조업
- 근로자수: 2,150명
- 노동조합: 김정환(2,060명 '87.7.5 설립)

1) 最近動向

- '89.10.10 現代重工業(株)와의 合併說 신 문보도와 10.21 會社側의 企業 合併公告에 따라
- 勞組側에서는 企業合併 反對를 결의하고 爭議發生申告(10.21) 및 爭議行爲申告(10.31)를 한바 있으나 반러
- '89.11.12 現在 正常操業中에 있으며 繼續 勞使協議중임

2) 主要爭點

勞組側主張	使用者側代案
기업합병철회	기업합병은 경영합리화의 일환으로 불가피함

3) 그간의 指導事項

- 勞使 懇談會 開催 指導(10.19)
- 本部 特別機動班 編成 現地指導(10.23-11.12)
- 勞組側에 適法節次에 따른 爭議行爲 指導
- 會社側에 對話를 통한 解決促求

4) 向後 指導方向

- 會社에서 合併 理由를 勞動組合側이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도록 說明 指導
- 會社側에 誠意있는 對話를 통하여 問題를 解決토록 強力 促求
- '89.11.10이후 勞使協議 繼續中

나. 現代綜合木材(株)

사업체 개요

- 소재지:경남 울산시 동구 전하동 1
- 대표자:곽삼영
- 업종:목재가구 제조업
- 근로자수:2,600명
- 노동조합:이춘관(10.23사퇴 표명) 2,300명 '87.8.15설립

1) 最近動向

- '89.10.14 團體協約중 災害補償 및 豫算 基準등 14개 조항 補充協約 締結 - 反執行部側 代議員 反撥
- 反執行部側에서 組合長 退陣 要求 現 組合長 이춘관 사퇴의사 표명(10.23)
- 會社側의 不法罷業 주도자 3명에 대한 懲役解雇 決定(11.8)에 항의 組合員 200여명이 作業拒否 煽動으로 11.12이후 全面 操業 中斷 상태임
- 89.11.9부터 勞使協議 繼續中임

2) 主要爭點

- 團體協約 補充協約 締結

3) 그간의 指導事項

- 蔚山所長 및 勤勞監督課長이 勞組執行部 및 反執行부측에 대하여 對話 誘導
- 本部 特別機動班 編成 現地指導(10.23-11.2)
- 蔚山所長이 주선하여 勞使協議會 開催 會社側 代案 提示 誘導(11.9)

4) 向後 指導方向

- 勞使 兩側에 대한 對話를 통한 解決

誘導

- 團體協約 追加部分 勞使認定 및 履行 促求
- 執行部와 反執行部간의 不信 解消 指導
- 行政指導를 통한 勞使關係의 違法 慣行 定着 指導

Ⅲ. 外國人 投資企業 休·閉業 現況 및 對策

1. 投資 現況

가. 年度別 增減

- '70년대 外資導入法 輸出自由地域設置 法 시행이후 '87년까지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88년이후 원화절상 및 貨金引上등으로 하향 추세임.

年度別	事業體數	投資金額(천불)
計	1,816	5,424,589
'62~85	970	2,657,545
'86	174	210,370
'87	300	1,028,511
'88	252	1,094,901
'89	120	433,262

나. 地域別

- 外資企業은 전국적으로 分散되어 있음(마산 3.3% 이리 1.6%)

地域別	事業體數	投資金額(천불)	備考
計	1,816(100%)	5,424,589	
마산	60(3.3)	187,124	마산이리
이리	28(1.6)	2,331	지역100%
기타	1,728(95.1)	5,235,134	제조업

다. 産業別 投資 比率別

- 100% 單獨 投資業體의 277개소(15%)이며 殘餘業體는 合作投資 형태임.
- 業種別로는 製造業이 투자금액 전체의 62%를 차지

(다음 「페이지」에 계속)

(단위: 천원)

區分	總計		50% 미만		50~90%		100%	
	事業體數	投資金額	事業體數	投資金額	事業體數	投資金額	事業體數	投資金額
總計	1,816 (100%)	5,424,589 (100%)	958 (53)	1,562,147 (29)	581 (32)	2,334,521 (43)	277 (15)	1,527,921 (28%)
製造業	1,483 (82)	3,349,931 (62)	797	953,030	485	1,669,109	201	727,792
鑛業	23 (1)	7,907 (0.1)	16	3,670	3	2,757	4	1,480
其他	310 (17)	2,066,751 (37.9)	145	605,447	93	662,655	72	798,649

2. 休·廢業 現況

主要原因 分析

원화절상 輸出鈍化 貨金引上 등에 따라 기업의 採算性 악화
租稅減免 勞働爭議 規制 등 特惠要因 감소에 따라 투자유욕 감소

○ 원화절상 持續

1\$ 당 792원 684원('87대비 13.6% 절상)
'87.12.31 → '88.12.31
662원('88대비 3.2% 절상)
'89.11.12

○ 輸出增加率 계속 鈍化

36.2% → 28.4% → 4.9%(전년동기 대비)
'87 → '88 → '89.8.31

○ 貨金引上率 격증 추세(전산업)

10.1% → 15.5% → 20.2%
'87 → '88 → '89.10

○ 特惠要因 감소

外貨企業의 70% 이상이 租稅減免기간(5년) 경과

- 勞働爭議調整 特例法の 廢止 등

가. 年度別

○ 休·閉業 業體數는 '89년도에 들어와서 크게 增加 趨勢

區分	外資業體數	休·閉業 減員		勞使紛糾 發生件數	
		事業體	勤勞者		
全國	'88	1,696	4	2,784	4
	'89	1,816	31	8,224	6
馬山	'88	64	1	50	
	'89	60	17	6,163	2
裡里	'88	29	1	248	
	'89	96	1	3	1
其他	'88	1,603	2	2,486	4
	'89	1,728	11	1,433	3

나. 地域別

○ 馬山·이리지역 休·廢業率은 각각 28.3% 10.7%로서 單獨投資 集中地域으로 全國 平均 休·廢業率 1.7%보다 높음.

區分	外資業體數	計		廢業		休業		減員	
		事業體	失職勤勞者	事業體	勤勞者	事業體	勤勞者	事業體	勤勞者
全國	1,816	31	8,224	13	4,148	(3)	(708)	15	4,076
馬山	60	17	6,163	5	2,505			12	3,658
裡里	28	3	628	1	230			2	398
其他	1,728	11	1,433	7	1,413	(3)	(708)	1	20

※ () 休業 3개업체는 정상 가동중

다. 失職 勤勞者 動向

○ 실직자의 대부분은 再就業 또는 귀향(89%)하고 6개업체의 888명(11%)은

籠城 또는 사내 대기중

○ 한국피코(주) 근로자 70명은 자체적으로 인근 업체의 봉재인형 전자완구

등 인건비 하청업으로 생활

(단위: 명)

地域別	失職者數	再就業 또는 歸鄉者	籠城 또는 社內 待機者(廢·休業體)		
			事業體	勤勞者	備考
全國	8,224	7,336	6	888	
馬山	6,163	5,645	2	518	한국TC전자한국수미다전기
裡里	628	398	1	230	아세아스와니
其他	1,433	1,293	3	140	한국피코티엔디 에프코아코리아

※ 事業主 逃避 1개소(한국피코) 自國居住 5개소

라. 滯拂貨金 發生 및 清算

○ 外貨企業의 滯拂發生額은 전체(795억)의 1.75차지

○ 滯拂業體 2개소 一部勤勞者 金品受領 拒否 籠城 業體 4개소임.

('89.11.11 현재)

區分	發生	清算	未清算
事業體數(個所)	5	3	2
勤勞者數(名)	1,347	561	786
金額(백만원)	1,679 (100%)	1,370 (82)	309 (18)

滯貨業體 內譯

事業體名	勤勞者數	滯拂額	備考
計	786명	309백만원	
한국피코(주)	298	249	임대보증금과 유체동산
한국수미다 전기	488	60	1억8천만원가압류 조치 임금채권 확보가능(담보 재산 30억)

※ 金品受領 拒否 現況

(단위: 백만원)

事業體名	勤勞者數	金品總額	受領拒否	
			勤勞者數	金額
計	2,708	2,874	330	394
아세아스와니	230	340	230	340
티엔디	520	1,994	50	33
한국TC전자	1,688	280	30	6
에프코아코리아	270	260	20	15

3. 問題點

○ 企業組織 및 雇傭構造의 脆弱性

製造業體 대부분이 저력한 勞動力을 활용한 受託加工 生産方式의 勞動集約産業

대부분 企業가 공장건물 기계시설 등을 貨貸 사용
사업주가 外國人으로서 자국에 居住 또는 수시 출입하면서 事業指揮

○ 國內企業과 다른 경영전략과 屬性에 다른 문제

기업의 社會的 責任의 이행보다 현실의 利潤追求에 집착 경향

장기경영 戰略보다 단기전략을 選好하여 不況 또는 投資與件 악화시 언제라도 休·廢業 減員 단행 경향
평생 직장 개념이 희박하여 勞使和 合과 信賴形成의 어려움.

○ 주로 100% 單獨投資業體에서 休·廢業 減員 발생

貨金滯拂 발생후 自國으로 逃避하여 사업주 김거 및 노사대화 주선 관련 保有財產이 貨貸保證金 뿐으로 貨金 債權 확보의 어려움

경영상 부득이한 休·廢業의 경우에도 근로자측은 이를 受容하지 않고 僞裝廢業 不當勞動行爲를 주장하며 분규야기 장기화 경향

○ 적절한 制裁수단의 選擇 및 措置의 한계

資本開放 自由化 趨勢 및 국가간의 相互主義에 따라 국내企業과 차별대우 困難

자칫 외자기업의 철수를 촉진하여

雇傭減少 유발 우려

○외자기업의 能力과 屬性을 외면한 無理한 賃金引上 要求 등으로 투자 심리 위축

4. 展望 및 對策

(展望)

○賃金引上 수출둔화 등으로 經營與件이 惡化되고 조세감면 등 特惠要因이 감소됨에 따라

○근로자측에 過度한 慾求噴出 自制등 여건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100% 單獨投資業體중 勞動集約 業種의 休業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對策)

가. 外資企業에 대한 特別管理 指導

· 각지방관서별로 외자기업 관리대장을 별도로 비치하고 사업현황 勞使關係 動向을 매월 1회이상 정기 또는 수시점검 지도 실시

○마산·이리 수출자유지역 外國人投資企業에 대하여는 지방노동관서와 상공부 지역관리 사무소간에 매월 사업현황 등 주요 정보 교환

○紛糾要因 潛在 등 問題業體(특히 100% 단독투자업체)에 대하여 중점관리 및 豫防調整活動 적극 전개

나. 休·廢業 減員의 발생 또는 예상업체에 대한 행정지도 강화

○事前申告 및 勞使協議制 적극 活用
문제가 표면화 되기전에 사전신고 및 노사협의를 통한 해결 지도

不當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休·廢業 減員계획의 즉시 撤回 또는 取消촉구
-經營上 부득이한 경우에도

· 自然減少 操業時間 短縮 및 특별 보상금에 의한 自進退職 유도 등 後遺症 最少化 방안 강구 지도

· 高附加價値 產業으로의 業種 轉換 또는 내국인 인수운영 방안 강구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 수당 등 金品清算 조치 철저

· 퇴직금 社外積立 퇴직보험가입 등 적극 권장

○근로자측의 無理한 賃金引上 要求 등 慾求噴出 自制 지도.

다. 法違反(부당하고 체불등) 사업주에 대한 措置強化

○賃金滯拂 발생시 즉시 國內財産의 押留 등 임금채권 확보 지도

○부당한 休·廢業 減員 滯拂發生 또는 발생 예상업체로서 逃走우려시 신속하게 출국정지 요청 및 拘束搜查 協調 體制 강화

外國駐在 한국대사관 韓國駐在 外國 大使館에 협조 요청 및 관계관과 협의 등

라. 休·폐업 업체 失職者에 대한 就業斡旋 강화

○再就業 희망자에 대해 지방노동관서의 職業安定網을 통하여 우선취업 알선

○轉業 희망자는 실업자 雇傭推進 訓練 실시 후 취업알선

마. 不當 休·폐업 업체의 再投資 制限

○관련부처(재무부)와 협조 當該業體 및 系列會社의 再投資 認可 禁止

부당 休·폐업업체 블랙리스트 작성 송부

이상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盧仁煥 그러면 다음은 質疑에 들어가겠습니다.

盧武鉉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盧武鉉委員 우선 報告內容에 따른 몇가지 상세한 質問같은 것도 필요하겠습니 다만 그 외 지금 당장 문제되어 있는 몇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기타 勞使懸案問題中的의 하나로 보고 質問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現代엔진工業株式會社에 관해서 지금 勞使協商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우선 발등의 불은 끈 것 같기는 한데 앞으로 전망이 어찌 될지 매우 불투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現代엔진에 관해서 合併에 관한 그것을 勞動者들이 반대한다 이렇게만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紛糾原因을 뭐라고 보십니까?

쥬 풀어서 묻지요. 한번도 交涉이 서로 되지를 않고 爭議發生申告가 된 것인데 그리고 또 爭議發生申告가 된 이후에도 交涉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爭議行爲申告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爭議行爲決議를 하게

왔고 그리고 또 반려되었고 이런데 交渉에 들어가지도 못했던 이유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勞動部次官 鄭東佑** 企業合併 自體는 적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合併에 따라서 勤勞者들의 地位의 保障이라든지 勤勞條件의 계속유지 이런 등등에 대한 대화가 없었다 그래서 一方的인 企業의 立場에서만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勤勞者들의 방금 말씀드린 身分의 불안 또 合併以後의 자기네들 특히 勞動組合의 地位保障 이런 등등이 불만화해서 紛糾이 야기된 것 아닌가 다시 말하면 충분한 대화가 없었기 때문에 양쪽의 이해부족이 주 원인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盧武鉉委員** 그것은 압니다.

대화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쪽에서 대화를 거부했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요. 소위 團體交渉을 勞動組合側에서 요구했는데 團體協約은 이미 每年 이루어지고 있는 團體協約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平和條約 또는 平和期間의 구축을 받기 때문에 勞動者들이 一般的으로 본다면 團體協約을 위한 또는 그밖의 무엇이건간에 團體交渉을 요구할만한 사유는 形式的으로 보아서 존재하지 않는데 그것을 이유로 해서 會社에서는 團體交渉을 불용했는데 그런데 實質에 있어서 合併이라는 것이 公告되었기 때문에 勞動者들은 合併 그 자체를 문제삼기도 하고 또는 合併 自體를 인정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에 관해서 交渉을 문제삼기도 했거니와 合併이 된다고 할 적에는 勞動組合에서 合併을 인정한다고 할 적에는 合併에 따른 諸般 勞動組合의 地位와 勞動者 個個人의 地位를 또 交渉을 통해서 해결해야겠다 이렇게 요구한 것인데 그러면 合併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諸般 法律的關係 合併을 인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의 문제에서부터 이런 法律的關係는 通常의 會社經營과는 관계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는 交渉의 필요가 존재하는데 그런데도 會社에서는 다르게 해석하고 交渉을 거부했습니다. 形式的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우선 勞動部로서는 그 문제에 관해서 뭔가 行政指導를 할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日常的인 會社의 繼續과 經營을 전제로 하는 團體交渉과 勞使와의 문제와는 달리 會社의 存廢問題에 따른 非常事態에 대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勞動者이든 使用者이든 日常的인 勞使의 경험으로는 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럴때 勞動部가 지도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交渉의 문제는 떠나서 合併의 사유에 관해서 合併의 사유가 勞動部에서 보기에는 적절한 것이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적절한 것이라는 점 그리고 合併이 말하자면 經濟的으로 불가피한 것이라는 점과 또 合併이 되었을 때 勞動者들에게 身分上의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아무 불이익이 없다는 것이 勞動者들에게 제시되어 있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지요. 말하자면 勞動者가 交渉을 요구하지 않아도 좋을 만큼 제시되어 있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선 合併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勞動部가 검토한 資料를 좀 무슨 資料를 검토하셨는지 答辯을 해 주시고 그 다음 막연하게 불이익이 없다. 이것 뿐만이 아니라 組合의 地位를 어떻게 승계할 것이며 組合의 前任者의 地位는 어떻게 승계할 것이고 또 團體協約이 現代重工業과 現代엔진이 서로 다른 부분은 없었는지 그중에서 現代엔진의 團體協約이 現代重工業보다 勞動者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 승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밖에 勤續年數認定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관해서 會社에서 어떤 제시를 했는지? 勞動者들이 과연 交渉을 요구하지 않아도 될 만큼 명쾌하게 제시된 것이 있으면 한번 보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勞動部次官 鄭東佑** 자세한 資料는 書面으로 報告드리도록 하고요. 原則問題만 제가 명백히 答辯드리겠습니다.

合併自體의 當爲性보다도 合併에 따르는 適法性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不當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에 따라서 勤勞者들이나 勞動組合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겠다 盧委員님 말씀과 같이 勞動組合의 地位라든지 勤勞者 個個人의 身分保障이라든지

이런 것은 合併에 따라서 승계가 되어서 어느 쪽의 團體協約이 유리·불리하든지간에 既存條件은 불리하게 저하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원칙을 가지고 대화를 주신해서 現代엔진의 勤勞者들이 合併이 되더라도 現代重工業에 가서 既存의 勤勞條件保障... 勞動組合의 地位는 企業이 合併됨에 따라서 예를 들면 勞動組合委員長이 둘이 될 수 없는 것과 같이 그런 것은 자체 조정되어야 안 되겠습니까마는 저희들이 대화주선을 해서 최대한 勤勞者權益이나 既存條件이 저하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盧武鉉委員 지금 제가 문제삼는 것은 勞動部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 성의를 가지고 주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많은 문제들이 남아 있거든요. 지금까지 해 온 것이 과연 적절했나 하는 것을 한번 따져봐야 앞으로 대처도 效率的으로 될 것인데 合併이 정당하냐 아니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 제가 문제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合併의 正當性 여부에 관해서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고 한다면 勤勞者들의 交涉要求에는 응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合併이라는 것은 勤勞者들의 地位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平和條項에 걸리지 않는 것인데 그러니까 合併이라는 것을 놓고 交涉을 해야 되는데 會社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거부할만한 사유가 있지 않다면 勞動部에서 交涉에 임하도록 積極的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지도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盧仁煥幹事, 韓光玉幹事와 司會交代)

○勞動部次官 鄭東佑 勤勞者 자신들은 合併自體도 처음에는 正當性을 인정하려고 아니한 것 같습니다.

○盧武鉉委員 그렇습니다. 合併自體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合併自體에 관해서도 勞使間에 合併에 대해서 勤勞者의 承諾을 받아야 한다 안 한다 하는 것이 團體協約上 있든 없든 간에 合併이라는 이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勞動組合은 당연히 자기들의 權益에 관한 새로운 변화가 초래되기 때문에 그 변화에 관해서 會社와 서로 대화를 해 둘 필요가 있다. 合併이

되고 나면 대화의 상대방조차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合併契約을 체결할 때 現代엔진의 經營者로 하여금 現代重工業과 合併契約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權益을 담보해 주어야 될 것은 무엇무엇이라는 것이 現代엔진의 使用者와 現代엔진의 勞動組合間에 妥協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交涉을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중에는 또 根本的으로 合併의 妥當性 問題에 관해서도 對話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合併이 妥當性이 인정되면 실질적인 條件에 관해서 交涉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勞動部次官 鄭東佑 그렇습니다.

○盧武鉉委員 그래서 그 交涉을 요구했을 때 會社가 交涉을 거부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에 대해서 勞動部에서 취한 措置가 무엇이나는 것이지요.

○勞動部次官 鄭東佑 勞動部地方事務所에서 또 勞動部機動班이 蔚山 馬山 昌原地域에 출장을 가서 비단 現代엔진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懸案問題가 걸려있는 事業場에 강력하게 對話指導라든지 問題解決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蔚山地方事務所에서는 現代엔진에 대해서 對話周旋을 했고 또 合併의 當爲性 不可避性을 勞動組合이나 勤勞者에게 설명하도록 누차 촉구를 했는데도 활발하게 對話가 안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뒤늦게나마 지금 對話의 「테이블」에 끌어내서 양쪽이 지금 아마 터놓고 이야기를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盧武鉉委員 그것은 알겠는데 앞으로 그 對話가 결렬될 수도 있고 合意가 잘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지요. 경우에 따라서는 勤勞者들이 對話가 결렬되면 罷業을 해야될 단계에 와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때 勞動部에서는 그 罷業을 適法한 것으로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罷業을 爭議對象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爭議發生申告 또는 爭議行爲申告를 不法한 것으로 처리하시겠습니까?

○勞動部次官 鄭東佑 그것은 구체적인 爭議申告 理由나 節次나 여러가지 事項을 綜合的으로 판단해야 되겠습니까마는 企業合併 그 자체만 가지고 懸案對象이 되겠느냐 하

는 것은 다소 研究를 해보야 될 문제가 아니겠냐고 생각됩니다.

○盧武鉉委員 次官님! 얘기를 좀 쉽게 끝내기 위해서 제가 爭議發生申告 爭議의 事由가 뭐라는 것 현재 爭議가 무엇이라는 것하고 爭議行爲에 들어가게 될 때 무엇을 要求條件으로 해서 爭議行爲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대충 말씀 드릴테니까 適法與否의 判定을 미리 해주십시오.

○勞動部次官 鄭東佑 저희 논의는 그렇습니다. 그러한 極端의 事態까지 안가도록...

○盧武鉉委員 그렇지 아니하면은 오늘 제가 다른 委員님들께 대단히 쫓겨 되고 좀 패를 끼치는 일이 되더라도 저는 오늘 이 문제에 관해서 지금까지 勞動部가 해왔던 일들중에서 지설치 못했던 諸般措置에 대해서 따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勞動部次官 鄭東佑 現代엔진은 盧委員께서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애를 쓰고 계신 것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간에 나온 구체적인 措置는 보다 實務的으로 擔當局長이 잘 알테니까 실명드리도록 할까요?

○盧武鉉委員 제가 한마디 더 근본적인 前提부터 몇가지 얘기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우선 지금 交渉을 하고 있는데 交渉테이블에 안 앉으려 하는 것을 勞動部에서 積極的으로 指導해서 지금 앉고 있습니다. 交渉에 임했다고 해서 다음에 爭議의 合法性이 事後的으로 취득되는 것은 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交渉에 임하는 자세에 있어서 이미 勞動部가 爭議對象이 아니라는 判定을 내려놓고 있기때문에 勞動組合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團體交渉이 交渉으로서 勞使 쌍방간에 대등한 對話가 되고 實質的인 서로의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罷業을 할 수 있다는 可能性이 前提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合法的인 罷業은 不可能하다는 勞動部의 判定을 이미 받아놓고 있기 때문에 交渉이 힘이 없게 되지요. 交渉하나니까 社會에서는 형식적으로 그냥 사기들의 責任을 면하기 위해서 뒤에 가서 사기들의 명분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交渉에 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勞動組合쪽에서 爭議發生申告에 자기들의 爭議內容을 記載하는 것이 좀 서툴렀다거나 이런 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수정하기로 하고 오늘 어떤 法律的 견해를 좀 들어보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勞動部의 견해에 따라서 勞動者들은 지기에 맞도록 자기의 爭議發生申告를 보완하고 또 필요하다면 爭議申告도 할 수 있다는 말하자면 合法性을 보완해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政府는 勞動者들이 어떻게 하면 合法이 될 수 있는가를 명확하게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점에 관해서 지금까지 지나온 과정에 관해서는 저의 의견과 勞動部의 의견이 좀 다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勞動部 의견이 틀렸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斷言하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勞動部 의견이 틀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本質的으로 勞動者들의 爭議發生申告方式이 조금 모자랐다거나 그것이 미숙해서 그런 결론이 났다면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오늘 勞動部에서 적절하게 가르쳐 주시면 지기에 맞게 보완을 하고 그러면서도 勞動者들은 罷業으로 가지 않도록 사기들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이 罷業은 爭點自體가 勞動者들에게 그렇게 유리한 爭點이 아니기 때문에 勞動者들도 되도록이면 罷業으로 가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合法的인 길을 어떻게든 펴줘야 됩니다. 그런 것이거든요.

그리고 擔當局長께서 얘기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왜 과거의 그것이 不法이었으며 어떻게 하면 合法이 된다고 조금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전혀 길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싸워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勞動部次官 鄭東佑 알겠습니다. 一線에서 직접 취급한 一線機關의 그간의 경위를 報告드리겠습니다.

방금 盧委員께서 말씀하신 現代엔진에 대해 그간 직접 취급한 慶尙南道地方勞動委員

會의 決定內容을 報告드리겠습니다.

盧委員長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한번 확인하는 立場에서 報告드리겠습니다.

이 件에 대해서는 勞動爭議事件이 爭議目的의 既存 團體協約에 使用者는 會社를 他人에게 讓渡 또는 他會社와 合併할 시에는 勞動組合과 合意를 해야하며 雇傭承繼와 勤勞條件 團體協約 勞動組合承繼에 責任을 진다는 條項을 追加插入하기 위한... 補充協約을 아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것으로서 會社의 讓渡 또는 合併에 관한 사항은 다른 法令에 團體協約 및 勞動組合承繼에 관하여는 勞動組合法令에 各各 다른 法令에서 規定이 되어 있고 雇傭 및 勤勞條件承繼에 대해서는 勤勞基準法 등 관계되는 法令에 따라서 해결되어야 할 것이므로 勞動爭議調整法上 調整對象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慶南地方勞動委員會에서 企業合併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내려서 通報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慶南地勞委의 決定을 번복할만한 새로운 사실이나 조사가 안됐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盧委員長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들이 지금 잘 들었으니까 現地 蔚山地方事務所하고 慶南地方勞動委員會에 다시 한번 처음부터 확인해서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한번 研究해보겠습니다.

○盧武鉉委員 좋습니다. 처음 爭議發生申告가 團體協約의 補充協約을 요구했었지요?

○勞動部次官 鄭東佑 그렇습니다.

○盧武鉉委員 그래서 그 補充協約에서 勞動者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會社는 企業을 他人에게 讓渡 또는 他會社와 合併할 때는 勞動組合과 합의해야 하며 雇傭承繼와 勤勞條件 團體協約 勞動組合承繼에 責任을 진다는 내용을 추가하고자 하다 이런 것이니까?

그런데 補充協約이란 말은 아무 團體協約이란 말을 가지고 拘束을 받으니까 때때로 합시다 補充協約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合併에 따라서 合併의 필요성에 관해서 勞動組合과 협의하고 또 合併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경우 會社合併에 따르는 雇傭承繼와 勤勞條件 기타 集團의 勞使關係에 관하

여 문제를 서로 협의하기 위해서 團體交涉을 요구한다고 하면 이것이 交涉對象이 되느냐 안되느냐는 문제가 되겠지요. 그렇습니까?

○勞動部次官 鄭東佑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방금 제가 朗讀報告드린 대로 各各 該當法律에 의해서 처리될 것이지 이와 같이 내용이 爭議調整法上 交涉對象이 아니라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盧武鉉委員 그렇습니까? 하여튼 補充協約이란 부분은 조금 보류할 테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

○勞動部次官 鄭東佑 저희들 한번 더 蔚山地方事務所와 慶南地方勞動委員會에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경위를 다시 한번 추적해서 뭔가 勤勞者에게 유리한 방법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렇게 判斷된 내용을 어떻게 하겠다고 확답은 드릴 수 없지 않겠습니까?

○盧武鉉委員 勞動部에 法律解釋을 專門으로 하는 專門職員이 혹시 있습니까?

○勞動部次官 鄭東佑 各 該當 所管局에서 그 事業에 관계되는 該當法律은 다 該當局에서...

○盧武鉉委員 法務擔當官室은 없습니까?

○勞動部次官 鄭東佑 별도로 있습니다.

○盧武鉉委員 法務擔當官 지금 出席해 있습니까?

○勞動部次官 鄭東佑 아까 豫決쪽에 가있는 것 같습니다.

○盧武鉉委員 좋습니다. 調整對象문제부터 지금부터 한번 따져 봅시다. 도리없지요. 결판을 내시다. 사실 지금 어떤 狀況에 있는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서로 法律的 견해는 다르지만 지금 質問을 하고 있는 委員이 어떤 立場에 있는지는 아실 겁니다.

○勞動部次官 鄭東佑 예.

○盧武鉉委員 당장의 罷業을 보류시켜놓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저때문에 罷業이 보류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권유하고 있는 立場 아닙니까? 그렇지요? 合法的인 길 이 있으니까 보류하라 그렇게 해서 또 우선 交涉의 길이 만들어질 것 아닙니까? 만들어져 있는 이 交涉의 테이블까지 걸어서 버리고 말자는 길뿐이요 그렇다면 지금 물

러설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부터 勞動部에서 나간 諸般 訓令에 관해서 法律的으로 하나하나 따져 나가야 되겠습니다.

法解釋이 과연 勞動部에서 근무하는 所屬 公務員으로서 法務擔當官의 의견에 의해서도 옳다면 그것은 내가 넘어가겠습니다마는 法務擔當官의 견해를 놓고 한번 法務擔當官과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勞動部次官 鄭東佑 그리고 盧委員님! 이것은 慶南地方勞動委員會의 所管事項이고...

○盧武鉉委員 좋습니다. 慶南勞動委員會에서 法律解釋을 잘못했으면 문책해서 解任하십시오.

法的 素養이 부족한 사람이 地方勞動委員會委員長이라든지 審査官이라든지 調査官이라든지 이런 따위의 職責을 맡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 분명하게 어떤 責任을 물어내야 됩니다. 法的 解釋이 그저 견해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명백한 것을 잘못 解釋했을 때에는 소위 그 時代에 適用되고 있는 一般的 法理論 거의 質問이 없는 法理論 아니 一般的으로 教科書에 널리 쓰여져 있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그럴 때는 資質이 없는 겁니다. 이 문제는 정말 地方勞動委員長한테 넘기면은 地方勞動委員長的 質問問題까지 가고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勞動部次官 鄭東佑 盧委員님! 委員님 말씀을 충분히 알겠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勞動委員會의 기능이 合議制行政委員會로서 委員들의 合議體 아닙니까? 一般公務員들이 法律判斷을 하는 것이 아니고 委員들이...

○盧武鉉委員 아는데 이 판단이 잘못되었으면 그와 같이 견해를 뱀던 委員全員の 자격에 관해서도 문제를 삼아야 하고 그 사람들이 合議制 소위 準司法機關으로서 準司法的 行政을 하는 機關으로서 獨立性이 보장되어야 한다면 任命權者가 責任을 져야 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勞動部次官 鄭東佑 여기에 不服이 있으면... 그래서 2番인 中央勞動委員會가 있지 않습니까?

○盧武鉉委員 行政指導인데 어떻게 不服이 있을 수 있습니까?

○勞動部次官 鄭東佑 아니 地方勞動委員會決

定에 不服이 있으면 中央勞動委員會에...

○盧武鉉委員 그렇다 하더라도 中央勞動委員會의 하는 것은 法的인 절차의 문제고 도 대체 이런 아주 기초적인 素養조차도 문제가 되는 決定이 나왔다면 그 任命過程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人事權을 통해서 감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勞動部次官 鄭東佑 저희들이 한번 확실하게 경위를 알아보겠습니다.

○盧武鉉委員 지금 누구든지 擔當局長 나와 보세요. 擔當局長 누구니까? 法律的으로 따져봅시다. 그리고 調整에 관해서 法律教科書라도 몇개 들고 오십시오. 아무리 法律的 견해가 같다 다르다 하지만 공을 팔이라고 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나와서 答辯하십시오! 政治的인 答辯은 필요없고 基本的인 상식에 관한 答辯 세요. 調停制度의 概念에서부터 調停制度를 두고 있는 目的은 무엇이며 調停制度의 長點이 무엇인가를 얘기해 봅시다. 그리고 調停해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 調停에 不告不理의 原則이 적용되는 것인지 辯論主義가 적용되는 것인지 그것 한번 전부 原論的인 法理論까지 따져봅시다.

○勞動部次官 鄭東佑 盧委員님 이 事件의 決定을 보니까 慶南地方勞動委員會 公益委員과 勤勞者...

○盧武鉉委員 또 있습니다. 調停對象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爭議對象이 되지 않는다는 勞動部의 判定이 내려가 있지 않습니까?

○勞動部次官 鄭東佑 使用者 勞使 公益 三者 委員이 決定한 내용입니다.

○盧武鉉委員 좋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行政指導를 했고 거기에 대한 蔚山市의 質疑에 대해서 勞動部에서는 "調停對象이 아닌 것은 爭議對象이 될 수 없음" 하고 判定을 내려보냈습니다.

첫째 이 문제가 調停對象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에 관해서 아주 基本的인 法律的 素養 적어도 9級이든 8級이든 7級이든 公務員이라면 갖추어야 될만한 基本的 素養의 수준에서 얘기해 봅시다.

얘기를 하고 그리고 調停對象이 아니면 왜 爭議對象이 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한

法律的 해명도 분명하게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擔當局長이 누구니까? 次官께서 직접 答辯하시겠습니까? 제가 質問할까요? 아니면 擔當者로 하여금 答辯하게 하시겠습니까?

○勞動部次官 鄭東佑 이 件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저는 慶南地方勞動委員會의 決定에 대해서 이차라에서 可타 否타 이야기하기 보다는 이것이 어느 一般 公務員이 法律解釋을 한 것이 아니고 會議制行政委員會에서 勞·使·公益 三者委員이 하나의 決定書로서 決定한 내용이기 때문에 새로운 事由가 발견되지 않는 한 이것은 옳다고 봅니다.

다만 盧委員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다시...

○盧武鉉委員 제가 지금 質問하고 있는 것은 그 결과가 잘못되었으니 是正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行政指導일 뿐입니다. 行政指導로서 별개 문제이고 그 이후의 다른 처리가 문제인데요. 우선 1次的으로 그 決定을 번복하라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 決定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리고 그 決定過程에 어떤 政治的 고려가 들어가지 않았는지를 충분히 여기서 검토해 보고 거기에 그와 같은 기본적인 소양도 없는 決定을 내렸다면 그 문제에 관해서는 勞動部가 책임을 져야한다 무슨 책임이나하면 소위 人事權者로서의 책임을 져야된다는 것이지요. 人事權者로서의 法律的으로 어떤 책임이라기보다 人事가 적절하지 않았음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자료를 위해서 나는 그것을 번복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관해서 한번 따져보자는 것이지요.

○勞動部次官 鄭東佑 그 경위를 알아보겠습니다. 경위를 알아가지고 具體的인 資料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盧武鉉委員 좋습니다. 그 문제는 하나 제껴놓고요. 調停對象이 아니면 爭議對象이 아니라는 것은 勞動部의 견해입니다. 그에 의해서 爭議行爲申告書가 반러되었습니다. 그것은 맞지요. 調停對象이 아니면 爭議對象이 아니라는 것 이 얘기가 나온 이상 또다시 爭議가 무엇이며 調停이 무엇이며 爭議行爲가 인정되는 범위는 무엇인가를 다시한번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擔當者 나오

십시오. 調停이 뭔가를 알아봐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爭議가 뭔지를 다시 한번 알아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까 勞政局長님께서 報告書에서 報告할 때 適法節次를 준수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適法節次를 준수하지 아니한 많은 爭議行爲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나마 지금 겨우겨우... 勞動部에서 보는 관점은 그렇지 않습니까? 겨우겨우 조금조금씩 이제 違法罷業이라든지 適法節次에 따른 爭議로 뭔가 가다익 잡혀가고 수렴이 되어가고 있는 시기라고 얘기하고 또 그것이 勞動行政의 목표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適法하려는 사람에게는 法秩序 밖으로 내쫓아 버리고 어떻게 違法하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이 문제 즉 調停과 爭議에 대해서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次官께 몇마디 더 지적해서 문겠습니다.

한 企業이 合併을 하게 될 때 보통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한다고 생각합니까? 常識的으로 있을 수 있는 절차라면 아마 現代「그룹」이라면 企劃調整室에서 合併에 관한 제반 經濟的 또는 企業運營에 따르는 제반 社會的 條件 그리고 장래의 전망까지 따져서 合併의 必要性에 관해서 검토하고 合併으로서 생길 수 있는 제반 경영상의 利益과 不利益을 아주 면밀히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작업을 거쳐서 最終的인 會社의 實質的인 社主에게 檢討報告書가 올라가면 그 檢討報告書에 의해서 合併이 옳다 아니면 合併을 안하겠다 이렇게 판정을 내리는 것이 우리의 常識的인 것 아니겠습니까? 現代「그룹」이 배추장사도 아니고 시골의 닭장사도 아닙니다. 그러면 合併에 관해서 檢討하라는 指示書나 또는 구두지시로 됐다고 하더라도 合併이 될 때 앞으로 經濟的으로 正의 효과는 무엇이고 負의 효과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적어도 專門經營人 그것도 韓國의 最高水準의 專門經營人들이 檢討했다고 불만한 서류하나 보신 일이 있습니까? 勞動部에서 누구 그것 한번 검토하신 일이 있습니까? 이것이 쟁점이 되어서 전 現代「그룹」의 노동자들이 들먹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勞動部次官 鄭東佑** 현지 사무소에서 확인을 했지 않겠습니까?

○**盧武鉉委員** 제가 가서 勞動事務所 勤勞監督課長과 現代重工業 現代엔진의 각 擔當者들하고 그쪽 經營陣하고 함께 앉아서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상식아니겠느냐 그런 서류한번 보여달라 했더니 안보여 줍니다. 그런데 안보여 주는 것이 아니고 있느냐 물었더니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적이 없으니까 勞動者들에게 合併의 妥當性이 충분히 설명했을 리가 없고 그러니까 勞動者들이 合併을 노동탄압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대응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상황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勞動部에서 대응하기로는 그냥 勞動者들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물어쳐버리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이지요. 딱 종이 한 장 무엇 때문에 現代重工業중에 現代重機부분은 今年 9月1日字로 별개 회사를 설립해서 분리해 내고 또 같은 시기에 現代엔진은 통합해 내는가에 관해서 서로 이 모순된 행위에 관해서 누가 듣더라도 그리고 專門經營人이 검토해서 答辯이 나올 수 있는 자료없이 合併이 평 터져버리니까 말썽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실득력이 있는 자료 하나도 안하고 이 報告書에다가 合併은 妥當한 것으로 보이며 合併의 여부는 經營權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좋습니다. 그것은 報告書가 정확하지만 經營權이라는 개념도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 바이지만 우리 勞動部에서는 經營權이라는 개념을 굳이 아나 모시고 있는 모양이니까 그건 인정한다하더라도 그렇게 표현했다면 모르겠는데 “合併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며...” 合併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는 것에 대한 판단의 근거자료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이것 작성한 사람 누구입니까? 局長이 책임지고 작성했겠지요. 合併이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의 근거를 한번 내와 보십시오. 무엇을 가지고 판단했는가? 뒤져보지 마십시오. 근거자료가 없습니다. 經濟企劃院에도 제가 다 찾아 보았고 銀行監督院에도 다 찾아 보았고 會社에 가서도 달라고 사정을 해서 다 요구해 왔고 심지어 證券監督院까지 다 쫓아다니면서 혹시 뭐라도 나오는가 했는데 없습니다.

이만한 종이에 「컴퓨터」로 적은 것 다섯 줄 정도의 얘기이상 아무 것도 없습니다. 現代엔진과 現代重工業이 合併에 관한 合理的인 판단의 근거가 이런 종이에 다섯 줄 정도로 쓰고 그것이 合併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企業經營의 관행상 그게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노가다를 기반으로 해서 성장한 기업이기 때문에 뒷사람이 판단하면 그것 없이도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勞動部가 그것을 보고 합당하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는 것이지요. 잘 모르겠다라고 나와야지요. 報告書가... 합당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勞動部의 公務員이 行政이나 經營이나 같은 것 아닙니까? 公務員이 판단하는 과정에서 그것 한 다섯 줄 읽어보고 이 合併은 정당한 것이며 勞動運動彈壓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까? 勞動部에서는 그렇게 판단합니까? 판단한 자료 한번 내와 보십시오. 허위보고입니다. 이것은 現代「그룹」 勞動者 전체에 있어서의 큰 관심사인데 기타 상세하게 설명들은 분이 있으면 나와 말해 보세요. 現代에서 나와있는 자료 한번 읽어 보십시오. 合併의 妥當性을...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勞政局長입니다. 몇 가지 盧委員님께서 質疑하신 사항에 대해 答辯드리겠습니다. 저희가 報告書上에 現代엔진의 企業合併이 妥當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 報告를 안드렸습니다. 會社側에서 企業合併이 經營合理化의 일환으로 불가피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報告를 드렸습니다.

(韓光玉幹事, 金舍培委員長과 司會交代)

그리고 이러한 불가피성이 있다면 會社側에서 合併理由를 勞動組合側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하라고 지도했다 이렇게 報告를 드렸습니다.

○**盧武鉉委員** 그래요? 이제 그 부분에 관해서 내가 좀 앞질러 갔다고 보고 도대체 이 문제의 그 妥當性에 관한 검토를 해보신 그런 일이 있습니까? 本人이 금방 얘기했다시피 종이폭지 한장 말고...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저희 勞動部の 기능은 企業의 合併이 타당하냐 안하냐 그것은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商法의 規定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商工部

나 經濟企劃院側에서 판단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는 企業合併 자체가 타당하냐 안하냐 하는 것을 판단할 기능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에 관해서 판단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地方이나 本部나 마찬가지입니다.

○盧武鉉委員 그렇게 答辯하시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사실이 그렇습니다. 經濟企劃院에서 公正法來 側面에서 허가를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는...

○盧武鉉委員 經濟企劃院에서 公正法來 側面은 法的으로 獨占規制法에 저촉되느냐 안되느냐만을 판단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勞使間의 쟁점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예. 솔직히 말씀드리어서 企業의 合併 여부는 저희 勤勞監督官이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慶尙南道地方勞動委員會의 爭議對象이 아니라고 지도한 내용에 대해서 個人的으로는 제가 꼭 옳다 그르다 소리를 못하겠습니다마는 꼭 그 견해가 맞다고 그렇게 제가 주장은 하지 않습니다.

○盧武鉉委員 좋습니다. 어떻게 勞使間의 爭點事項인 것은 틀림 없지요?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지금 피상적으로 얘기해서 企業合併을 반대하면서 爭議를 제기했다 企業合併은 經營側面에서 經營權의 일환으로 企業經營主가 결정을 하는 것인데 企業合併을 반대하면서 爭議를 제기했다 그러면 아마 常識的으로 판단할 때에 그것이 어떻게 爭議對象이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盧委員님 말씀하신 대로 企業合併을 전제로 해서 企業合併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組合員의 처우문제라든지 전임자의 승계문제라든지 團體協約의 問題라든지 兩企業間의 근로조건이 상치될 테니까 그것을 조정하는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을 협의하기 위해서 勞使協議를 요구하고 그게 안되니까 爭議申告를 했고 그랬다면 그것을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企業合併 반대다 이렇게 決議를 해가지고 爭議申告를 냈다고 그러면 常識的으로 봐서 남득이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盧武鉉委員 爭議申告書 내용에 관해서는 조금전에 제가 물어드렸지요. 그것은 前者가 아니고 後者부분이지 않습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그런데 慶尙南道地方勞動委員會側에서는 앞에 企業合併을 반대한다 또는 企業合併을 勞使合意로 하자 이런 條項이 주로 나오니까 아마 그것이 爭議對象이 되겠느냐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꼭 그 견해에 同意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準司法機關으로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行政官吏인 제가 그것이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을 지금 할 수가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勞動部次官 鄭東佑 다시한번 알아보겠습니다.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지금 현지에서 열심히 勞使間에 창구로 끌어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盧武鉉委員 그러면 이렇게 결론을 내립시다. 조금전에 合併의 여부에 관해서도 協議하고 그것이 合併이 이루어 진다고 할 때에 여러가지 勞動條件이나 기타 組合의 지위와 승계에 관한 문제에서 勞動者들이 團體交涉을 하고 또 그것이 결렬될 경우에 適法하게 罷業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어떤 형태로든지 열어주시겠습니까? 조금전에 爭議事項을 그렇게 넣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爭議事項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든 適法한 罷業이 되도록 지도해 주시겠습니까?

○勞動部次官 鄭東佑 이 사건은 처음부터 백지에서 다시한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盧武鉉委員 그래서 지금 勞動者들도 새로 출발하기로 하고 그렇게 하면 適法한 것으로 길을 열어 주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勞動部次官 鄭東佑 결과에 따라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盧武鉉委員 설과말고 전제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요? 이것을 爭議의 事項으로 삼아서 교섭을 요구하고 또 爭議의 설차를 밝어나간다면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제반 勞動者들의 團體行動을 적법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주시겠느냐는 것이지요.

○勞動部次官 鄭東佑 이 두 會社의 合併에

따라서 現代엔진 勤勞者들의 勤勞條件의 저하나 기존 勞動組合에 대한 불이익이나 또 양쪽 團體協約의 격차로 인해서 合併당해가는 現代엔진의 勤勞條件이 그 勤勞者들에게 절대적으로 불이익해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그런 조건 때문에 문제가 제기되면 그것은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처음부터 백지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가지고……

○盧武鉉委員 勤勞者들이 더 불리한 것을 감수하면 그만이고 어떻게 有利 不利를 떠나서 소위 승계조건에 관한 문제 合併의 妥當性에 관한 검토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같이 얘기를 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승계조건이 아주 좋으면 合併에 대해서 勤勞者들이 異議를 아무도 제기하지 않겠지요. 승계조건이 나쁘면 合併에 대해서 異議를 제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서로 맞물려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내용으로 해서 서로 교섭하고 爭議節次를 밟아나가는 것에 대해서 合法的인 길을 어떻게든 열어주도록 노력하겠느냐는 얘기가지요.

○勞動部次官 鄭東佑 처음부터 그런 절차를 밟도록 지도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한다 안한다 이야기를 아직 알아보지도 않고 결론부터 이야기 하기가……

○盧武鉉委員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런 정도의 답을 肯定的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만일에 그렇지 않다면 저희로서도 여기에서 지금까지 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반력한 문제 그리고 조정대상이 아닌 것은 爭議對象이 아니라고 했던 바로 이 勞動部本部의 판단 이것을 지금 다 따져야 될 형편인데 次官께서도 곤혹스럽겠지만 저도 곤혹스럽습니다. 왜 곤혹스러우냐 여기는 저 혼자만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무리 곤혹스럽더라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勞動部次官 鄭東佑 이 문제에 관해 本部에서 직접 처음부터 백지상태에서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맡겨 주십시오.

○盧武鉉委員 그 문제는 일단 보류를 하도록 하지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저로서는 委員長님 꼭 따져야 될 것이 하나 더 있지만 時間上 제가 너무 많이 소비를 해버린 것 같아서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委員님께서 그 문제를 짚어주시면 다음에 質問 안하기로 하고 혹시 빠뜨리신다고 보면 나중에 좀 늦더라도 시간을 좀 주십시오하고 미리 청을 드리면서 제 質問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令培 盧武鉉委員께서 서로 얘기가 될만한 다른 委員님에게 부탁을 좀 해두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서로 좋겠습니다.

다음은 新民主共和黨소속의 金炳龍委員 質問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炳龍委員 지금 盧委員께서 現代엔진에 대해서 合併問題를 놓고 상당한 시간을 소비하면서 政府側과의 答辯을 주고 받고 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좀 의심나는 것이 있어서 몇가지만 次官께 質問을 드리겠습니다. 勞使間이라고 하는 것은 合併이외에도 어떠한 勞使間에 또는 會社가 돌발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올 때에는 勤勞者를 대표한 하나의 機關이 바로 勞動組合이 있기 때문에 의례적으로 또는 의무적으로 會社에 이런 변화가 있으니 협조해 달라하는 요청은 自然的으로 會社側에서도 서로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勞動組合側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盧委員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會社側에서는 백지한 장애다가 약 서너 줄 정도로 해서 合併을 하겠다 이렇게만 원칙을 세워놓고 부조건 하고 會社에서는 合併을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가운데에서 勞動組合에서는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의 會社에 크나큰 변화가 오기 때문에 勞動組合으로서도 당연히 會社와의 勞使協議를 요청할 수 있고 또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會社는 의무적으로 應해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應하지를 았았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會社가 생각하는 것은 合併은 會社가 하는 것이지 勞動組合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러한 뜻에서 협의에 應하지 았았기

때문에 수차에 걸쳐서 협의를 해보려고 하니 여기에 應하지 않아서 그렇다면 勞動組合으로써 구상을 한 것이 바로 團體協約上에 會社가 合併이라든가 큰 변화가 있을 때에는 勞使가 協議下에 한다 이런 條項을 넣으려고 해서 爭議發生申告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地方勞動委員會에서는 일단은 斡旋도 있고 調停도 있습니다. 그러면 斡旋하는 의미에서 勞動組合側과 會社側을 불러가지고 이러한 문제로 해서 爭議가 申告되었으니 勞使間에 서로가 調停을 하고 協議를 해달라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그냥 그것은 爭議要件이 되지 않는다 해서 返送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勞動部로서는 앞으로 여기에 대한 것을 철저히 내용을 조사해 가지고 是正할 수 있도록 措置해주는 것이 勞使間의 紛爭을 해소하는 데도 필요하고 또 合併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합니다. 勞動組合에서는 큰 관심거리이기 때문에 자연히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勞使間에 진지한 協議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勞動部에서 적극 그 문제에 대해서 介入을 해서 큰 紛爭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月11日 政府에서 檢察總長 主宰下에 全國의 公安部長會議를 열어서 勞使紛爭에 대해서 적극 잘잘못을 가려서 處理해라 하는 이런 會議가 있었던 것으로 紙上에 알려졌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이것은 또 하나의 勤勞者와 勞動組合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誤認하기도 쉽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연 그러면 檢察에서 앞으로 勞使問題의 어떤 부분에 介入을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勞動部 次元에서 선해를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勞動部次官 鄭東佑 저희들도 新聞에 크게 報道된 내용을 보았습니다. 방금 金委員長께서 말씀하신 대로 大檢에서 지난 11日 全國 公安部長檢事會議를 열어 가지고 그 자리에서

國家安保의 次元에서 暴力的 또는 破壞的인 不法勞使紛糾와 또 勞動現場에 침투한 地下 左翼勢力 등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하는 요지의 報道였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勞使關係에 檢察이 직접 介入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닌 것 같고 다만 國家安保를 위협하는 犯法行爲에 대해서는 公安次元에서 檢察이 엄정하게 檢察權을 行使하겠다는 하는 그러한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金炳龍委員 暴力 不法 또 安保的인 차원 이러한 부분이라고 하면 굳이 그러한 專擔班을 설치 안해도 暴力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現行犯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保安法을 위반했다면 당연히 法에 저촉되는 것 아닙니까? 이와 같은 것을 굳이 紙上에 알려가면서 뭐 專擔班을 설치해서 강력하게 團束한다... 언젠가는 團束 안했나요? 항상 團束하는 것을 뭘 그렇게 야단스럽게 특별히 檢察總長 主宰下에 그러한 會議를 했는가 하는 것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勞動部次官 鄭東佑 아시는 바와 같이 勞動事犯은 公安部所管인 것으로 알고 있고 大檢도 公安部가 있고 各 地方檢察廳에서도 公安部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公安部長들 會議에서 요즘은 여러가지 暴力 또는 破壞 이러한 事犯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한다는 그러한 내용과 함께 勞動現場의 暴力 破壞 이런 것도 좀 강력하게 대응해야 되겠고 또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일부 急進 左傾勢力이 産業現場에 일부 침투되어 있다 이런 情報 등 심각한 것으로 檢察에서는 이해한 나머지 國家體制 守護 次元에서 꼭 필요하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各 公安部長들에게 지시한 내용이 報道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炳龍委員 그리고 勞使紛爭이라고 하는 것이 勞使가 서로가 利害關係가 걸려 있기 때문에 때로는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勞使紛爭입니다. 이렇게 어떠한 權力機關에서 介入하는 것보다는 勞動部가 직접 나서서 勞使間의 交涉過程에서 또는 돌발적으로 어떠한 불행한 罷業이나 이런 것이 일어났을 때에 勞動部가 직접 나서서 그러한 문제는 잘잘못을 가려주면서 어떠한 폭

력적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勞動部가 책임지는 이러한 방향에서 權力機關이 앞장서는 것보다는 勞動部가 직접 介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협산社の 勞組員 이재호씨가 10月28日 저녁에 勞組關聯相談을 마치고 歸家중에 피습을 당해서 死亡한 사실이 있는데 여기에 관한 모든 현황 그리고 그 당시에 勞使間에 어떠한 문제를 상담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政府에서 아는 범위에서 答辯해 주시길 바랍니다.

○**勞動部次官 鄭東佑** 이 문제는 지난 10月28日 17時頃에 이 사람이 退勤을 해서 仁川朱安5洞에 所在한 勞動相談所 어린이집에서 相談役인 김창기라는 사람과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法的인 勤勞時間과 또 會社側에 제시할 자기 나름대로의 建議事項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상담을 하다가 밤 8時半頃에 隣近酒店으로 자리를 옮겨가지고 밤 12시가 다 되도록 술을 마시다 헤어진 것 같습니다. 歸家하던 중에 새벽 1時 조금 못돼서 자기 집에 다 와가지고 집근처인 駐車場앞에서 身元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돌로 얼굴을 맞고 신음을 하면서 쓰러져 있는 것을 駐車場警備員이 발견을 해가지고 隣近病院으로 옮겼습니다마는 불행히 死亡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金炳龍委員**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勞動部次官 鄭東佑** 결과는 이재호가 25살 먹은 젊은 청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仁川警察署에서는 隣近不良輩들의 우발적인 소행이나 또는 勤勞者들의 勞組活動을 저지하기 위한 일부 事業主의 使囑行爲가 아닌가 해서 다각도로 搜查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결론이 안나고 계속 搜查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炳龍委員** 알았습니다.

그리고 輸出自由地域의 勞使紛糾 또는 外國인들이 企業을 破産하고 도주하는 이런 例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특히 馬山 輸出自由地域에서 그런 일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勞動部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 專擔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러한 輸出自由

地域의 社會側 또는 勞組 이쪽에 좀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 企業體가 우리 韓國企業에 어느 정도 投資를 했고 또 企業이 앞으로 韓國에서 어느 정도 계속 企業을 할 것인가 하는 정도는 물론 勞動部가 해야 되겠지만 商工部 經濟企劃院에서 그러한 調査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馬山地域에 勞使間에 문제가 있었다 하면 企業을 내던지고 도주하는 예가 많이 발생되고 심지어는 企業이 중단되고 勤勞者들이 오갈데가 없고 賃金 退職金까지 못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勞動部로서는 經濟企劃院 또는 商工部와의 對策 및 後續措置를 어느 정도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勞動部次官 鄭東佑** 사실은 얼마 전에 朝鮮日報에 방금 金委員長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크게 報道가 된 적이 있습니다. 앞서 저희 職業安定局에서 2個班을 편성해서 우리나라의 輸出自由地域인 馬山과 裡里 두 군데에 그와같은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보내서 어제 돌아왔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대충 報告를 받아보니까 勞動部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商工部가 지원해야 할 일이 있고 財務部나 經濟企劃院이 稅制라든가 金融 등의 지원을 강구해야 할 것이 있고 또 고의적인 違反業體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嚴罰해야 할 것 그런 것 등등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綜合分析해서 빠른 시일내에 그 對策을 關係部處와 합동으로 강구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金炳龍委員** 그 문제는 그 정도 答辯으로써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輸出自由地域에서 企業인들이 얼마 投資도 안하고 企業이 잘 성장되고 돈을 잘 벌 때는 계속해서 하는 척하다가 잘 때는 온다 간다 말도 없이 슬그머니 도망가는 예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政府에서 수년전부터 거기에 대한 査察 내지 調査를 해서 그러한 企業들에 대해서는 그 企業主가 國內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出國停止정도는 언세라도 할 수 있는 對策을 세워놓았어야 되는데 그런 것

하나도 안세워놓고 있다가 그냥 멍하게 政府나 우리 勤勞者들이 당하고 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문제는 벌써 했어야 할 일이지만 앞으로라도 經濟企劃院하고 商工部하고 勞動部하고 어떤 委員會를 설치할 것인지 해가지고 이러한 일을 미연에 방지할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勞動部次官 鄭東佑 알겠습니다.

○金炳龍委員 여기 이 圖表를 보면 알겠지만 지금 馬·昌에서 勞使紛糾가 가장 집단적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勞動部로서는 적어도 그와같이 집단적으로 勞使紛糾가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좀더 사전에 알아가지고 직접 거기에 뛰어들어서 이런 勞使紛糾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勤勞者들이 희생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勞動部次官 鄭東佑 지금 昌原工團 馬山工團에는 專擔監督官이 常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강화해서 방금 金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받들어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金炳龍委員 현재 馬·昌에서 勞使紛糾가 집단적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오늘 勞動委員會에서 여기에 대한 調査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서로가 노력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勞動部次官 鄭東佑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令培 다음은 民主正義黨所屬 李康熙委員 質疑해 주시길 바랍니다.

○李康熙委員 懸案把握을 위해서 두 가지만 質問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地域醫療保險組合의 懸案의 問題點인데요. 우선 큰 懸案點으로 봐서 賃金引上 및 勤勞條件改善하고 醫療保險組合의 統合管理를 요구하는 것이 현재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前提條件에서 賃金引上, 勤勞條件 處遇改善의 문제가 어느 基準에 의해서 지금 이러한 요구가 있는 것인지요?

○勞動部次官 鄭東佑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醫療保險은 職場組合과 地域組合이 賃金

隔差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李康熙委員 지금 얼마 정도 나고 있습니까?

○勞動部次官 鄭東佑 제가 알기로는 아마 100對 75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다만 정확한 것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採用될 때 中央에서 一括採用해서 地域에 配定을 받아 놓으니까 같은 條件인데 採用 후의 勤勞條件에 隔差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불만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根源의인 對策은 統合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요구까지로 아마 발전되는 것 같습니다.

○李康熙委員 本委員이 파악하기에는 聯合會가 있고 職場醫療保險組合이 있고 地域醫療保險組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賃金이 聯合會가 100이라고 봤을 적에 職場醫療保險組合이 90 그리고 地域醫療保險組合이 75다 그러면 어떤 賃金引上이나 處遇改善이 100은 못 가더라도 90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한 가지 의심스러운 것은 그러면 90을 요구하는데 우리가 7月1일부터 國民皆保險이 發足함으로써 醫療保險組合이 전부 다 開設되어 가지고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때의 初賃에 비해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인지는 아니면 平均의인 賃金이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인지 파악된 것이 없습니까?

○勞動部次官 鄭東佑 물론 主務部處는 保社部입니다. 다만 저희들하고 무관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파악을 했는데요. 地域組合은 아다시피 불과 3個月 남짓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이 받고 있는 賃金水準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李康熙委員 그러면 初賃이 100對 90對 75다 이것입니까?

○勞動部次官 鄭東佑 平均이지요.

○李康熙委員 그러면 初賃의 경우는 같다는 얘기인가요?

○勞動部次官 鄭東佑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李康熙委員 初賃도 그런 차이가 나고 있습니까?

○勞動部次官 鄭東佑 지금 3個月밖에 안되기 때문에 初賃이나 平均이나 별차이가 없습니다.

○李康熙委員 아니 이 말씀은 다음 質問에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醫療保險組合에 근무하는 모든 事務職들을 聯合會에서 1년에 두 번씩 公開採用해서 그 人員을 配定하지 않습니까?

○勞動部次官 鄭東佑 그렇습니다.

○李康熙委員 그러니까 같은 聯合會에서 公開採用해 가지고 配定을 하는데 왜 이러한 給料差異가 나느냐 하는 것이 가장 不滿事項으로 지금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聯合會에서 같이 公開採用해 가지고 職場醫療保險組合이나 地域醫療保險組合이나 聯合會나 配定에 따라서 자기의 所屬이 달라지는 것은 물론 이해가 가겠지마는 處遇改善이나 給料이 달라진 데서 불만이 나온다 이것입니다. 똑같은 公採 똑같은 醫療保險組合聯合會에서 해 가지고... 그럼 그것이 初賃이 차이가 난다 하면 이것은 뭔가 公開採用의 의미나 聯合會에서 한다는 의미에 問題點이 있는 것이 아니냐 더구나 지금 勤勞條件이고 賃金改善이고 그러면 어디든 地域醫療保險이 됐든 職場醫療保險組合이 됐든 聯合會에서 配定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公開採用을 하고 적어도 選拔을 전적으로 하고 있는 聯合會會長이 賃金引上이나 處遇改善에 대한 團體協約에 대한 協商窓口로 나와 달라 우선 統合이다 이런 것은 차후고... 그런데 이것마저도 지금 안해 가지고 全國으로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정도도 聯合會會長이 적어도 人事權을 가지고 公開採用을 해서 所屬場으로 配定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權限을 가진 實務責任者로 등장을 해왔는데 이 사람들에게 대한 문제를 현 시점에서 妥協만이라도 할 수 있는 對話窓口로 나와 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응하지 않아 가지고 全國적으로 擴散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은 政府가 調整을 강하게 해야 되지않습니까?

○勞動部次官 鄭東佑 그래서 지금 保險勞聯에서는 방금 委員님 말씀과 같은 要望事項이 어제 공식으로 저희들에게 建議가 왔습니다. 保社部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保社部에서는 잘 응해주지 않으니까 勞動部에서 좀 支援해 주십시오 하고 직접 왔어요. 와서 지금 자기네들은 14個 代表와 對

話할 수 있는 그러한 交涉代表가 없다 그러나 임시로라도 우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使用者側의 交涉代表를 選定하는 방법을 聯合會 會長이나 14個 地域의 組合代表 한 4·5名 이렇게 代表團을 만들고 保險勞聯에서도 勞聯委員長과 14個 地域 代表 中 한 4·5名 이렇게 同數로 우선 對話의 窓口를 만들어서 當面問題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런 代案을 제시했는데 지금 保社部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肯定的인 자세를 보이지 않고 아마 상당히 신중히 檢討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해결된다면 勞動部로서는 같은 政府部處끼리 하도록 권유해서 積極的으로 노력해 볼 計劃입니다.

○李康熙委員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地域醫療保險組合에 대한 勞動團體의 要求事項이 당장에 給料引上이나 어떤 勤勞條件을 改善하는 데는 財源이 따라야 되니까 그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解消할 것이냐 하는 것을 책임있는 사람끼리 같이 의논하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地下鐵公社問題에 地下鐵公社社長 나오겠다 서울市長 나오겠다 나중에 國務總理까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 憂慮心에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現行 醫療保險組合法을 보니까 어떤 特採를 할 수 있는 것은 公務員勤續年限을 따져서 4級 5級 特採를 하고 나머지는 公開採用을 하도록 法으로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公開採用을 한 當事者로 가장 책임이 큰 聯合會會長이 이에 대한 對話를 하자는 것을 拒否해 가지고 지금 자꾸 全國적으로 악화되는 醫療保險組合의 문제는 적어도 우리가 福祉國家建設을 위해서 7月1日부터 시작한 지가 한 3·4個月 남짓해서 이런 문제가 오는 것은 물론 여러가지 代案이 있겠지만 部處間에 의견이 달라 가지고 이 문제가 解消 안된다는 것은 이것은 國家 一元化體系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給料 이전에 이쩌면 統合管理나 또는 賃金引上에 대한 核心問題를 해결할 수 있는 基礎案으로 아마 제시가 될 모양이니까... 제가 個人的으로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좋을지 모르지만 保社部長官한테 두 번을 전화로 직접 이에 대한 축

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 勞動部에서도 勞動組合의 現行 要求條件 입장을 정확히 판단해서 가지고 적어도... 저는 人事問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公開採用하는 것에 있어서 이것에 문제가 있다고 크게 생각하지만 뭐 여기서 人事權의 문제가 勞動部所管이 아니기 때문에 논란을 벌이지 않았습시다. 그러나 제가 여러 가지 파악해 본 결과는 人事權을 聯合會長이 갖고 公開採用해서 配定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것에 대해서도 政府 차원에서 뭔가 다시 한번 再檢討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없도록 勞動部에서 해 주시고 이번에 勞動組合團體에서 요구하는 事項은 聯合會長이 일단은 對話窓口로 한 번만 나와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만약에 聯合會長이 안 나오고 地域적으로 해라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忠南地域에 10% 引上을 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 15% 引上을 요구한다 이런 문제가 (에스컬레이트)되면 더 혼란을 가져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一元化될 수 있는 體係上으로 적어도 人事權을 가지고 公開採用하는 聯合會長이 당장 賃金引上이라는 논리보다도 뭔가 解消할 수 있는 對話窓口를 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것이 어찌면 統合管理의 기초가 될지 아니면 賃金の 偏差가 3重的으로 나는 것을 解消할 수 있는 方案이 될지 앞으로 人事權에 대한 制度問題가 改善方向이 서는 것인지 모르지만 그런 문제가 前提된으로 해서 勤勞者의 의사를 수용해 주고 또 政府나 醫療保險組合聯合會가 의사를 수용해 주어야 양쪽에 이해가 갈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對話窓口가 딱 막히는 것 같아 안타까워서 우리 勤勞者 勞動行政을 맡는 勞動部에 촉구를 드리니까 이 문제는 한번 部處間에 협력을 해서 政府차원에서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은 기왕에 오늘 醫療保險組合이 議題에 있기 때문에 강하게 요구를 드립니다. 여기서 당장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서 많은 얘기가 있지만 더이상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勞動部次官 鄭東佑**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11 [페이지] 報告書에 나와 있는 指導方向과 같이 統合問題는 政治圈에서 해결할 문제가

이기 때문에 접어두고 賃金引上이라든지 人事採用 이런 등등의 勤勞條件은 방금 李委員님 말씀대로 積極的인 對話姿勢를 가지고 우리의 指導方向에 나와 있는 대로 指導를 해 나갈 計劃입니다.

○**李康熙委員**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 문제는 아쉬움을 금치 못하고 또 많은 勤勞者 大衆 쪽에서 물론 異見은 있겠지만 나름대로의 해석이나 여러가지 생각하는 견해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만 懸案에 우리나라 勞動組合問題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아쉬움을 금치 못합니다. 지난 5日 보라매公園에서 韓國勞總集會가 있었고 그 뒤를 이어서 지난 12日 在野勞動團體의 集會가 있었는데 勞總에서 하는 集會는 허용이 됐었고 在野勞動團體가 하는 것은 政府가 源泉封鎖한다는 것이 事前에 발표가 되면서 結果的으로 源泉封鎖가 나왔습니다. 또 그 후에 여기에 따라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油印物 관계라든가 여러가지 集會에 대한 性格 主導問題라든가 또 勤勞者가 아닌 第三者의 主動的 역할로 해서 상당한 拘束者가 속출하고 또 調査對象者가 다수의 人員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으로 알아서 일단 어찌됐든 勞動問題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가 懸案點으로 등장하는 것은 무척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政府側에 묻고자 하는 것은 왜 勞動組合의 自主的 行事라고 늘 강조하고 法上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떤 性格에서 集會 前부터 政府에서 강하게 源泉封鎖로 나왔는가 하는 것에 대한 배경을 하나 설명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勞動部가 적어도 이런 문제를 勞動部로서의 어떤 行政體系的인 가름을 내는 것이 아니고 늘 公權力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公安統治다 뭐 公權力 濫發이다 이런 것이 아주 (슬로건)으로 걸어가지고 더 問題點이 되고 있는데 왜 勞動部가 있으면서 이런 것을 主導的으로 이 集會의 性格이 어떠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集會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國民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事前에 啓蒙이 안되고 源泉封鎖라는 얘기만 깔아 가지고 國民들에게 마치 勞動組合運動을 탄압

하는 그런 인상으로 자꾸 부각되는가 하는 것이 本委員의 의심입니다. 그래서 源泉封鎖하게 된 動機하고 또 그 다음에 拘束者라든가 調査者가 속출하는 문제에 따라서 그 배후가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하는 것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勞動部次官 鄭東佑** 지난 일요일날 그러니까 11月12日이 되겠습니까마는 소위 全國勞動者大會라는 集會를 源泉封鎖한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集會와 示威에 관한 法律에 의해서 治安當局에서 治安 차원에서 集會를 不許하고 不許한 集會를 不法으로 하기 때문에 源泉封鎖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날 소위 勞動者大會를 주최하는 勢力들은 그동안 不法의인 勞使紛糾를 여러 곳에서 주동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고 또 심지어는 우리가 볼 때는 産業社會에서 아주 바람직하지 아니한 그러한 많은 問題點을 안고 있는 集會를 주도한 事例가 많이 있는 등등... 그 集會結果 여러 가지 副作用을 고려해서 集會를 禁止하고 源泉封鎖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李康熙委員** 次官님! 정말 강건너 불보듯 한다고 할까 次官님께서 아마 源泉封鎖를 하고 不許한 것 같다든지 또 과거에 勞動運動을 했던 사람으로서의 問題點이 예측되게 했다 그러한 표현을 쓰시는데 勞動部는 적어도 이런 勞動團體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렇게 다른 部處에 일임해 버리고 우리 勞動部는 전혀 그에 대한 어떤 判斷基準이나 이에 대해서 정말 公權力이 하는 대로 그냥 放置하고 두고 보시는 것같은 語彙를 자꾸 쓰셔서 勞動行政이...

○**勞動部次官 鄭東佑** 우선은 源泉封鎖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다 보니까 그것은 어디까지나 集會의...

○**李康熙委員** 그러니까 勞動部 의견은 이것을 不許해야 된다는가 무엇 때문에 막아야 된다는가 허용해야 된다는가 규모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가 이런 것은 전혀 勞動行政에 는 반영이 없습니까?

○**勞動部次官 鄭東佑** 계속 答辯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한 것은 治安當局에서 集會를 不許한 배경을 제 나름대로 아는 대로 우선

먼저 報告를 드리고요. 그랬습니다마는 全勞協推進勢力들은 장소를 옮겨 가지고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大學校에서 大會를 개최하면서 순수한 勤勞者들만 한 것이 아니고 運動圈學生들과 합세해서 과격한 勞學連繫鬪爭을 전개하면서 그 날 集會가 暴力 示威 火焰瓶 등이 난부하는 그러한 集會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제가 하나 가져왔습니다마는 상당히 불온한 油印物이 나돌고 그 내용을 보면 소위 南韓社會主義勞動者聯盟 出帆 등등 굉장히 불온한 내용의 여러 가지 종류의 油印物이 발견되고 體制 否定的인 성격이 강하게 주위에 부각된 그런 일도 있고 그래서 源泉封鎖는 당연한 것으로 勞動部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이 추구하고 있는 소위 全勞協은 複數勞組를 禁止하고 있는 現行法上, 실현될 수 없는 입장인데 만일 이들이 同團體를 設立해서 申告해 올 경우에는 이것은 關係法에 의해서 저희들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반려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이고 또 勤勞者들의 自律의인 勞動運動은 확실히 合法的이고 정당할 때 保護價値가 있지만 法을 어기고 不法의인 것은 保護價値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勞動運動도 어디까지나 適法하게 정당한 방법으로 實定法에 부합되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이러한 政府의 확실한 태도를 밝힙니다. 따라서 이들이 건전한 勞動運動을 하겠다면 法에 따라 가지고 韓國勞總과 같이 하거나 아니면 法에 의해서 適法한 절차에 의해 가지고 건전한 勞動運動을 하면 저희들이 어디까지나 保護를 하지만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는 法이 保護할 수 없다는 것을 밝혀 드리고 그 주위에 여러 가지 좋지 아니한 그러한 關聯問題들 지적하셨는데 그로 해서 많은 勤勞者가 連行이 돼서 아직도 調査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현장에서 뿌려진 그러한 不穩油印物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몇가지를 수집했는데 필요하시면 나중에 會議 끝나고 參考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李康熙委員** 그럼 지금 次官님께서 源泉封鎖하게 된 배경은 複數勞組가 禁止되어 있

는 懸案에서 이러한 行事を 許容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 法的要件 하나고요. 두 번째가 勞學連繫라든가 이런 不純體制로 그런 것이 (체크)되었기 때문에 事前에 어떤 큰 물의가 나기 전에 豫防次元에서 이를 源泉封鎖했다 그거지요?

○**勞動部次官 鄭東佑** 그리고 이 集會는 순수한 勞動者 集會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분히 政治性을 띤 그러한 鬭爭的인 集會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李康熙委員** 結果적으로 순수한 勤勞者의 모임이 아니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勞學連繫라든가 이런 것이 事前 전개가 됐고 또 여기에 體制否認 油印物같은 것이 事前에 나오고 한 것에 의해서 源泉封鎖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물의가 있다는 것을 판단의 기준이 셋기 때문에 源泉封鎖했다 그것이 政府의 公式立場이시다 이거죠?

○**勞動部次官 鄭東佑** 그렇습니다.

○**李康熙委員** 그러시면 거기에서 한 가지만 더 質問을 드리겠는데요. 물론 이해를 합니다. 現行法에서 設立申告를 公式의으로 받은 勞總인데 이 勞總이 行事한 것은 法的으로 合法的이고 複數勞組가 禁止된 상태에서 그렇지 못한 勞組團體가 하는데 더군다나 거기서 우려스러운 것은 勞學連繫라든가 體制否認에 대한 油印物같은 것이 事前에 情報가 入手됨으로 해서 이것은 放置할 수 없다는 그런 차원에서 封鎖했다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앞으로 지금 勞動組合이 물론 韓國勞總 全體의으로 集約이 되어 있지만 直接的으로 地域에 産別이나 單位 勞動組合에 가면 소위 우리 委員會에서도 많이 많았던 民主勞組란 평가를 하는 勞動組合들이 현실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순수하게 그러한 民主勞組라고 우리가 과거에 일컬었던 그런 勞動組合이 勞總의 의견하고 상반된 가운데 이러한 集會를 앞으로 갖는다는 것은 어떤 性格으로 許容할 것이냐 規制할 것이냐 이런 것이 있습니까?

○**勞動部次官 鄭東佑** 民主勞組라는 것은 자기네들이 自稱 民主勞組라고 하는 것이지만 우리 勞動組合法에 民主勞組 무슨 다른 勞組 구분이 없고 다만 그 사람들이 표방하기를 民主勞組라고 합니다마는 이상하게도

民主勞組라고 표방하는 분들은 하는 행동이 과격해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勞動運動은 節次에 따라서 法에 의해서 해야되지 어떠한 다른 목적으로 紛糾을 助長하거나 그러한 脫法的인 勞動運動은 인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名稱如何를 不問하고 適法하게... 勞動者를 위한 순수한 勞動運動이라면 적극 보호를 해야 되겠지만 무슨 이름을 갖다붙이든지 하는 방법이나 목적이 그렇지 아니하면 인정안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앞으로도 강력하게 그것은 인정안할 것입니다.

○**李康熙委員** 조금 전에 次官님께서 體制否認하는 油印物이 나왔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油印物의 內容은 入手되었다니까 복사해서 한 부씩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油印物의 作成者가 파악되어 있습니까?

○**勞動部次官 鄭東佑** 소위 全勞協推進委員會에서 만든 油印物은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作成한 團體가 全勞協推進委員會 後援은 全教組 이렇게 해서 미리 뿌렸고 當日 現場에서 押收된 것은 南韓社會主義勞動者同盟 結成 내지 體制否定 南朝鮮民衆解放 이런 등등의 내용은 일부 참석한 群衆속에서 警察이 押收해서 이것을 配付하는 몇 사람을 連行해서 아직 調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康熙委員** 지금 懸案인 勞動問題뿐만 아니고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로 우리 國民들에게 公安政局이란 인상을 길게하는 것이 너무나 시대흐름에 강하게 浮刻되는 것이 조금은 아쉬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勞動問題에 따라서 특별히 勞動行政을 다루는 우리 部處가 더욱 흐름이나 이에 대한 판단을 앞장서시고 또 公安問題하고도 이런 문제가 협조는 되어야 되겠지만 勞動問題를 해결하고 지도하는 勞動部의 分명한 태도나 分명한 요구가 先行이 되었을 때만이 이런 것이 黑白의 論理로 가려질 수 있고 또 건전한 勞動組合을 하는 것을 主張하는 그런 문제에도 政府에서 源泉封鎖하는 것은 勞動運動의 彈壓같은 인상이... 현재까지도 상당한 오해를 낳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오해가 없도록 우리 勞動行政을 담당하는 部

處에서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또 어찌 되었든 이런 문제로 해서 이번에 여러가지 조사를 받거나 拘束된 문제에 있어서도 최대한의 寬容이 베풀어져서 차후에 이런 문제가 개선되어서 나오지 않도록 勞動行政에서 善處함으로 해서 차제에 國家에 協力하는 轉機를 삼을 수 있도록 우리 勞動部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勞動部次官 鄭東佑** 그렇기 때문에 11月5日 韓國勞總의 集會는 合法的으로 보호를 해서 질서있게 잘 끝났습니다. 그러나 방금 이야기되었던 12日의 소위 全勞協建設을 위한 集會는 그와 같은 결과가 된 것입니다. 그 태도는 계속 확실하게 견지될 것입니다.

○**李康熙委員** 제가 왜 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냐 하면 말이지요 물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嚴罰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어제 1,200名 連行을 해서 200名정도가 調査를 받고 있다 그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200名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닌데 하나의 集會에서 200名씩 調査를 받고 있다 하는 문제가... 어느 정도의 人員인지 내가 모르겠지만 그런 뉴스를 접했을 때 이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서 조금 그런 인원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해서 기준을 정해서 選別해서 많은 犧牲者가 나오도록 함으로써 오히려 우리나라의 勞動運動이 發展的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政府側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勞動部次官 鄭東佑** 알겠습니다. 지금 連行 調査중인 사람이 勤勞者뿐만 아니고 學生이라든지 다른 身分을 가진 사람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令培** 開議한 지 2時間半 經過했습니다. 答辯을 해야 되는 次官이하 勞動部 幹部 여러분들... 우리가 다 心情的으로 아는 事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잠시 停會하겠습니다.

(17時22分 會議中止)

(17時59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令培**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平和民主黨所屬 韓光玉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光玉委員 韓光玉委員**입니다.

한 時代에 胎動한 政權은 하나의 歷史를 창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胎動된 政權은 歷史가 평가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 평가의 기준은 그 政權이 과연 國民의 편에 서서 政策을 수행하고 있느냐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생각할 때 現政府의 勞動政策을 보면 과연 勞動部가 勞動者뿐만 아니라 순수한 勞使關係 위주로 해서 나름대로 自律的으로 勞動政策을 펴고 있느냐고 생각할 때 대단히 의문이 갑니다. 어떻게 보면 勞動部가 失蹤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가?

勞動政策은 安企部나 檢察 警察이 「이니셔티브」를 잡고 사용자편에서 公權力으로 勞動者들의 生存權鬭爭을 오히려 억압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産業化로 가는 길목에서 自主的이고 民主的인 勞組運營으로 産業民主主義가 이루어져서 勞使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勞動部는 公安當局과의 連結고리를 끊고 사용자와 근로자의 中間立場에서 진정한 調整者가 되어야만이 지금 全國的으로 전개되고 있는 勞使紛糾가 해결될 것이 아닌가 또 일시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아도 그와 같은 자세와 그와 같은 정신을 가지고 勞動問題를 다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면 지난번에 10月27日 아마 靑瓦臺가 주최한 勞動關係長官會議의 決定事項을 인용해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勞動鬭爭을 사전에 방지하고 産業平和를 정착시키기 위해 앞으로 生産現場에서의 폭력 및 脫法行爲를 國法秩序維持 次元에서 現場拘束과 法定最高刑으로 엄단한다” 이런 結論을 도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제가 일일이 예를 들지 않아도 馬·崑地域을 비롯해서 全國的으로 수많은 勞使紛糾가 일어났고 勞使紛糾가 일어난 地域은 어김없이 公權力이 투입되어서 지금 오히려 그동안 勞動問題가 원만하게 해결되고 또 勞使間에 紛糾도 해결되어서 과도기적인 勞使紛糾 형태가 이제 漸進的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한걸음 한걸음 나가는 것으로 알았는데 오히려 거꾸로 5共때에 저질러졌던 그와 같은 公安統治 다시 말씀드리어서 勞使紛糾를 다루는 솜씨가 대단히 不

合理하고 힘의 論理가 적용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먼저 總括的으로 勞動部에서는 우선 公安當局과의 연결을 끊고 勞動部 獨自的으로 勞動問題를 다룰 용의가 있는가를 먼저 묻고자 합니다.

○勞動部次官 鄭東佑 答辯드리겠습니다.

모든 勞使問題는 勞動部가 勞動行政主務部處로서 책임을 지고 주도적으로 다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産業現場에서 不法暴力破壞 이와 같은 治安秩序紊亂이나 또는 公安次元에서 公權力이 개입되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는 勞動部가 직접 감당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限界를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순수한 勞動運動 合法的인 勞使關係 勞動行政次元에서 우리가 해야 할 문제는 전적으로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다루겠지만 뒤에 말씀드린 그런 문제는 勞動部の 行政的인 所管이 아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韓光玉委員 그런데 문제는 勞使紛糾의 원인과 배경에 있습니다.

지금 次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勞動現場에서 不法的인 勞動運動은 法에 따라서 措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가 不法的인 勞動運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合法的인 勞動運動을 전제로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보면 勤勞者들이 과격한 行動이 나올 수밖에 없지않았나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勤勞者들은 使用者와 對話와 妥協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지마는 使用者側에서 一方的으로 과거와 같이 主從關係의 시각으로 勤勞者들을 대하기 때문에 말로 안된다 -對話가 안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에 그들은 불가피하게 自救手段으로 行動이 과격해진 양상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勤勞者들의 行動이 조금 과격하다손치더라도 法은 공평하게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과연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法이라고 하는 것이 使用者와 勤勞者간에 공정하게 적용이 되었느냐 심각한 반성이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勤勞者들에게 과연 勞動關係法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느냐 하고 물었을

적에 어느 勤勞者치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對答하는 勤勞者는 한 사람도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法을 弱者인 勤勞者에게는 무자비하게 적용되었지마는 힘 있는 使用者에게는 法의 根本目的을 저버리고 거기에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밧어지고 말았어요.

이런 側面에서 볼 적에 무조건 勤勞者들이 不法的인 行動을 하게 되면 公權力을 투입해도 된다는 시각은 治安當局이나 公安當局에서 하는 얘가지 勞動部 입장에서는 그와 같은 論理를 전개하는 것은 論理的으로는 맞을지 모르지만 現實的으로는 대단히 불행한 論理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勞動部の 입장으로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마는 基本的으로 視角調整을 勤勞者들이 어쨌든간에 현재 弱者의 입장에 있으니까 弱者의 입장에 있다면 그들에게 힘을 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視角調整을 根本的으로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勞使紛糾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勞動部次官 鄭東佑 알겠습니다.

○韓光玉委員 지금 8月末 현재 時局關聯拘束者가 2,094名중에서 533名이 勤勞者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 지금 최근에도 馬山 昌原地區의 拘束者가 100餘名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 拘束이 되면 다시 말해서 釋放해 달라 釋放해서 復職을 해달라 이런 요구가 自然的으로 나오게 됩니다.

靑瓦臺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政府當局이 5共清算과 民主化의 방향으로 가는 그와 같은 데에 신경 쓰지 않고 이상하게 이 사람들이 모이면 엉뚱하게 勤勞者들 勤勞者들 탄압하는 방향으로 物理的인 힘의 행사를 어떻게 해서 國民들로 하여금 共感帶를 형성하면서 행사할 수 있을까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다루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이런 면에서는 대단히 勞動部가 關係當局 다시 말해서 公安當局과 積極的인 理論鬭爭을 한다든지 또는 勞動部の 입장을 분명히 해서 그와 같은 잘못된 公安當局의 시각이 있으면 고쳐주어야 될 義務도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그와 같은 노력이 勞動部에 아쉽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勞動部가 全國적으로 14日까지 拘束勤勞者數가 몇 名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勞動部次官 鄭東佑** 34個 業體의 勤勞者중에서 不拘束立件이 289名 拘束이 159名 卽審 訓放이 4,850名 현재 搜查中이 61名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韓光玉委員** 거기에 대해서 우리 勞動部側에서는 어떠한 措置를 취하고 있지요? 搜查當局에서 한 것이니까 우리 勞動部로서는 방관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자세입니까? 아니면 그 事案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對處方案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勞動部次官 鄭東佑** 卽審 및 訓放이 4,850名으로 絶對적으로 많습니다. 이래서 勞使紛糾現場에서나 勞動組合活動을 통해서 警察이 連行해 가지고 이와 같은 拘束이나 具體的인 어려움을 겪는 勤勞者가 많이 있습니다. 개중에는 適法하고 올바른 勞動運動이나 勞使交涉過程에서 휘둘러서 본의 아니게 連行이 되고 이와 같은 고초를 겪는 勤勞者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地域事務所 關係機關에서 가능한 警察에 협조를 해서 善意의 勤勞者들은 피해가 없도록, 訓放이나 또는 가벼운 卽審같은 것으로 善處하도록 협조를 하고 있고 拘束이라든지 暴力破壞를 수반한 또 主動者級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런 협조요청을 했다고 해서 꼭 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地域機關에서 우리 地方事務所를 통해서 이와 같은 勤勞者가 可及的 改換의 情이 있으면 善處되는 방향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韓光玉委員** 만일 예를 들어서 우리 勞動部가 過剩公權力 投入이라든가 이런 것을 自體적으로 調査를 해가지고 公權力의 행사가 부당하다고 생각할 적에는 自體內에서 釋放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나요?

○**勞動部次官 鄭東佑** 우선 連行이 되면 管轄警察署에 먼저 連行이 됩니다. 그러면 地方事務所에서 監督課長이나 所長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억울한 희생자가 최소화되도록 關係機關과 협조하고 있습니다.

○**韓光玉委員** 하여간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拘束하고 釋放해라 釋放하고 復職해라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勞使問題가 전혀 進步的인 어떤 措置가 없이 것처럼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기 때문에 이제 勞動部가 積極적으로 勞使問題에 대해서는 所信을 가지고 하세요. 公安當局의 눈치 보지 말고... 이디이 勤勞者들을 위한 길이나... 勞動部는 솔직히 勤勞者들이나 勞動政策을 위해서 있는 行政部處 아닙니까? 무슨 企業主 눈치만 보고... 그렇다고 해서 企業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企業이 있어야 勤勞者가 있는 것이니까 같이 共存共生한다는 원칙하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아까 李康熙委員께서도 問題點을 지적하셨는데 지난번에 12日 勤勞者大會가 있었지요? 그런데 法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衡平의 原則에 어긋나서는 안되는데 源泉적으로 勤勞者들을 봉쇄한 사실에 대해서 아까 잘한 것이다 이렇게 答辯하신 것같은데 그런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妥當性이 있다 잘했다 말씀하셨지요?

○**勞動部次官 鄭東佑**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까는 지난 12日 集會는 소위 全國勤勞者大會를 주도하는 主體側 세력들이 그동안에 不法的인 勞使紛糾를 주로 주동해 온 분들이 잘아시는 바와 같이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問題點을 그동안에 낳았고 또 同 集會를 政府에서 不許하고 源泉封鎖하게 된 理由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 全勞協 推進勢力들은 당초 보라매 公園에서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集會를 不許하는 결과로 해서 서울大學校로 옮겨서 學生들과 연계해서 합세해서 과격한 連帶鬭爭을 展開를 했습니다. 同 集會場所에서는 勤勞者들인지 學生들인지 신문 미확인 또는 一部學生으로 신분이 확인된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는 소위 南韓社會主義勤勞者聯盟의 출범을 공식으로 宣稱하는 그러한 油印物도 나돌고 해서 體制否定的인 性格이 강하게 부각되었다고 합니다.

同 集會에서 源泉封鎖한 이와같은 措置는

일련의 이같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불가피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고 있고 또 主催側이 추구하는 소위 全勞協은 복수노조를 금지하고 있는 現行 勞動關係法上 도저히 實現될 수 없는 상황입니까? 또 同團體를 設立해서 신고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반러조치될 수 밖에 없어서 그 團體는 法上 人정이 어려운 그런 不可能한 사항입니다.

勤勞者들의 自律的인 勞動運動은 合法的이고 건전하게 되어야 하며 可及的 分열되지 않고 통합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힘을 하나로 묶는 것이 勤勞者 스스로를 위해서도 좋지 않겠느냐 世界的인 勞動運動의 추세가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고 가까운 日本만 하더라도 과거의 總評과 同盟이 聯合戰線으로 해서 하나로 묶여지고 있는 그와같은 추세로 볼 때 두 갈래 세 갈래 나누어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이렇게 보아지고 또 요즘 이와같이 勞組가 분열되어서 과격한 鬭爭을 해서 勤勞者들에게 과연 어떠한 利益이 있겠는가 이러한 점을 볼때 既存勞總과 힘을 합해서 大同團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오히려 우리나라 勞動運動의 새로운 發展의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勞動部에서는 그렇게 보고 全勞協團體는 인정할 수 없는 團體로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韓光玉委員 法的인 論爭을 하고 싶지 않고 集會의 性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勞動部가 이 문제와 直接的인 관련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勞動部의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어떠한 憲法上의 集會의 自由가 보장되어 있는 集會法이 改正되어서 申告制로 되어 있지요? 許可制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勞總은 集會許可가 나왔고 勞總한테 해줬다고 나쁘다는 게 아니고 勞總처럼 그 集會가 어쨌든 간에 平和的인 集會가 보장된다고 하면 해주어야 될 것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平和的인 集會가 보장되면 해줘야 될 것 아닌가 그런 견해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勞動部次官 鄭東佑 平和的인 集會가 보장되었다면 당연히 勞總集會나 이 集會나 하

는 것이 옳겠지만 集會許可當局에서 後者의 경우에는 平和的인 集會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結論이 나왔기 때문에 集會許可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韓光玉委員 하여간 主務當局은 아니니까 이 문제 가지고 더이상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어쨌든간에 勞動者들의 한 모임이 不許됨으로서 자기들의 모임을 서울大學으로 옮겨서 自然的으로 學生들과 連繫될 수밖에 없는... 그들의 集會를 인정해주었으면 자기들끼리 조용히 平和的으로 끝날 수 있을 것인데 예를 들면 全教組도 똑같은 性格인데 지난번 걸기 大會를 했습니다. 平和的으로 자기들 團體에서 平和的인 集會를 갖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회 黨에서도 後援해주고 한일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때에도 걱정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실상 許可해주니까 조용하게 平和的으로 끝낸 일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번에도 勤勞者들이 자기들이 平和的으로 集會를 갖겠다고 하면 當局이 許可해주어서 集會를 許可해주고 난 後에는 不法行動이 있었으면 그때에 法에 의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하지도 않고 源泉的으로 봉쇄해가지고 그 불만이 불뚱이 튀어가지고 계속 지금 어떤 분쟁의 소용돌이가 되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關係當局이 자신이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平和的으로 한다고 할 때 해주었는데 해주고 보니까 約束을 어기고 不法行動을 저질렀다 폭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해서 關係法에 의해서 하면 모르지만 源泉的인 봉쇄는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油印物들이 나돌았다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主催側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主催側에서는 그런 不穩 油印物들이 우리하고 관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고 오히려 자기들의 集會를 歪曲 또는 잘못 國民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엉뚱하게 저질러진 조작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행해서 關係當局에서 搜查當局에서 조사해보면 알겠지만 그와같은 문제는 매우 좋지 않은 작태다 어떤 이유와 동기

와 배경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主催側에서는 전혀 별개의 關聯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이상 앞으로 勤勞者들의 集會는 하나의 集示法에 의해서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닌가 法的으로 그 團體가 合法 不法의 문제는 둘째로 치더라도 그런 생각을 갖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勞動部次官 鄭東佑** 治安當局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新聞에도 集會不許事由가 一部 報道가 되었습니다마는 이 12日 소위 全勞協의 集會는 준비단계에서부터 油印物들이 大量 全國의으로 많이 撒布가 되었습니다.

그 油印物內容에 보면 과격한 투쟁 또 都市學生 貧民 모두 연대해서 參加하라 또 거기에 보면 油印物에 後援이 全教組가 나와있고 다른 團體와 연대해서 그와같은 集會를 갖는 것으로 計劃이 서서 그 計劃書內容을 읽어보면 순수한 勤勞者들의 集會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主管하는 많은 사람들의 과거 전력의 그간 不法紛糾를 많이 主導했고 지금도 一部는 執行猶豫中에 나와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등등 정황을 綜合的으로 판단해서 이 集會가 평화롭게 集會申告書에 나와있는 대로 질서있게 치러지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한 끝에 集會許可를 禁止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韓光玉委員** 하여간 제가 또 당부를 드리는데 治安當局에서는 자거들의 治安秩序 治安的인 次元에서 그런 모임을 보지않습니까? 勞動部는 시각을 그 사람들과는 달리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馬·昌地域의 勞使紛糾는 與野가 합의해서 真相調查團이 구성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더이상 말씀 안드리겠지만 外國人投資企業의 廢業事態로 인해서 失業者가 相當數가 發生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資料에 의하면 全國的으로 10月末 馬·昌地域을 비롯해서 현재까지 外國人 投資業體가 1,816個中에서 製造業體가 1,483個인데 이 가운데 10月末 現在 13個社가 廢業해서 失業者가 勤勞者中에 4,148名이 발생을 했어요.

또한 5個社에서는 4,850名을 減員했고 3個社가 休業해서 708名이 잠정실직상태에 있는 등 外國人投資企業의 休·廢業으로 인해서 勤勞者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자에 여러 委員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간에 우리가 어려웠을 적에 外國의 資本을 유치하기 위해서 外國人投資企業에 많은 특혜를 주었지만 이 특혜를 漸進的으로 거두어 나가니까 사람들이 失業者 續出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저희들 멋대로 보따리를 싸가지고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가버리는 귀국해 버리는 그와 같은 非倫理的이고 非道德的인 처사가 있는데 여기서 根本的으로 勞動部에서 어떤 견해를 갖고 어떤 對策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勞動部次官 鄭東佑** 지금 韓委員님 말씀대로 그런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오늘 報告書에서도 報告올렸습니지만 外資業體가 우리나라에 投資할 때는 投資與件이 여러가지 좋았습니다.

勞動關係法도 특례가 인정되었고 租稅 關稅도 여러가지 혜택을 주어서 정말 특히 馬山 裡里 輸出自由地域에는 여러가지 投資環境이 좋아져 가지고 왔는데 이제 그 時效가 대체로 끝나고 아까 報告書에서 報告드린 대로 賃金引上이라는지 勞使紛糾가 빈발하니까 여기에 더 매력을 잃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철수하는 경향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원인의 전부는 아닙니다만 그런 원인도 큼니다.

그리고 그들은 남의 나라에 와서 企業을 했기 때문에 죽어도 우리나라에 뿌리를 내려서 죽겠다는 이러한 하나의 企業主의 道德觀보다는 利潤追求에 치중하다가 보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 우리로서도 고민이 되고 해서 걱정하신 것처럼 몇가지 對策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外資企業에 대해서는 명단을 확인해서 특별관리지도를 해서 이와 같은 일이 사전에 일어나지 않도록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馬山 輸出自由地域 裡里에 集中的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休·廢業 減員을 미리 신고하도록 해서 신고안하고 그냥 살짝 하는 경우

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우리의 勤勞監督情報網에 입수가 됩니다.

그래서 休·廢業의 不可避性을 우리나라대로 따져보고 不可避한 경우라도 貨金滯拂이나 마지막 정리하는데 勤勞者에게 不利益이 없도록 강력히 시도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不當解雇나 또는 企業이 貨金引上이나 勞使紛糾 이러한 구실로 偽裝廢業이나 하는 것을 다시 말해서 法違反與否를 철저히 가려서 事業主에 대한 措置를 강화하도록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 다음 休·廢業하였을 때 失職者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서 최우선적으로 취업알선하도록 地方事務所가 등록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勞動部만으로 안되기 때문에 그 輸出自由地域에 工團事務所이 나가 있는 入住企業體 모임이 있습니다. 같이 협조해서 방금 말씀드린 몇가지 對策이 效果的으로 추진되게끔 積極的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와 같은 방침은 더욱 강화 될 것입니다.

○韓光玉委員 그리고 서울地下鐵勞組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어떻게 地下鐵勞組가 勞使間에 안내와 끈기를 가지고 또 특히 勤勞者들의 냉철한 이성으로써 평정을 찾고 合意한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勞使間에 문제가 진일보한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앞으로 다시는 地下鐵勞使間에 분쟁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관점에서 勞動部가 아리이러한 절에서는 노력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한두 가지 묻고자 합니다.

이번에 勞使間의 최대 현안이었던 것이 拘束者 5名에 대한 석방문제지요?

○勞動部次官 鄭東佑 예.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金命培委員長, 李仁濟幹事와 司會交代)

○韓光玉委員 이 문제에 대해서 勞動部가 문제해결을 하기 위해서 使用主면 使用主에게 地下鐵公社가 되겠지요? 거기에 예를 들면 석방을 요구하는 탄원서라든지 석방을

을 위한 노력을 권유할 생각은 없습니까?

○勞動部次官 鄭東佑 韓委員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地下鐵公社는 서울시傘下 公社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도 협상과정에서 貨金引上이라든지 事後措置 몇가지를 해결하면서 강력하게 拘束者 釋放과 原職復歸 이 문제를 제시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방금 韓委員님 말씀과 같이 勞組側에서 地下鐵社長에게 拘束者釋放에 대해서 최대한 협조를 해주도록 건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司直當局에서 할 일이지만 事業主로서 최선의 노력을 해보겠다 그런 정도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韓光玉委員 勞動部에서도 그런 노력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勞動部次官 鄭東佑 1次的으로 서울시가 地下鐵公社의...

○韓光玉委員 서울시가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勞動部에서도 그것을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勞動部次官 鄭東佑 아직은 그런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韓光玉委員 그리고 合意覺書가 앞으로도 잘 이행될 수 있도록 勞動部에서도 지도를 해야 될 거예요.

○勞動部次官 鄭東佑 그것은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韓光玉委員 그 다음 醫療保險制度 아까 어떤 委員이 말씀하셨지만 대충 빨리 쉽게 말해서 勞使間의 問題인데 使가 없어요. 使用主 代表者가 없어요. 勞動組合의 組合員들 하고 대화할 상대가 없어요. 빨리 대화의 상대자가 나와야 될 것 아니예요?

○勞動部次官 鄭東佑 아까 李康熙委員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保社部側의 견해와 勞動組合側의 견해가 조금 달라서 저희들이 對策報告에 나온 대로 대화의 창구를 주선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韓光玉委員 그래서 가장 담담한 것이예요. 나도 그 분들을 만나 보았어요. 도대체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어떻게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使用主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聯合會會長도 있지요?

그 사람들이 使用主의 입장에서 대화의 상대는 될 수 없을까요?

○**勞動部次官 鄭東佑** 지금 保險勞聯에서도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聯合會長과 14個 지역의 몇개 組合代表하고 保險勞聯과 地域勞組代表 몇명이 대화의 창구를 마련하면 안되겠느냐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 保社部側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韓光玉委員**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勞動部側에서도 빨리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使用主를 어떤 형태든지간에 保社部하고 노력해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대화의 창구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계속 長期化되어 가지고 現在 洞職員들을 동원해서 그런 것들이 國民들이 실제로 별 어려움을 못느끼고 있으니까 그렇지 실지로 따지고 보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더 확대되지 않기 위해서는 勞動部에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勞動部次官 鄭東佑** 알겠습니다.

○**韓光玉委員** 그 다음 이것은 報告를 받고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東洋經濟 僞裝廢業에 대해서 本人이 나름대로 會議가 열릴 때마다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참 답답합니다.

지금 지난 10月6日 제가 勞動部本部監査時에도 얘기했고 그 당시 國會에 證人으로서 출석해달라고 東洋經濟 손승근會長한테 얘기했는데 그 때 몸이 아프다는 진단서를 첨부해서 못나온 적 있지요? 그 후에 어땀습니까? 우리 勞動部에서는 地方勞動廳에서는 한번 소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경과를 얘기해 주세요.

○**勞動部次官 鄭東佑**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0月25日 東洋經濟勞動組合에서 서울地勞委會에 不當勞動行爲救濟申請을 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地方勞動廳에서도 방금 委員님 말씀과 같이 소환 조사해서 違法事實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래서 今明間 그 事件에 대해서는 서울地檢에 立件 送致豫定으로 搜查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韓光玉委員** 언제 送致할 것입니까?

○**勞動部次官 鄭東佑** 今週中에 할 것입니다.

○**韓光玉委員** 우리 勞動部側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것밖에 없으니까 할 수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러한 事業主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韓國勞動者들을 충분히 분노하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듯간에 이 문제는 빠른 시일내에 하신다고 하니가 依法措置를 해야 될 것입니다.

○**勞動部次官 鄭東佑** 알겠습니다.

○**韓光玉委員** 그 다음에 東洋火災海上保險株式會社에서 趙重勳會長이라는 사람이 지난 10月5日에 同會社의 創立67周年紀念式의 祝辭에서 勞動組合을 不純勢力으로 배도하고 課長次長에 대한 勞組脫退強要發言을 함으로써 勞使間에 紛糾가 일어나고 있는데 報告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 경위를 설명해 주세요.

○**勞動部次官 鄭東佑** 방금 韓委員님 말씀과 같이 趙重勳會長이 創立紀念行事式典에서 課長과 次長은 組合員도 될 수 없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이야기가 쟁점이 되어서 여러가지 問題點이 야기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發言內容中에 특히 課長 次長이 組合員에 해당이 안된다는 등의 이야기가 組合員들에게 자극이 되고 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使用者는 組合員이 될 수 없는 해석으로 使用者概念은 勤勞基準法에도 나와 있고 또 대체적인 해석은 一般的으로 會社規定에 具體的으로 나와 있어서 內部委任專決權이 社長으로부터 委任받은 것이 있고 또 一般的으로 所屬職員에 대한 人事考課 복부 등의 管理 監督權限을 갖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 사람이 使用者의 개념에 속하느냐 아니냐 이렇게 해서 使用者의 개념에 속하면 이 사람은 組合員이 될 수 없는 것으로 一般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課長 次長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와 같은 권한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사용자개념에 포함된다고 보아서 勞動組合員으로 가입되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게 저희들은 통상 보고 있습니다.

다만 韓進그룹會長의 발언이 勞動組合法上 不當勞動行爲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의 事案에 따라 가지고 판단되어야 할 문제입니다마는 현재 勞動委員會의 不當勞動行爲救濟申請이 本件이 들어와서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신속히 措置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韓光玉委員 地勞委의 결정을 봐야 알겠다는 것입니까? 勞動部 自體內에서 조사한 것은 없습니까?

○勞動部次官 鄭東佑 이것은 일단 정식으로 勞動委員會에 不當勞動行爲救濟申請이 들어왔으니깐 그 결정에 따라야지 한 가지를 양쪽에서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韓光玉委員 本委員이 입수한 자료를 보고 심지어 녹음 테이프까지 가지고 온 것을 봤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 자리에서 개인을 가지고 얘기하기는 뭐하고 企業主가 이와 같은 勞使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참 불행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간에 이 企業主들이 그와 같은 불 건전한 아직도 前近代的인 勞使觀을 갖지 않도록 교육시키는 것도 勞動部의 할 일이에요.

○勞動部次官 鄭東佑 그렇습니다.

○韓光玉委員 대단히 위험한 이 분의 全體的인 축사의 요지를 보니까 위험한 勞使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역시 勞使紛糾가 자꾸 아까도 얘기했지만 公權力過剩投入으로 인해서 여기 저기 또는 企業主들의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서 자꾸 일어나고 있어요. 대단히 안좋은 현상인데 저희 黨에서도 한 40名 정도가 와있고 또 현지 조사도 내려간 모양인데 물론 勞動部에서도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大邱의 남영섬유 勞使紛糾事件있지요? 廢業事件 거기에 대해서 勞動部에서 파악하고 있는 대로 설명해 주세요.

(李仁濟幹事, 金炳龍幹事와 司會交代)

○勞動部次官 鄭東佑 남영섬유는 방금 韓委員님 말씀대로 大邱에 소개하고 있는 事業

體입니다.

지난 10月17日부터 勞組組長專任制 賞與 金引上 「유니언 삼」 認定등 要求條件을 제시하고 숲 勞組員이 농성에 돌입한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지난 11月6日 代表理事 自宅앞에서 45名이 농성을 하다가 全員 警察에 연행된 바가 있고 그 중 두 사람이 業務妨害 등 혐의로 拘束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11月10日 그 이후에 勞組員 50餘名이 平民黨 大邱地區事務室에서 농성을 계속한 바 있고 11月2日에 勞組員 29名이 上京해서 平民黨中央黨舍까지 찾아가서 농성하고 있는 것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平民黨舍에서 농성하는 組舍員들의 요구조건이 拘束者釋放 委員長手配解除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事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可及的 勤勞者들의 合理的인 요구는 받아 들여지는 방향으로 事業主에게 설득하고 勞動組合의 무리한 요구는 勞動組合 스스로 자제하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韓光玉委員 지금 노력하고 있나요?

○勞動部次官 鄭東佑 예. 大邱廳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拘束者釋放에 대해서는 솔직히 司法的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韓光玉委員 빨리 수습이 되도록 勤勞者들이 오죽하면 우리 政黨事務室까지 오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어떻든간에 제가 質疑를 마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계속 勞動委員會가 열릴 때마다 勞使紛糾의 현상을 가지고 사태가 어떻게 되느냐 빨리 해결이 안되겠느냐 그 원인은 뭐냐 또 勤勞者들의 拘束問題 原職 復歸問題 다람쥐 쳇바퀴 돌듯 계속 그 타령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 勞動委員會가 열려 가지고 정말 勞使紛糾라든다 이런... 어떻게 보면 어떤 현상을 가지고 논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이 나라의 勞動政策 또 勞動行政 勞動의 큰 흐름 雇傭增大 勤勞者 福祉向上 問題등 이러한 좀 發展的인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자꾸 討議가 되어야 되

겠는데 사실은 基本的으로 잘 안되어 있
니까 그것을 또 우리가 質疑 안할 수가
없습니다. 委員 立場에서... 우선 現實的으로
부닥치는 문제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과연 이렇게 우리 勞動委員
會가 運營이 되어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가져 봅니다.

다같이 여기 나와 계시는 우리 勞動部에
계시는 분들이나 質疑하는 저희들이나 똑같
은 심정일 것입니다.

하루 빨리 우리가 이와 같은 문제를 가
지고 더 이상 質疑하지 않는 그런 勞使關
係가 원만히 解決되는 그런 時代를 빨리
앞당겨서 가져와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어쨌든 간에 勤勞者들이 弱者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그 동안 품었던 또 말
못했던 여러가지 問題點이라든가 자기의 意
見은 일단 한 번 赤裸裸하게 어떤 형태로
든지 간에 보라매公園이 됐던 南山 꼭대기
가 됐든 간에 噴出시켜라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큰 廣場을 통해가지고
울고 싶은 사람은 울고 자기네 主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게 전부 보장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걸르는 것이예요. 할 수
있는 것 못하는 것 그리고 조정할 것 이
러한 段階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것이 시끄럽다 그것이 잘
못됐다 해가지고 公權力이 投入이 되면 그
것이 자꾸 굼아서 나중에 癌으로 不治의
病이 돼버리는 우리 人體에 비유하면 그런
결과가 초래되니까 사전에 그와 같은 것을
우리 勞動部側에서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根本的으로 그런 문제가 거기까지 가기 전
에 解決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그러한 事態가 되
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炳龍 예. 韓光玉委員 수고하
셨습니다.

다음은 李仁濟委員 質疑해 주시기를 바랍니
다.

○李仁濟委員 많은 委員들이 質疑를 해주서
서 重複이 되는 것도 있는데요 간단간단하
게 質問을 하겠습니다.

地域醫療保險組合이 지금 全國的으로 罷業
을 하고 있는데 報告書에 보면은 主要爭點
으로 醫療保險의 統合管理하고 賃金引上 등
勤勞條件改善 두 가지를 써 놓았는데 이
밖에 交涉窓口 單一化를 要求하고 있지요?

○勞動部次官 鄭東佑 그것은 直接的인 爭點
이라기보다는 이 문제를 解決하기 위한 方
法으로서의 交涉代表를 請해달라 하는 것입
니다.

○李仁濟委員 그러니까 그것이 가장 先決的
인 爭點 아닙니까? 交涉窓口가 있어야 이
나머지 爭點도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勞動部次官 鄭東佑 源泉的으로는 醫療保險
의 統合管理 속에 그런 문제가 들어가는
것인데요. 制度的인 이야기기 때문에 너무
거리가 멀고 당장 문제는 이 문제를 하기
위한 對話窗口를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李仁濟委員 그리고 保社部에서는 못하겠다
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爭點이 되어 있지
요?

○勞動部次官 鄭東佑 예.

○李仁濟委員 그 다음에 賃金引上에 관해서
는 물론 絶對的인 引上도 이 사람들이 要
求하고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지금 差別賃
金撤廢해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勞動部次官 鄭東佑 그 要求가 더 큼니다.

○李仁濟委員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 좀
정확하게 써야지요. 爭點을...

그래서 묻는데요. 물론 醫療保險의 統合은
報告書 內容대로 政策的인 문제고 政治的
으로 解決이 되어야 될 문제인데 지금 差別
賃金은 勞動部에서 보아도 좀 문제가 많은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醫療保險管理費의 50%를 國家가
補助하고 있는데 다 같은 同質의 일을 하
고 있는데 地域醫療保險組合 또 職場醫療
保險組合 또 聯合會 이것이 다 달라가지고서
야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래서 우선 이런 문제를 論議하려고 보
니까 交涉窓口가 單一化 되어야 되겠다...
勞動部에서도 확실히 인정하지요? 그 必要
성을?

○勞動部次官 鄭東佑 그렇습니다.

○李仁濟委員 地域醫療保險組合하고 醫療保險

組合들이 對話해 봐야 뭐 합니까? 아무 實益이 없는 對話 아니예요?

그러면 지금 全國醫療保險聯合會가 있으니 聯合會를 全國使用者代表로 해서 各地域醫療保險組合들이 자기들 勞組側 協商代表를 選出해 가지고 마주 앉아서 이런 문제들 差別賃金撤廢라든지 그밖에 다른 勤勞條件에 관한 문제들을 協議시켜 주어야만 이 문제가 가닥이 잡힐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슨 다른 어떤 物理的인 힘으로 침묵을 시킬지는 모르지만은 근본적으로 解決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勞動部에서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이 交涉窓나 單一化를 保社部長官이 못하겠다고 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같은 政府部處인데 그러나 勞動部長官이 保社部長官을 만나서 담판을 지어야만 이 문제가 수습이 되겠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次官은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勞動部次官 鄭東佑 이것은 局長線에서 이 이야기가 進行되고 있고요. 사실은 오늘 제가 次官線에서 이야기하기 위하여 연락을 했습니다마는 연락이 안 됐습니다. 제가 國會에 오고 그 쪽에도 다른 會議가 있어서 방금 委員님 말씀대로 順序를 밝아서 局長 次官 長官까지 對話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仁濟委員 그렇게 하세요. 責任지고 해주시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罷業을 하고 있는 地域醫療保險組合組合員들이 窓나 單一化만 확보되면은 勤務하면서 나머지 문제를 協商하겠다 이립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次官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勞動部次官 鄭東佑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제 午後에 聯盟委員長이 저한테 처음으로 왔어요.

○李仁濟委員 그런데 使用者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國家인데 國家가 절대적 영향력을 갖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해시킬 안해 주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얘기에요?

政府가 할 수 있는 일도 안하면서 다른 勞使紛糾들을 어떻게 조정하고 부엌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政治倫理的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예요? 하여튼 次官 責任지고 빨리 해결하세요.

○勞動部次官 鄭東佑 保社部에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겠습니다.

○李仁濟委員 적극적으로가 아니라 담판을 지으세요. 명백한 것을 가지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東洋經濟가 僞裝廢業이 되어서 200餘名 이상이 하루 아침에 失職이 됐는데 勞動部側에서 그 告發事件을 조사해보니까 嫌疑가 인정이 됐다 그래서 檢察에 送致하겠다 이러셨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200餘名이 勞動組合를 結成하기로 會議를 한 번 했다고 해서 그냥 하루 아침에 廢業을 함으로써 生存權을 모조리 다 박탈당했는데 이것이 犯法行爲다 이러면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마땅히 拘束밖에는 다른 方法이 없는 것 아니예요? 저는 상식적으로 拘束外에는 다른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데 次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勞動部次官 鄭東佑 그래서 우리 서울廳의 搜查 中間結果도 보니까 事業主의 不當 勞動行爲 不當解雇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地檢 檢事 指揮下에 送致하도록 된 것으로 보아서 우리 서울廳의 意思는 檢察當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李仁濟委員 아니 그게 아니고 送致도 不拘束 送致도 있고 拘束送致도 있는데 이것은 단호하게 이런 勞動關係法 違反事犯은 우리가 拘束送致하지 않는다면은 勞動部가 일을 할 수 없다 생각을 해봐라 말이지...

勞使紛糾 渦中에서 勤勞者들은 누구 한 대 때리고 뭘 좀 부셨다고 해서 拘束이 되는데 200餘名되는 勤勞者를 하루 아침에 無慈悲하게 목을 잘랐다... 결국은 團體解雇나 마찬가지로 아니예요? 이런 使用者를 우리가 拘束을 못한다면은 앞으로 우리는 勤勞者 아무도 拘束할 수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拘束送致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勞動行政이 그러니까 맨날 지금 一線의 勤勞者들 不平不滿의 大部分이 됩니까? 그것 아니예요? 衡平을 잃은 法適用 200餘名을 자기 멋대로 돈 좀 있다고 新聞社 차러 가지고 다른 데 勤務하는 사람들 「스카웃」해 오고 모집해 가지고 그 사람들도 다 職場에서 月給나올 것 計算해 가지고 生活計劃

도 세우고 그랬을 사람들인데 勞組結成한다고 會議 한 번 했다고 그래서 덜커덕 廢業을 해요?

그런 사람을 그냥 送致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이것 勞動行政을 맡고 있는 분들이 할 태도가 아니다... 나는 東洋經濟社長 얼굴도 모릅니다. 어때요? 拘束送致하시겠어요?

○**勞動部次官 鄭東佑** 즉시 搜查를 맡고 있는 서울廳에 알아봐서 指揮檢事에게 拘束稟申하도록... 사실이라면은 서울廳에다가 來日 알아보겠습니다.

○**李仁濟委員** 그리고 이것은 깨놓고 이야기 해서 拘束稟申해가지고는 절대 拘束 안됩니다.

이것은 勞動行政의 最高責任者가 檢察總長을 만나든지 法務部長官을 만나서 이 實相을 잘 이야기해 주어야 돼요.

지금 勤勞者 數百名 이미 拘束이 되어 있고 앞으로도 犯法行爲가 있으면 가차없이 拘束하겠다고 方針을 다 밝혀놓고 있는데 使用者가 그것도 무슨 의문의 여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勞組結成한다는 會議를 한 번 했다는 이유만으로 200餘名을 그냥 무더기로 解雇를 시킨 목을 잘라버린 이런 使用者를 拘束하지 않으면 우리 勞動部는 앞으로 일을 못합니다. 이것은 政策的으로도 구속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答覆을 하지 않으면 그냥 적당히 勤勞監督官線에서 指揮稟申해 가지고는 令狀請求하라고 指示를 안내한다니까요 檢察에서.

생각을 해봐요. 지금 이 어지러운 勞使問題를 앞으로 정리를 하나갈려면 勞動行政當局이 勞使兩側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는 맨날 쫓바퀴 도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 그냥 送致하겠습니다 이런 形式的인 答辯으로는 안됩니다.

이것 만일 구속 못하면 우리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누구 구속할 것이에요? 어떤 使用者를 구속하겠습니까? 勤勞者도 하나도 구속 안한다면 문제가 달라요. 이것 심각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勤勞者 200餘名이 各黨에 와서 농성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이 不當勞動行爲도 정도의 차이가

있지 이것은 너무 심했어요. 한마디로...

이것 잘 좀 처리해 주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馬·昌地區에 제가 黨調査委員으로 가서 직접 現地를 돌아왔습니다.

우선 株式會社 통일과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株式會社 통일은 防産業體로서 罷業이 안되게 되어 있지요?

○**勞動部次官 鄭東佑** 예.

○**李仁濟委員** 그런데 勞使間에 여러가지 紛糾過程에서 使用者側이 管理職社員들을 조종해가지고 管理職社員들이 今年 8月9日부터 9月2日까지인가요? 이 報告書에는 8月15日까지로 되어 있는데 本委員이 가서 얻은 資料로 볼 때에는 9月2日까지 거의 한 달 가까이 出勤을 거부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볼 때에는 명백한 不法罷業行爲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 勞動部 地方事務所長에게 물어보니까 전혀 司法的으로 처리한 일은 없고 자기 생각에는 그것은 爭議調整法上에 罷業이라기보다는 業務妨害가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見解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추궁은 안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만 제가 提起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문제도 法律的으로 한번 檢討를 해서 이것도 使用者에 의해서 저질러진 명백한 法違反行爲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工場 不法賣却 이 문제를 저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4工場에 한 570餘名이 근로를 하는데 4工場이 무슨 獨立해서 독립된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일괄작업 과정에서의 한 素材를 만들어내는 그런 工場인데 이것을 어떻게 매각을 할 수 있을까 생각되어서 알아본 결과 이미 組合員들이 告發을 해가지고 또 救濟命令申請을 해가지고 地勞委하고 事務所에서 搜查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설론이 아마 다 나아가는 것같은데 혐의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報告에서 이것이 解決이 됐다고 그러는데 언제 해결됐다고 그랬지요? 어제 해결됐습니까?

○**勞動部次官 鄭東佑** 어제 午後 늦게 해결됐다는 報告를 받았습니다.

○李仁濟委員 內容을 다시 한 번 具體的으로 얘기해 보세요. 賣却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간략하게 要點만 얘기해 주세요.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4工場賣却과 관련된部分 勞使協議 結果를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11月13日 午後 늦게 다음과 같이 合意가 됐습니다.

우선 「解職者에 대한 補償金은 440萬원을 11月18日날 支給한다.

통일이나 引受業體인 삼우산기에 入社하지 않고 그냥 退職하겠다 하는 사람한테는 440萬원씩 주기로 이렇게 됐습니다.

또 삼우산기에 入社하는 사람은 既存勤勞者와 同一하게 支給을 해준다.

또 통일에 轉補를 원하는 者가 있으면 統一에 T.O가 있는 그런 職種은 즉시 入社措置 하고 T.O가 없으면 所定教育을 履修시켜서 轉補措置 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4工場 賣却 관련사항은 向後 雙方間에 異議를 提起하지 않겠다.

이렇게 合意를 했다고 報告를 받았습니다.

○李仁濟委員 그렇습니까? 이것도 아마 그때 우리 黨의 調査委員들이 가 가지고 당장 拘束시키라고 호통을 치고 또 오늘 勞動委員會가 열린다고 그러니까 아마 어젯밤에 대폭 양보해가지고 합의가 된 것 같은데 이것도 東洋經濟 不法廢業이나 마찬가지로 인데요. 하여튼 이 法適用의 衡平을 생각해야 된다 그것은 勞使兩側으로부터 信賴回復을 위해서 절대 필요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이렇게 합의가 되면 告發도 철회가 되고 이러면 司法處理에 관해서는 더 이상 제가 質疑를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委員들께서 外國人 投資企業의 休·廢業에 따른 여러가지 問題點을 質疑를 해주셨는데요 조금 정리를 한 번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外資業體가 勞動關係法이 모두 適用이 되고 있는 實情입니까? 特惠를 받고 있는 業所는 없습니까?

○勞動部次官 鄭東佑 예. 없습니다.

○李仁濟委員 그러면 國內業體에 비해서 特惠를 받고 있는 부분이 없다면은 法律上 법적미비로 인해서 勤勞者들이 부당한 被害

를 입는 그런 것은 豫상을 못하겠네요?

○勞動部次官 鄭東佑 없습니다.

○李仁濟委員 지금 이제 特別管理를 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물론 外國業體들은 報告書에 있는 대로 그야말로 利潤追求만을 위해서 우리나라에 왔기 때문에 經營環境이 나빠지면은 보따리 싸는 것을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불시에 철수함으로써 勤勞者들이 입게 되는 피해를 방지하는 法的 制度的 장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되는 勤勞者들을 다른 職場에 就業을 시켜서 生存權을 보장해주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報告書에 보면 지금 현재 休·廢業으로 인해서 勤勞者들이 退職金이라든지 貨金을 못 받게 되는 경우는 없는 것처럼 돼 있는데 그렇습니까? 韓國피코도 滯拂額이 2億4,900인데 1億8,000萬원 假押留措置를 해 놓았으니까 많이 부족하네요.

○勞動部次官 鄭東佑 한 6,000萬원 모자람이 다만 30億 擔保財產이 있고 滯拂貨金優先權이 있으니까 충분합니다.

○李仁濟委員 그럼 현재 韓國피코 이외에는 勤勞者들이 貨金을 매일 우려가 있는 業體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勞動部次官 鄭東佑 예.

○李仁濟委員 그럼 韓國수미다는 擔保處分해 가지고 바로 정리가 되겠습니까?

○勞動部次官 鄭東佑 勤勞者들이 該當債權을 확보했다는 것으로 봐서 處分可能할 것 같습니다. 다만 30億 擔保財產 이것이 다른 債權하고 併合이 되어 있는지...

○李仁濟委員 併合이 왜 있더라도 貨金이 優先權이 있잖아요?

○勞動部次官 鄭東佑 하여튼 다 處分을 해야 자기 몫을 찾아가니까 時間的으로 절차가...

○李仁濟委員 그러니까 勤勞者들이 法律上 자기 權利를 찾을 능력이 충분하지 못하니까 一線 事務所에서... 확보만 하고 있으면 뭐해요. 勤勞者들이 정리할 사람들은 빨리 정리해 가지고 다른 職場을 찾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빨리 處分해서 現實化할 수 있도록 指導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勞動部次官 鄭東佑** 그렇습니다.

○**李仁濟委員 韓國피코** 도자라는 것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사실상 도망가 버리면 外交經路로 촉구하는 것밖에 없을테고 실제로 가서 訴訟이라도 國家가 대신해 취 가지고 받아올 수 있습니까?

○**勞動部勤勞基準局長 金龍昭 勤勞基準局長 答辯** 드리겠습니다.

韓國피코는 富川에 소재하고 代表者는 美國人입니다. 100% 投資事業體입니다. 지금 현재 2億4,900萬원이 滯拂되어 있습니다. 이 滯拂業體에 대해서는 約 6,000萬원 債權 확보 못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駐韓美大使館을 통해서 外交經路를 통해서도 접촉하고 있고 또한 駐美韓國大使館을 통해서도 접촉하고 있습니다.

○**李仁濟委員** 반응이 어떻게 나와요?

○**勞動部勤勞基準局長 金龍昭** 지금 계속 접촉을 하고 있어서 그 쪽에서 아직 된단 안된다 하는 公式의인 答辯을 접수 못하고 있습니다.

○**李仁濟委員** 그러면 가서 訴訟도 안되는 것 아니예요? 이것이 法律上은 法人이 책임이 있지 代表者 상대로 가서 訴訟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自發的으로 그 친구가 돈을 내지 않으면 訴訟도 불가능한 것이지요?

○**勞動部勤勞基準局長 金龍昭**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外國人 投資企業體에서 문제되는 점은 이 韓國피코 1個뿐입니다.

○**李仁濟委員** 그러면 앞으로 불시에 休·廢業 할 可能性이 있는 業體도 많이 있죠. 어떻습니까?

○**勞動部勤勞基準局長 金龍昭** 그것은 현재 商工部 財務部와 저희들이 合同會議를 해서 對策을 수립했습니다.

○**李仁濟委員** 지금 상황이 어떠냐 이말이에요.

○**勞動部勤勞基準局長 金龍昭** 지금 현재로서는 外國人 投資業體에 대해서 經營狀況까지도 계속 「체크」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李仁濟委員** 그러면 外國人이 이미 진출해 있거나 앞으로 진출할 會社들에 대해서 賃金債權에 관해서는 法을 만들어 가지고 어

떤 保證같은 것을 받을 수 없어요?

○**勞動部勤勞基準局長 金龍昭** 지금 國內企業體나 外國人 企業體에 대해서 賃金 退職金 특히 退職金에 대해서 社外에 積立을 한다든지 保險加入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도 關係部處하고 상당히 協議하였습지만 外國人 投資企業體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規制措置를 했을 경우에 그 相對國家와 相互主義 原則에 대한 어떤 制裁措置 그 관계 때문에 어떤 法律的인 制裁措置보다도 行政的으로 指導해서 그런 일이 발생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李仁濟委員** 그러니까 우리나라 業體도 外國에 나가려면 그런 어떤 賃金이라든지 退職金에 관해서는 얼마든지 保證하고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勞動部勤勞基準局長 金龍昭** 지금 현재 法的인 것은 없습니다.

○**李仁濟委員** 우선 장래를 위해서 이미 진출한 業體하고 들어온 業體가 退職金하고 賃金を 떼어먹고 가더라고 勤勞者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그런 法的인 裝置를 우선 研究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韓國피코와 같이 이 경우에 本委員의 생각으로는 國家이 債權을 引受해 가지고 우선 勤勞者들 生存權 保障이라는 차원에서 賃金を 지급해 주어도 아무 무리는 없을 것같은데요. 어떤 그런 方案을 강구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많은 額數도 아니고...

○**勞動部次官 鄭東佑** 그것은 外資業體로서 사정이 特殊하기는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國內業體나 外國人 投資業體나 法 적용에 다 아무 特惠가 없는 관계로 政策的으로는 가능합니다. 法的으로는 그것이 不可能하지 않겠는가...

○**李仁濟委員** 그러니까 法的인 裝置를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國內業體야 事前에 保險制度를 적극 권장해 가지고 最小化시킬 수도 있고 또 추적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外國業體는 여기 와서 法人 設立해 가지고 法的으로는 法人이 전부 다 책임이 있는 것인데 經營者가 그냥 보따리 싸 가지고 하루 아침에 도망가 버리면 방

법이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勞動部次官 鄭東佑** 長短點이 있겠습니다. 그런 制度가 악용될 우려도 있고요.

○**李仁濟委員** 그러니까 우선 악용을 根源的으로 막기 위해서 진출할 때 賃金하고 退職金에 관해서는 무슨 그 나라 銀行의 保證을 얻게 한다든지 물론 여러가지 相互主義 原則에 입각해서 檢討가 돼야 되겠지마는 우리나라 企業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外國에 나가서 勤勞者들 賃金 떼어먹고 도망가는 우리나라 企業家가 있다면 그것은 國家的인 입장에서 막아야 될 일 아닙니까?

○**勞動部次官 鄭東佑** 물론 지금 會社 하나라서 저희들이 소홀히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마는 制度的인 裝置는 法으로 마련하기 전에 行政指導 같은 것으로 한번 고려해 보고 그런 數가 많이 늘어나면 法的인 裝置도...

○**李仁濟委員** 당장 韓國피코 어떻게 할 거예요? 6,000萬원은 나라로 보면 큰돈이 아니겠지마는 勤勞者들 개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對策을 좀 세워 줘요.

○**勞動部次官 鄭東佑** 한번 研究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무슨 制度的인 對策이 있을 수가 없고요. 무슨 다른 財產이 없는 한 방금 이야기했던 바와 같이 大使館을 통해서...

○**李仁濟委員** 그것도 人間的인 것으로 호소하는 것인데 도망간 사람이 다시 또 온 것이고 올 可能性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정회하게는 모르지만...

對策을 강구해 주세요.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주로 勞動 集約的인 外國人 投資企業들은 시간이 문제이지 앞으로 속속 빠져 나갈 可能性이 많은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賃金이 높아지니까...

○**勞動部次官 鄭東佑** 앞으로 事前 豫防措置를 강화해야 될 것입니다.

○**李仁濟委員** 물론 滯拂이라든지 이런 事態가 없도록 事前에 잘 해야 되겠지요. 이것 研究해 가지고 國會에 成果를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실 國政監査 때 質疑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聯合勞聯 傘下에 藝人勞組가 設立되어 있지요?

○**勞動部次官 鄭東佑** 예.

○**李仁濟委員** 그런데 定款에 보면 加入對象을 「全國에 종사하는 여러 가지 演藝人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國政監査를 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몇 군데에서 地域藝人組合을 設立하려고 聯合勞聯에다가 認准證을 요청하니까 組織이 중복된다고 해서 拒否를 하고 또 勞動部에 質疑한 결과도 마찬가지로 組織의 重複이므로 불가하다 이런 回示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是正해야 될 것 같은데...

○**勞動部次官 鄭東佑** 잘못됐습니다. 시정해야 되겠습니다.

○**李仁濟委員** 잘못됐죠? 勞動部에서 定款 審査權이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聯合勞聯에 이야기해 가지고 지금 加入되어 있는 藝人組合인가요 그 定款을 고치도록 하고 앞으로 地域에서 藝人組合 設立하려고 하면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그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인정하니까 내가 그냥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것은 紛糾現場에서 굉장히 심각한 爭點이던데 解雇를 당하고 解雇의 效力을 다루고 있는 組合員이 組合의 組合長이라든지 또는 幹部로 選任되어 가지고 任員變更申告를 하면 그것을 拒否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 法解釋의 문제인데 勞動部에서 전에 내려 보낸 勞動組合事務處理指針을 보면 그것은 분명히 가능하도록 解釋을 해 놔는데 아주 최근에 그것을 이해가 잘 안 가는 말로 그런 경우에는 幹部에 選任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拒否해 가지고 지금 그게 아주 큰 爭點으로 되고 있어요. 그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된 것도 아니에요. 88年2월에 勞動部에서 발행한 勞動組合事務處理指針 7페이지에 보면 「法 第3條 但書 4條 後段은 解雇의 效力을 다루고 있는 者를 勤勞者가 아닌 者로 解釋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으로 改正되었으므로 解雇의 正當性 여부에 관하여 法 第40條 및 法 第43條의 規定에 의하여 勞動委員會에 救濟申請

또는 訴를 제기하여 繫留中에 있는 者는 그 다름이 끝날 때까지 組合員으로서의 身分이 擬制되는 것이며 組合員 또는 組合任職員으로서의 地位에 대하여는 組合規約에 定하는 바에 따른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組合員 또는 組合任職員으로서의 地位에 대하여 組合規約에 별 다른 規定이 없으면 아무 法的인 장애가 되지 않는 것으로 解釋을 해 놓고서 이게 여러 번 質疑回示가 내려갔는데요. 그 爭點에 관해서 勞動部에… 任員變更申告는 行政官廳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行政官廳에서 質疑를 했거나 利害當事者들이 質疑한 것에 보면 뭐라고 해놓았느냐 하면 “勞動組合法 第3條 4號 但書 「解雇의 效力을 다루고 있는 者를 勤勞者가 아닌 者로 解釋하여서는 아니된다.」는 條項은 勞動組合의 정의와 組織 그 자체의 보호를 위한 것이며 組合員 個別分身保護條文으로 解釋할 수 없는 것임. 그러므로 解雇된 者는 解雇의 效力을 다루고 있는 者라 하더라도 使用從屬關係는 일단 단절되는 것이고 따라서 勤勞者가 아닌 者는 組合員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고도 여러 말이 있는데 결론은 새로운 組合의 任職員이 될 수 없다 이런 것입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 勞動行政이 아주 잘못된 것 아니예요. 答辯 한번 해 보세요. 잘못됐으면 이것 是正해야 될 것 같아요.

○**勞動部次官 鄭東佑** 먼저 내려간 것이 잘못된 것같은데…

○**李仁濟委員** 먼저 내려간 것이 잘못된 것 같아요?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勞政局長 答辯드리겠습니다.

지금 李仁濟委員님께서 지적하신 事項은 88年2월에 내려간 勞動組合運營指針 자체가 잘못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解釋을 바꿨습니다.

○**李仁濟委員** 1年만에 바꾼 사정이 있어요?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그것은 常識적으로 생각해서 그릇된 指針이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行政적으로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是正 措置를 했습니다.

○**李仁濟委員** 나는 원래 法律解釋에 관해서 사실 勞動部이 解釋을 시비를 잘 안 거는

사람인데 결국 解釋에 異見이 있으면 그 利害關係者가 裁判해서 司法府가 最終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견해를 강요한다거나 이렇게는 안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선 本委員의 견해는 이 指針의 견해가 아주 지당한 것 같아요. 또 처음부터 지금처럼 이렇게 밀고 나왔다면 모르는데 이것 아주 지당하게 해 놓은 지가 1年밖에 안 됐는데 이것을 지금 갑자기 바꿔 가지고 이렇게 하니가 使用者들이 이걸 굉장히 惡用하고 있어요. 우선 현재 實勢를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다시 勞組委員長으로 勤勞者들이 選出하려고 한다든지 또 既存의 委員長으로서 다시 또 委員長으로 再選될 可能性이 있는 사람을 일단 解雇를 해 놓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解雇效力을 다루는 節次 確定되는 節次가 얼마나 됩니까? 1年 2年 3年을 끌면 그 사이에 어떻게든지 사실상 해결해 보겠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惡用한다고요. 그래서 紛糾가 아주 악화되고 있는 현장을 우리가 많이 봤다니깐요. 이것을 참 順理的으로 條文을 解釋해야 되는데… 결국은 누군가가 司法的인 판단을 받게 되면 是正이 되겠지만은 勞動部가 한번 재고해 보세요. 이것 정말 잘못된 解釋입니다. 그리고 이제 使用者에 의해서 얼마나 惡用이 되고 있고 또 그래서 勞使紛糾가 불필요하게 악화되고 있는 것도 한번 잘 研究해 보시고요.

그리고 質疑回示가 어차피 나와서 또 이야기하는데 지난번에 國民年金管理公團 勞使紛糾도 보니까 爭議發生申告후 冷却期間 거처서 罷業에 들어갔는데 管理公團側에서 이런 저런 이유를 달아 가지고 이게 不法罷業이 아니냐 이렇게 勞動部에 質疑를 하니가 아마 質疑書가 가기도 전에 答辯書를 써 놓았던 것 같아요. 「이것은 不法罷業입니다.」 法律的인 견해가 不法罷業이건 어쨌건 그것은 좋은데 내가 勞動委員會인가 어디 가서 그렇게 물어봤어요. 勞動部가 도대체 具體的인 事案을 놓고 이것이 不法罷業이 아니다 하고 解釋할 權限이 있는가… 없지요? 거기서도 없다고 그러던데. 勞動部가 그런 것 解釋할 權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勞動委員會가 판단하든지

法院이 판단할 문제지 勞動部는 다만 法令의 解釋에 관해서 有權解釋할 權限이 있을 뿐이지 具體的인 事案을 놓고 그것이 不法罷業이다 아니다 이렇게 解釋할 權限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合法的인 節次를 다 밟아 가지고 罷業하고 있는데 그 質疑回示를 딱 받아 가지고 너희들 不法罷業이다 해서 警察에다 不法罷業이다 해가지고 그 근거로 해서 公權力이 介入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勞動部 支部가 갈피를 못 잡고 이리는 모습을 보여줘서 되겠느냐 잠개탄을 할 일이 있어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質疑를 마치면서 몇가지 總括的으로 質疑하겠습니다.

현재까지 今年에만 勞使紛糾로 인해서 賣出額 損失이 대개 政府에서 얼마로 算定하고 있습니까? 하여튼 엄청난 額數지요? 몇 兆에 해당하지요?

○勞動部次官 鄭東佑 예.

○李仁濟委員 그러면 次官! 來年 봄에는 어떤 것 같아요?

○勞動部次官 鄭東佑 今年 年末까지 勞使間 安定이 來年 3·4月을 고비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變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걸려있는 團體交涉 마무리가 좀 평화롭게 진행이 되어야겠고 勞使教育이라든지 勞使間의 이해를 촉진시켜서 來年 3·4월에 어려운 고비를 잘 넘겨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 조성을 하고 이래서 잘 나가면 今年 4·5月같은 그런 극심한 紛糾는 來年 3·4月에는 좀 낙관적으로 봅니다마는...

○李仁濟委員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금 우리 經濟全般을 危機로 診斷하는 건해가 많고 또 실제 企業을 하는 사람들을 어쩌다 만나보면 아주 더욱 아우성을 하고 있고 또 國家經濟라는 것이 무너지기는 쉽지만 일으켜 세우기는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勞使問題가 安定的으로 雙方이 다 만족하는 가운데 발전이 되어야 된다는 前提下에서 세가지만을 말씀드리고 質疑를 마치려고 하는데 첫째 지는 우리 勞動行政이 官僚的이고 事務的인 行政으로부터 現場爲主의 實踐的인 行政으로 탈바꿈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문에도 난 이야기지만 英國의 대처 首相이 執權을 하고 保守黨 政權이 들어서 가지고 勞動黨 政權時節에 극심했던 勞使紛糾로 인해서 英國經濟가 몰락해 가고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처 首相이 한 가지 상징적인 예가 石炭鑛 勞組紛糾가 일어났을 때 그 現場에를 직접 들어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눈만 빼놓고는 온몸에 勤勞者들이 던진 石炭을 뒤집어쓰면서 몇 시간동안 거기에서 몸으로 對話해 가지고 해결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강력한 의지에다가 지난 번에 우리 勞動委에서 英國에 가서 보니까 法을 네 번인가 改正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오늘의 英國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는 말에서 나는 오늘날 우리 長官이하 勞動行政 一線에 있는 분들이 과연 그와 같은 정열을 가지고 臨하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나는 勞動行政을 하는 분들이 점퍼를 입고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 것을 본 일이 없어요. 一線에 가 보아도 그렇고... 그래서 우선 과연 이 勞使問題가 우리 韓國經濟의 死活的인 關鍵이라면 그런 어떤 熱情을 가지고 臨해 달라는 것이고 두번째는 지금 많은 분들이 그렇고 또 勞動行政當局도 이 在野勞動運動團體 이 쪽이 과격한 勞使紛糾의 원인이라고 診斷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여기 勞動委員會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왔지만 在野勞動運動하는 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 했다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고 또 그들에 대한 精確한 情報를 精確하게 가지고 있지도 않고 도대체 對話의 상대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사람들하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도 하고 法律上의 상대는 지금 안된다고 하셨지만 사실상 같이 걱정도 해 보고 이런 자세의 轉換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저 마치 뱀을 대하듯이 이렇게만 해 가지고 문제가 해결될것느냐 그래서 그 두 가지 점을 깊이 생각해 주시고 여기 여러가지 작은 문제들을 많이 質疑를 했지만 크게 볼 때 그런 두 가지 점에서 勞動行政을 맡고 계신 분들이 心機一轉해서 한

다면 來年부터는 좋아질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來年 봄을 樂觀할 아무 근거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런 제 心情을 말씀드리면서 本委員의 質疑를 마치고자 합니다.

○委員長代理 金炳龍 李仁濟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李相洙委員 質疑해 주세요.

○李相洙委員 우선 豫決委가 끝났으면 長官께서 직접 오서가지고 答辯에 臨했으면 좋겠습니다. 長官이 취임한 이후에 최초의 政策質疑로 생각되는데 지금 豫決委를 계속하고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가능하시면 직접 長官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

○勞動部次官 鄭東佑 8시부터 續開豫定인데 지금 食事중인 것 같습니다.

○李相洙委員 그러면 次官께서 책임있는 答辯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勞動部次官 鄭東佑 예, 있습니다.

○李相洙委員 우선 釜山에 있는 콘테이너埠頭運營公社인데 英語로 얘기하면 BCTOC입니다. 제가 BCTOC라고 略稱해서 부르겠습니다.

勞組의 設立申告書가 반려되어 가지고 문제가 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勞動部長官 鄭東佑 예, 알고 있습니다.

○李相洙委員 반대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勞動部次官 鄭東佑 구체적인 事項을 所管局長으로 하여금 答辯드리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李相洙委員 좋습니다.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勞政局長입니다.

李相洙委員님께서 質疑하신 事項에 대해서 答辯드리겠습니다.

釜山콘테이너埠頭運營公社 勞組는 89年8月26日에 設立해서 管轄行政官廳인 釜山直轄市에 勞組設立申告書를 제출했습니다. 釜山直轄市에서는 既存의 釜山港運勞動組合과 組織對象을 같이 하고 있어서 勞動組合法 第3條 但書 第5號에 違反된다는 이유로 반려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相洙委員 지금 이 件과 關係해서 勞動部에서 回示를 두 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84年度 7월에 BCTOC에 常備으로 採用되어 들어온 사람들이 港運勞組에 加入할 수 없다는 回示를 내건 적이 있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별도의 勞動組合을 만들려고 하니까 今年 8月2日에 回示하기를 組織重複이 되니까 안된다 이렇게 回示를 두 번 내렸지요?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前者는 확인 못했지만 後者는 저희가 내렸습니다.

○李相洙委員 우선 前者가 분명히 내려간 回示公文이 있는데요 내려갔다는 前提下에서 두 回示는 相反되는 것 아닙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예, 내려갔다면 相反되는 事項입니다.

○李相洙委員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回示가 우선합니까 勞動組合事務處理指針이 더 우선합니까?

處理指針은 일반적이고 包括的인 의미에서 사실상 行政機關 內部에서는 下部機關을 완전히 規律하는 이런 입장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回示는 特定事案에 대해서 勞動部가 有權解釋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處理指針이 더 우선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運營指針은 일반적인 行政指針입니다. 行政內規에 속하는 것이고 質疑回示는 法律關係를 有權解釋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有權解釋事項이 먼저 더 강한 效力을 갖는다고 보겠습니다.

○李相洙委員 그렇습니까? 제가 보기에 오히려 일반적인 法令이나 法規解釋에 관해서 일반적인 추상적으로 내려지는 業務處理指針에 더 우선하고 특수한 어떤 문제에 관해서 구체적인 回示는 오히려 下位的인 어떤 意思表示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좋습니다. 그것은 서로간에 견해의 차이니까 문제가 안되고 勞動組合 業務處理指針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地域別勞組의 組織對象範圍내에서도 企業別單位勞組의 設立은 가능하다 이런 業務處理指針이 있지 않습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예, 있습니다.

○李相洙委員 지금 이 業務處理指針은 有效합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예.

○李相洙委員 그러면 또 하나 묻지요.

지금 BCTOC가 組織重複이 된다는 판단을 내린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釜山港運勞組規約을

보면 港灣 鐵道 陸上 水産物의 荷役業 運送業 保管業 및 이와 연관된 附帶業 또는 其他事業에 종사하는 勤勞者로 釜山港運勞組를 構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釜山港의 BCTOC勤勞者는 荷役勤勞者든 또는 事務職勤勞者든간에 이 荷役事業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아서 釜山港運勞組의 組織範圍에 속한다고 보았고 그리고 지난 78年9월에 釜山 北콘테이너埠頭運營公社 所屬勤勞者들이 勞動組合을 構成했는데 89年5月31日까지 全體勤勞者 850餘名중에서 약 500餘名이 釜山港運勞組에 加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加入해서 勞組活動을 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規約上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釜山港運勞組에 所屬된 組織으로 저희는 보았습니다.

○李相洙委員 우선 실제적으로 常備勤勞者들이 港運勞組에 加入되어 있는지의 與否는 이따가 판단해 보기로 하고 우선 아까 回示指針이 有效하다고 했는데 港運勞組의 組織規約를 보면 “港灣 鐵道 陸上 水産物의 荷役業 運送業 保管業 및 이와 관련되는 附帶業 또는 기타 事業에 종사하는 勤勞者…” 해가지고 사실상 不特定多數의 모든 勤勞者들 뭐 地域이나 業種에 관계없이 다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港運勞組는 어떻게 보면 일정한 埠頭를 前提로 해서 볼 때에는 地域的인 勞組와 같은 성격을 띠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예. 맞습니다. 地域的으로 組織된 勞動組合입니다.

○李相洙委員 그러면 港運勞組를 地域別 勞組라고 볼 수 있겠느냐 그러면 아까 指針을 보니까 地域別 勞組의 경우도 그 地域 내에서 企業別 勞組의 새로운 設立이 가능하단다 이렇게 規定되어 있지 않습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예. 그렇습니다.

그 設立이 가능하단다 되어 있는 것은 勞動組合法의 諸般規定에 合當할 경우에 가능하단다 얘기입니다. 勞動組合法 第3條 但書 5號에 의한 組織重複이 안되는 범위내에서 設立可能하단다 저희는 그렇게…

○李相洙委員 아니 設立이 가능하단다 얘기는 최소한 組織으로 重複은 되지 않는다는

것을 前提로 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다른 어떤 勞動組合設立上的 瑕疵가 있는 것은 別個로 하고 그 指針은 重複對象이 안되는 것으로 設立될 수 있다 이런 취지가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예. 그렇습니다.

○李相洙委員 그렇다면 지금 현재 BCTOC를 釜山에 있는 한 埠頭의 한 港運會社의 單位企業別 勞組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그 指針에 의해서 반드시 設立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金炳龍幹事, 韓光玉幹事와 司會交代)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그렇습니다. 일단 釜山港運勞組規約에 의해서 釜山港運勞組所屬 勞組에 加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港運勞組規約上뿐이 아니고 사실상 港運勞組에 組織되어 있는데 그것을 分離 獨立해서 별도의 勞動組合을 하거나 하는 문제는 그 組織내에서 自律的으로 협의의 해결이 되어야 될 事項입니다.

지금 埠頭運營公社에 전혀 港運勞組組織이 없다면 물론 그 사람들이 별도의 勞動組合을 저희 運營指針에 나가 있는 바와 같이 당연히 組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 勞動組合이 組織되어 있고 加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組織을 分離한다든지 獨立을 하려면 勞動組合하고 협의가 되어서 自律的으로 해결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李相洙委員 그러니까 그 指針을 有效하단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까.

地域別 勞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地域내에 單位企業勞組의 設立은 가능하단다 指針은 有效하단다 했는데 그렇게 보면 이 港運勞組는 地域別 勞組라고 했고 분명히 BCTOC는 單位企業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 指針에 의해서 勞組가 設立될 수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그 企業에는 이미 港運勞組에 加入한 勤勞者가 있기 때문에 안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예. 그렇습니다.

○李相洙委員 그렇다면 제가 한 번 이런 예를 들어보지요. 현재 釜山에 있는 다른 港運勞組… 이런 경우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여러 個가 있는데요 東洋通運勞動組合

이 있습니다. 이것은 釜山市 中區 中央洞 5街 16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미 그 港運勞組 組合員이 지금 180名 常駐 근로자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마디로 東洋通運株式會社에는 航運勞組의 근로자가 180名 근무하고 있고 별개로 직접 東洋通運과 勤勞契約을 맺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별도의 勞組를 만들었어요. 이 BCTOC하고 하등 다를 것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89年4月24日 勞組設立을 했는데 그러면 방금 局長님 견해와는 背馳되지 않습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李相洙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荷役會社의 本社職員들은 별도의 勞動組合을 구성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荷役作業員들은 港運勞組에 소속되어 있다라도...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BCTOC는 設立當初부터 釜山港運勞組 組織으로 편입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勞組組織自體에서 서로 분리시켜준다든지 독립시켜준다든지 內部 自律의인 해결이 되어야지 官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李相洙委員** 內部的으로 근로자가 선택하는 것은 別論으로 하고 일단 行政機關에서 할 부분은 行政機關에서 法대로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규약상으로 그렇게 해석이 된다는 사실상 港運勞組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組合員으로 있기 때문에 사실상 組織이 있으니까 組織의 중복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되는 것입니다.

○**李相洙委員** 東洋通運勞動組合도 똑같은 형태의 會社인데 港運勞組 근로자가 180名 있는데 금년 4月24日 별개로 직접 東洋通運과 勤勞契約을 체결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勞動組合을 設立했습니다. 그런 會社가 또 있어요. 협성 컨테이너터미널 勞動組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會社처럼 이 경우도 인정하면 紛糾은 끝날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문제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물으려면 끝이 없습니다. 常備 근로자와 港運勞組 근로자는 業務內容 人事權 勤勞規約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상 한 事業場에 있지만 별개의 근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른 예도 있고 또 제가

釜山市에 가서 質疑할 때 勞動部解釋이 문제가 있는데 “직접적인 回示가 내려왔기 때문에 차마 그에 반하는 申告證을 줄 수가 없으니까 李委員께서 올라가셔서 勞動部長官께 물어본 다음에 勞動部長官도 그 回示가 문제가 있다는 판단만 내려주신다면 바로 釜山市에서는 申告證을 주겠습니다. 우리도 골치아픕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도 부당하다고 봅니다.” 이런 얘기를 실제 實務者들이 얘기를 했고 그것이 監査 결과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李仁濟委員 케이스도 꽤히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是正하겠다고 했는데 이 문제도 是正할 용의 없습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실제로 勞動組合의 組織은 인위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自律의으로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 釜山港運勞組組織이 거기 있기 때문에 別途勞組를 設立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입장에서 質疑回示도 나가게 됩니다.

문제는 自體組織에서 釜山港運에서 분리 독립시켜 준다든지 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李相洙委員** 지금 BCTOC 근로자들이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안되면 罷業을 불사하겠다는 진정서를 우리 黨에도 제출해 왔는데 만일 이런 「컨테이너」埠頭荷役に 罷業이 일어나면 國家輸出面에도 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 만에 하나라도 常備 근로자들 BCTOC에서 公採한 근로자들 중에서 단 몇 명이더라도 지금도 港運勞組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들은 港運勞組에 들어가 있기를 바라지 않느냐는 면에서 저도 再考를 해보겠지만 이제는 완전히 분리되어 가지고 常備 근로자 644名은 별도의 勞組를 만들겠다고 하고 港運勞組側에 속하는 142名은 현재 港運勞組에 들어 있고 그래서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한 마디로 港運勞組의 既得權이 약간 침해될 우려가 있을 뿐입니다.

政府當局으로 봐서도 별다른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런 技術的인 측면에 관해서는 政府가 과감하게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근로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니까? 왜 勞動部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인 입장을 취합니까?

○李仁濟委員 그래요. 그것은 勞動政策的인 것이니까 前向的으로 해결하도록 하세요.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釜山港運勞組로 하여금 自體的으로 잘 처리하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李相洙委員 지금 釜山市廳에서 設立 申告證을 내주도록 되어 있는데 勞動部에서 새로운 回示만 내려오면 또는 勞動部の 새로운 有權解釋만 勞動委員會에서라도 있으면 자기들은 바로 措置를 취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回示를 내리 보내겠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是正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하게 이야기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가 계속해서 물겠습니다.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釜山港運勞組로 하여금 自體是正도록 저희가 강력히 지도하겠습니다.

○李相洙委員 自體是正이 안되면 勞動部에서 처리하시겠습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勞動組合의 組織은 自律性을 저희가 존중해주시기 때문에 釜山港運勞組가 문제의식을 갖고 傘下 組織을 再整備하도록 저희가 지도하겠습니다.

○李相洙委員 이것이 他律的으로 勞動部가 관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문제는 현재 勞組設立申告書가 들어가 있는데 釜山市廳에 대해서 勞動部에서 勞動行政에 있어서는 일종의 上級機關으로 되어 있으니 한 마디 해가지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지난번 回示가 문제가 있다 오히려 指針이 옳다 그러니까 申告書를 발부해 주라 이 한 마디만 하면 끝납니다. 이것은 自律的인 문제하고 관계없습니다. 行政機關이 자기 업무를 고유하게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次官께서 방금 들어셨으니까 오히려 책임있는 분이 결단을 내려서 말씀해 주십시오.

○勞動部次官 鄭東佑 勞政局長도 答辯을 올렸습니다. 이는 勞組組織 관할에 있어서 勞動組合法上 組織對象이 중복될 때는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다 보니까 지금 釜山港運勞組規約에 관할에 있는 근로자는 몽땅 자기 組織對象으로 해놓은 것이 하나 있고 둘째는 방금 말씀하신 會社에는 이미 港運

勞組에 실제로 가입된 勞組員들이 상당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되고 그러나 훨씬 많은 수가 獨立勞組를 만들기를 원한다 이 문제가 지금 새로 대두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後者의 요구에 의해서 分離獨立勞組를 인정할 것인가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要件때문에 인정하기가 어려운가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일 즉시 우리가 그 事項을 한번 더 확인해 보고 또 釜山港運勞組로 하여금 일단은 自體的으로 分離해서 지금 다른 예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정리를 해서 自體的으로 해결하도록 강력하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李相洙委員 우선 1個 企業體내에도 최근에 근무내용이 다른 경우에 別個의 勞組가 생긴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東洋製藥의 生産職 근로자와 販賣職 근로자는 별도의 勞組를 만들어서 같은 企業內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겠지요? 그리고 지금 1個 企業內에 2個 勞組가 있는 곳이 여기 名單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BCTOC경우도 1個 企業內에 港運勞組 근로자들이 만들어진 港運勞組支部가 있을 수가 있고 또 別個 勤勞條件에서 일하고 있는 常備 근로자들이 또 다시 勞組를 만들 수 있다 그것입니다.

저들 말씀드리지만 BCTOC에서 직접 채용한 사람들은 BCTOC하고 勤勞契約을 맺었기 때문에 港運勞組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만일 港運勞組가 BCTOC에 직접 採用되어온 근로자들을 위해서 團體交涉을 해준다면 그것은 第3者가 됩니다. 政府에서 말하는 第3者가 개입해서 團體協約을 맺어주는 물이 되어버립니다. BCTOC에 바로 들어온 근로자들과 港運勞組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왜 港運勞組가 그분들에 관한 勤勞條件에 관해서 BCTOC하고 團體協約을 해줍니까?

○勞動部次官 鄭東佑 李委員님 말씀은 그러한 대상을 港運勞組 組織對象으로 했다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委員님 말씀대로라면 자기네들 勞務供給權이 미치지 아니하는 대상까지 자기네 組織對象으로 했다는 規約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내일 확인해서

만일 釜山港運勞組規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하면 아까 勞政局長이 答辯드린 대로 자체에서 規約 整理를 하든지 지도를 통해서 整理를 하도록 강력하게 行政指導를 하겠고 만일 李委員님 말씀대로 자기네들 勞務供給權이 미치지 아니하는 會社자체에 고용된 사람으로서 組織중복의 當爲性이 없는 대상이라면 별도로 다른 會社에 2個 勞組가 인정되듯이 인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港運勞組의 組織對象이 어느 정도의 범위를 잡아났는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李相洙委員 제가 확인한 것을 말씀드리는데 BCTOC에 公採로 들어온 사람들은 직접 BCTOC代表하고 勤勞契約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港運勞組 근로자로서 파견나와 있는 사람들은 일단 港運勞組에 들어간 다음에 配置되어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BCTOC의 代表와 勤勞契約을 맺고 들어온 사람들은 港運勞組와는 別個입니다. 그러니까 勤勞契約의 締結對象이 우선 다릅니다. 그리고 근무도 港運勞組에서 파견나온 사람들은 단순한 日傭職이면서 都給의인 그런 의미에서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BCTOC에 바로 採用된 사람들은 완전히 月定給을 받는 常傭된 근로자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勞働部勞政局長 具然春 보충해서 勞政局長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李相洙委員 말씀하신 대로 本社 근로자와 荷役근로자가 따로따로 조직을 갖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BCTOC는 지금 같이 港運勞組 所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가지 다른 會社와 BCTOC가 다른 것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東洋通運의 경우에는 本社 근로자들은 東洋通運의 직속 근로자입니다. 그리고 거기의 荷役勤勞者들은 港運勞組의 組合員으로서 勞務供給 제공해서 거기서 작업한 額數에 따라 그것을 勞組서 賃金을 수령해서 分配하는 制度입니다.

이런 制度가 되어 있고 다만 BCTOC에 當初 148名인가 잔류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마는 當初에는 이 사람들이 역시 港運勞組 所屬의 組合員으로서 荷役作業에 동원되는 勞務供給에 의해서 作業이 이루어졌

었습니다.

그러나 釜山港에 BCTOC가 設立되면서 이 사람들이 직장을 잃게 되니까 港運勞組에서 BCTOC와 協約을 맺어서 BCTOC가 港運勞組 組合員을 직접 採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港運勞組의 作業員의 身分으로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採用된 BCTOC의 직원으로서 같이 月給을 받고 일합니다.

그 다음에 公採되어 들어간 職員들은 勞動組合과 상관없이 모집되어서 근무를 하고 給料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職種에 있어서는 다르지만 身分上으로는 두 분야가 다 똑같이 BCTOC의 직속근로자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洙委員 마지막 부분에 관해서는 서로 지금 인식이 다른데 지금 말씀하시기를 港運勞組에서 파견되어서 와 있는 근로자들도 직접 BCTOC와 勤勞契約을 체결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일반적으로 港運勞組가 지금 「클로드스숍」制度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港運勞組에 加入되어 있는 노동자들은 직접 荷役業都給을 주는 會社와 직접 勤勞契約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고 港運勞組가 직접 체결하는 것 아닙니까?

○勞働部勞政局長 具然春 BCTOC의 근로자들과 다릅니다. BCTOC 근로자들은 BCTOC가 開設되니까 釜山港運勞組 組合員들이 상당히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 축소된 부분만큼 BCTOC에서 직속 採用을 하는 것으로 협의 되어서 採用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港運勞組 組合員이라고 해서 전부 「클로드스숍」에 의한 勞務供給制는 아닙니다. 드문드문 어떤 企業의……

○李相洙委員 지금 서로간에 인식하고 있는 것이 다른데 어때요? 현재 한 800名 근무하는데 정확하게 資料를 보니까 港運勞組에서 파견나간 근로자가 148名되는데 BCTOC와 직접 勤勞契約을 체결하고 들어간 근로자가 한 600名되는데 그중 과거에 自體勞組를 만들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의 勤勞福祉를 위해서 港運勞組에 대거 가입했던 근로자중에서 현재 남아 있는 근로자가 27名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27名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勞組를 만들 수 없습니다 하는 얘기는 형평이나 구체적인

妥當性에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쪽 애기한 것을 종합해보면 우선 地域別 勞組의 경우에도 그 地域內에서 企業別 勞組의 설립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둘째 港運勞組는 地域別 勞組라는 말씀도 하시고 BCTOC는 企業別 勞組로서 港運勞組의 地域內에 들어가 있다 따라서 그 指針에 들어맞기 때문에 勞組設立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마지막으로 勞動部에서 난색을 표명하는 것은 BCTOC에 직접 勤勞契約을 맺고 들어간 사람중에서 일부가 지금 港運勞組에 들어가 있다 그 숫자가 극히 미미하고 그렇다면 그것은 무시하고 一般指針에 따라서 設立申告證을 내주도록 하겠다는 얘기를 한 것으로 기억되는데 맞습니까?

○勞動部次官 鄭東佑 문제는 組織의 중복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李相洙委員 組織이 중복된다고 지금도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勞動部次官 鄭東佑 港運勞組의 規約에 지금 BCTOC도 자기네들 組織對象으로 되는 것으로 規定되어 있다면 아까 勞政局長 이 야기와 같이 그것이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李相洙委員 그것은 指針과 背馳되는데요. 地域別 勞組를 세우겠다 해가지고 이 地域의 荷役 노동자들은 우리 勞動組合의 組合員이라는 규약이 있다면 그 地域內에서 다시 근무하는 또 다른 企業의 荷役 근로자는 이미 勞動組合을 設立할 수 있다는 것이 指針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중복이 안되는 것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勞動部次官 鄭東佑 중복이 안되는 전제가 되어야 되지요.

○李相洙委員 그것을 또 중복이 안되는 것이라고 解釋을 붙이는데 좋아요. 指針을 한번 보면서 얘기해 보지요. 指針은 바뀌 얘기하면 그런 경우는 중복이 안된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입니다. 중복이 되느냐 안되느냐는데 관한 指針입니다. 解釋上……

제가 指針을 보겠습니다.

○勞動部次官 鄭東佑 指針內容이 그럴 겁니다. 企業別 勞組가 인정되면 그것이 原則이

고 地域別 勞組속에서도 거기에 중복대상이 안되면 例外的으로 企業別 勞組도 인정된다 이런 解釋일 것입니다.

○李相洙委員 이것 보세요. 지금 勞動組合法 施行令과 施行規則의 改正에 따라서 그 業務處理要領을 시달한 것인데 여기 보면 地域別 勞組의 組織대상 範圍內에서도 企業別 單位勞組의 설립은 가능하며 同 地域勞組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다른 地域勞組의 설립도 심지어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港運勞組라는 地域別 勞組가 있고 그 港運勞組의 組織대상의 範圍內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企業別 單位勞組의 설립은 가능하다는 것이 여기 명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勞動部次官 鄭東佑 그러나 그 組織對象이 중복이 안되어야지요. 각각 따로 대상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對象을 하나놓고 이 組織도 인정하고 저 組織도 인정하고 地域 두 個 세 個 企業單位 이렇게 勞組를 난립을 시킬 수 없습니다.

○李相洙委員 지금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地域別勞組라는 큰 범위의 틀을 한정하고 그 범위내에 있는 모든 勤勞者는 우리 組合의 組合員이 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넓은 의미 아닙니까? 다시 그 넓은 의미에 속해있는 勤勞者라도 勤勞者로서 일하면서 企業別勞組를 만들겠다고 하면은 허용된다는 취지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勞動部次官 鄭東佑 그것은 地域別 대상에 떨어져 나와야지요.

○李相洙委員 떨어져 나와서 지금 勞組를 만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바꾸어 얘기하면은요.

○勞動部次官 鄭東佑 規約을 고쳐야지요.

○李相洙委員 規約을 어떻게 고쳐요.

○勞動部次官 鄭東佑 먼저 있는 港運勞組規約을 그렇게 고쳐야지요.

○李相洙委員 그러면 아까 李仁濟委員이 演藝人勞動組合이 全國的으로 모든 演藝人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勞動組合의 組織對象으로 지금 規約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規約을 고치게 하겠다고 얘기했고 또 각 地域에서

演藝人勞組가 설립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허용하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도 만일에 처음에 全國을 대상으로 한 그런 勞動組合이 規約 고 쳐주지 않으면 支部에서 勞組 못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勞政局長이 答辯드리겠습니다.

全國演藝人勞動組合은 全國單位로 몇 가지 종목을 지정을 해서 規約을 만들어 가지고 勞組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設立申告證이 나갔는데 그 設立申告證 교부한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全國을 하나의 單位로 해가지고 全國單位 지정한 것은 일체 組織重複問題를 가지고 독점을 하려 드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폐단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 勞動部에서 지침을 세운 것이 「地域別의 地域이라는 것은 小單位의 市·郡·區등 이러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좁혔습니다. 그래서 當初에 設立申告된 演藝人勞組를 좀 시정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현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이 BCTOC問題는 지금 組合員이 잔류되어 있는 사람이 148名과 27名이 잔류가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뜻을 같이 해서 거기 釜山港運勞組를 탈퇴해 가지고 한다면 거기에 새로운 勞動組合을 조직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잔류되어 있는 한은 組織重複問題가 있기 때문에 組織重複問題는 解釋問題가 아니고 勞動組合法 3條 但書 5號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별도로 없지 않나 저는 實務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李相洙委員** 지금 局長께서는 정확하게 인식을 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현재 BCTOC에 보면은 148名인가요. 그 사람들은 港運勞組의 組合員으로서 파견 나와서 勤務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머지 600名은 직접 BCTOC하고 勤勞契約을 맺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직접 勤勞契約을 맺고 일하는 사람들에서 27名이 港運勞組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것은 사실상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만일에 말씀하실 때 27名이 港運勞

組에서 나와야만이 全體的으로 그 勞組設立을 인정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 말이 될까 모르겠지만 지금 같은 企業에 勤務하지만 148名은 별개 勞組를 만들고 있어요. 나머지 사람들이 또 별도의 자기 勞組를 만들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미 얘기했지만 1個 企業에 일이 다르면 두個 勞組도 있을 수 있고 또 아까 내가 예를 들었지만 BCTOC와 같은 동양통운勞動組合같은 경우는 港運勞組의 組合員들이 180名 와서 일하지만 또 별개로 자기들이 勞組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해줘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가요.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港運勞組에서 파견 나와 있는 사람이라 하는 148名도 身分上으로는 BCTOC와 직접 勤勞契約을 맺은 勤勞者에 틀림이 없습니다.

○**李相洙委員** 그러면 이렇게 서로 정리할까요?

148名이 港運勞組에서 파견 나와서 勤務하는 사람들인데 현재는 직접 BCTOC하고 勤勞契約을 체결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港運勞組가 별도로 勤勞契約을 체결하거나 團體交涉을 할 권한이 있나요?

도대체 港運勞組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직접 勤勞契約을 체결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港運勞組가 무엇때문에 團體協約을 체결하고 같이 협의하고 그렇습니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港運勞組에서 파견되어 나온 사람들은 一般的인 港運勞組의 勤勞者처럼 港運勞組가 전부 다 賃金 결정하고 都給 받고 일하는 것입니까?

○**金東仁委員** 그것이 아니지요. 港運勞組가 「콘테이너」부두에 보낼 적에 완전히 運營公社의 職員으로서 보냈으니까요.

○**李相洙委員** 職員으로 보냈다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 후에 계속해서 港運勞組가 BCTOC하고 團體協約을 체결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金東仁委員** 分會가 있으니까 分會에서 했지요.

○**李相洙委員** 分會라는 것은 港運勞組의 分會 아십니까? 그러니까 바꾸어 얘기하면

港運勞組가 체결하는 것 아닙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그것은 그 會社職員으로 組合員이 있기 때문에 團體協約을 체결한다고 보겠습니다. 組合員이 없으면 BCTOC하고 團體協約을 체결할 리가 없지요.

(韓光玉幹事, 金令培委員長과 司會交代)

○**金東仁委員** 파견이 아니고 완전히 職員으로서 되는 것입니다.

○**李相洙委員** 지금 현재 港運勞組의 支部 연락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港運勞組에 속해 있는 勤勞者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港運勞組는 특수한 어떤 勤勞組織體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보면 BCTOC에 勤務하는 勤勞者들은 다른 港運勞組하고 다르다는 얘기인가요?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예. 그렇습니다.

○**李相洙委員 盧武鉉委員!**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盧武鉉委員** 常備形態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날그날 都給形式의 공급은 아니지요. 그렇다고 해도 다른 바 없지요.

○**李相洙委員** 지금 BCTOC代表하고 계약을 맺어서 새롭게 勞組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별도로 勤勞契約을 체결하고 있고 港運勞組 속에 있는 勤勞者들은 지금 별도로 港運勞組를 통해서 團體協約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BCTOC에 勞動組合을 設立하려고 하는 사람이 뒤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事實關係를 한번 확인하고 싶은데요.

缺禮가 안된다면 뒤에 나와 있는 분한테 잠깐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金令培** 그것은 議決이 되어야 됩니다.

○**金東仁委員** 그럼 常備으로서 運營會社에 所屬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래요?

港運勞組의 組合員 資格은 가졌지마는 實質적으로는 運營公社에 종사하도록 되어 있지요. 혼동해서는 안되는데 문제는 港運勞組의 組合員이지마는 결국 그 사람들 資格은 저분들과 똑같다는 얘기에요.

○**盧武鉉委員** 저 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港運勞組 組合員으로서 자기가 탈퇴하거나 除

名 당하거나 組合員으로서의 身分을 상실하면은 BCTOC에서도 고용할 수 있는 근거를 상실한다는 얘지요. 중요한 것은 그것 아닙니까?

○**金東仁委員** 내가 하는 얘기는 그 사람들이 완전히 탈퇴를 해서 저분들과 같이 탈퇴를 해가지고 별도의 勞動組合을 만든다면 다르지만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을 놓아두고 별도로 한다는 것은 3條5號에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李相洙委員** 지금 말씀하신 얘기는 이렇게 이해됩니다.

港運勞組의 組合員인 것은 맞는데 一般的인 다른 港運勞組에서는 都給制로 많이 일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勤勞의 형태가 거의 常備化 되어 있다는 勤勞形態만 약간 달라진 것으로 얘기하는데 어쨌든 다른 港運勞組의 勤勞者들은 都給制로 일하더라도 여기에 BCTOC에 나와있는 港運勞組 勤勞者들은 常備勤勞를 하더라도 港運勞組 勤勞者임에는 분명하고 같은 常備을 하더라도 BCTOC하고 직접 계약해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의 근로형태나 모든 내용이 港運勞組에서 와서 常備하는 사람들과 勤勞內容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1個 企業의 勤勞內容이 다르면 勞動組合을 두 個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다른 現在 釜山의 荷役會社에 실제로 비슷한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勞組가 設立되어 있다는 것을 참작해서 이 문제도 해결하시지요. 어떻습니까?

○**勞動部次官 鄭東佑** 우선 釜山港運의 규약을 확인해야 되겠고 李委員님 말씀을 余의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組織變更에는 여러가지 副作用들이 따르기 마련이고 法 執行에 있어서 大原則이 있지 않습니까? 地域別 勞組를 인정한다 또 그 속에 例外的으로 企業別 勞組도 인정한다 또 같은 地域에도 두 個 세 個 있을 수 있다. 다만 이것이 어디까지나 組織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個別勞組가 인정되는 것으로 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위배되지 않는 限 인정하겠습시다.

그러나 거기에 위배되면 일단 組織 중복부터 해소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시다.

다. 내일부터 즉시 그 문제를 實態를 확인해 보고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을 사실 결과에 따라가지고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相洙委員 문제는 여기에서 더 이상 거론하지 않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個別的으로제가 물을 수 있겠고 그러니까 일단 檢討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알려줄 수 있습니까?

○勞動部次官 鄭東佑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盧武鉉委員 盧武鉉委員입니다.

한두 가지만 보태서 얘기하겠습니다.

港運勞組規約 구성범위에 관해서 5條에 나와 있는데 이 점 유념하여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本組合은 船員綱領規約을 贊同하고 港灣鐵道 陸上 水産物의 荷役業 運送業 保管業 및 이와 연관되는 附帶業 또는 기타 事業에 종사하는 勤勞者로서 構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組織對象에 있어서 本組合은 船員綱領規約을 贊同하는 사람에 限해서 組合員이 된다는 얘기로 제한해서 볼 수 있는 側面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地域勞組 設立에 관해서 勞動部에서 나온 勞動組合 業務處理指針에도 이와 유사한 취지의 것이 있습니다.

地域勞組가 設立될 때에 贊同하는 사람으로 한정해 주어야 된다는 이런 指針이 있고 여기에도 있어서 이 점은 범위를 한정하는데 도움이... 단지 이 規約을 가지고 보더라도 贊同하는 사람이니까 한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뒤 條項을 보면 「港灣 鐵道...」 「콤마」가 꼭 찍혀있는데 아무리 보아도 결국은 「港灣 鐵道 陸上 水産物의 荷役業」 이렇게 읽어야 할지 港灣 鐵道 陸上 다 「콤마」가 하나씩 있고... 여기까지는 그래도 特定된다고 봅시다.

그런데 運送業하면 釜山市內 運輸業은 釜山港運勞組니까 釜山市內의 港灣에 한번 車가 들어오면 그 車는 전부 다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港灣物動量을 운송하는 모든 차량은 다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고 保管業도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釜山港灣을 거쳐서 들어오거나 나가는 모든 차량이 다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고

이와 관련되는 附帶業까지 넣으면 그러면 어디까지가 附帶業이나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또는 기타 事業에 종사하는 勤勞者까지 構成해 버리는데 이 條項은 사실은 勤勞法 3條5號... 이 문제가 생기기 이전부터 있었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범위에 해당되는 사람은 들어오고 싶은 사람은 다 들어올 수 있도록 그것을 넓게 인정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으로 그 以後에 組織對象問題가 이렇게 다시 규정이 되고 하면서 그대로 적용해 버리니까 大韓民國 勤勞者는 대충 運送業이나... 바다를 끼고 鐵道하고 연결되면 組織對象이다 증부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즉 船員綱領 規約을 찬동하는 사람으로 限定하는 것이 地域勞組 一般原則과도 옳을 것 같습니다. 業務處理指針 이런 점도 있고 누가 들어도 다 범위 한정하기가 힘들다는 것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면 본시 찬동해서 加入했던 사람이 뒤에 탈퇴하지 않았느냐 이 문제에 관해서는 李相洙委員이 지적했듯이 140餘名에 限한 단체협약상 港運勞組所屬員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하면 근무형태가 비록 常備職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 근무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지요.

그러나 나머지 組合을 결성하겠다는 사람들은 港運勞組 組合員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하더라도 BCTOC에 근무하는 데 적법성에 아무런 瑕疵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港運勞組가 사실상 가지고 있는 特殊性에 엄청난 差異가 나는 것입니다. 근무형태도 많은 差異가 나지만 港運勞組의 이런 制度로 인해서 勞務供給의 독점권의 범위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差異가 남습니다. 現實으로 이 문제는 이렇게 오랫동안 다투어져 왔는데 勤勞者들 입장에서 볼 때에 하나의 규정에 의해서 어떤 組合은 만들어져 있고 우리는 안되고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동진이라든지 협성「콘테이너」라든지 東洋通運이라든지 이런 組合은 다 되어 있는데 우리는 안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港運勞

組를 각별히 勞動部가 사랑하셔서 우리를 탄압하는 것이라고 하는 인상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現實的으로 하나의 法 아래에 여러가지 制度가 병존함으로 해서 勞動者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며 勞動部 公務員들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저희 스스로도 이해를 못하고 勞動者들은 절대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어쨌든 이 문제로 인해서 罷業으로 들어가고 극렬한 투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BCTOC 물동량을 생각해 보시면 현실문제인데 勞動者들이 결코 港運 勞組를 양보하려고 하지 않겠지만 그들이 이것을 메넴으로 해서 얼마만큼 組織力이 弱화되고 무슨 內部的인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 쪽은 떨어져 나옴으로써 엄청난 利益이 있습니다.

港運勞組의 근무형태중에서 一般的으로 常備이 아니기 때문에 소위 인사에 있어서 여러가지 휴일규정이란지 기타 常備職임을 前提로 하는 勤務條件이 많이 있는데 이 문제를 전혀 論理가 다른 사람한테 맡겨놓았다 日備雜給職같은 그런 都給形態의 勞務者들에게 常備勞務者들의 勤務條件을 협상해 달라고 하는 것이 자기 살림을 남한테 맡겨놓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엄청난 이해관계를 가지고 필사적으로 自己의 權利를 쟁취하려고 한다 이런 현실을 인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BCTOC가 罷業에 들어갔다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勞動法의 조그마한 규정해석이 어떤 결과를 나오게 했는가 하는 것을 함께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덧붙이고 싶은 것은 아까 李仁濟委員께서 지적하셨을 때 組合에서 해고된 사람이 해고효력을 다루는 組合員 지휘문제에 관해서 하나의 指針이 내려갔다가 잘못되었다고 뒤집어버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잘못된 것은 언제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現實的으로 타당성에 따라서 이것은 여러가지 유연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나는 李仁濟委員의 答辯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납득을 못합니다. 一般的 指針 一般的 基準으로써 處理指針에 내려갔다가 具體

的인 경우에 그것을 뒤집어 엮을 수 있고 그 一般的 指針보다는 具體的인 事件의 暗示가 法律解釋이 더 優位에 있다는 이런 기발한 얘기는 오늘 처음 듣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유연한 자세를 이 문제에 적용시켜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부득이 이것은 머지 않아 큰 문제가 터집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 조그마한 法解釋 하나를 가지고 여기에 연연해 가지고 國家的인 문제를 만들어낼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깊이 조사해 보시고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洙委員 지금 盧委員께서 적절히 지적하셨는데 새로운 指針도 다시금 하나 제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가지 면에서 볼 때 빨리 措置를 취해서 BCTOC가 罷業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勞動部에서 처리한 다음에 결과를 저희들이 報告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지난 번 監查期間동안에 地方勞動行政機關에 다니면서 누누히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또 그 쪽에서도 시인하고 是正하겠다는 答辯을 들었던 일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爭議發生申告書를 과연 行政機關이 반려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였습니다.

우선 물어 보겠는데 現行法下에서 爭議發生申告書가 들어 오면은 반려할 수 있습니까?

○勞動部次官 鄭東佑 爭議行爲申告書 이전에 爭議發生申告書가...

○李相洙委員 일단 들어 오면은 접수하고 행정지도하는 것은 別論으로 하고 그것을 반려할 수 있습니까?

○勞動部次官 鄭東佑 지금 勞動委員會의 行政指導를 통해서 勞動爭議發生申告對象이 아닌 것이 들어 오면은 行政指導次元에서 반려하면서 指導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相洙委員 그런데 行政指導次元에서 指導하면서 반려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반려하는 그런 것이 事實的인 행위로 그치고 法律的인 어떤 判定을 더 이상 할 필요없으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그런데 반려하는 자체가 爭議行爲의 어떤 不法性을 갖다가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行政指導次元에서 반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묻겠는데 法律上으로는 반려할 수 없습니까?

○**勞動部次官 鄭東佑** 勞動爭議申告書가 勞動委員會에 접수되면은 그 요건이나 대상이 되는지를 일단 형식 審査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상이 되지 않거나 勤勞者가 잘못라서 다른 방법으로 救濟받을 수 있는 것이 勞動爭議로 들어 왔으면 그것을 指導하는 입장에서 반려가 되었던 어떤 형태가 되었던 다시 돌려 주어서 바르게 權利救濟하는 절차를 취하도록 하는 것은 行政官廳으로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李相洙委員**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 申告書의 形式的인 큰 瑕疵가 있을 때 그것을 돌려 주면서 形式的인 瑕疵를 치유하라는 의미의 반려 아닙니까?

○**勞動部次官 鄭東佑** 그런 의미도 되고요 다른 救濟方法에 의해서 처리될 것이 잘못 오면 쉽게 말씀드려서 交通整理하는 차원에서요 그것이 勤勞監督官의 權利救濟次元이 勞動委員會에 잘못 들어오는 경우가 있겠고 勞動爭議發生申告로 안들어올 것이 아직 미숙해서 勞動組合이나 勤勞者들이... 그런 것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일일이 절차를 밟아서 하려면 시일도 많이 걸리고 委員들 소집해 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것보다는 우선 行政公務員이 審査를 해가지고 빨리 바른 길로 指導하는 입장에서 반려하도록 勞動委員會에서 實際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李相洙委員** 어떻습니까? 조정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따져서 조정의 대상이 아니다 하려면 實務的으로 반려하는 수가 있는 모양인데 그것이 行政指導次元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당신들이 爭議行爲를 하려고 해도 이것은 爭議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은 도로에 그치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예 이런 방법은 취하지 말고 다른 절차로 救濟받아라 이렇게 指導하는 것은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장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렇게 잘 활동되면은 좋은데 爭議行爲申告를 했느냐 안했느냐 冷却期間을 지켰느냐 안지켰느냐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실제로 문제가 되고 반려함으로써 爭議가 不法化되어가지고 拘束이 되고 있는 事例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勞動部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爭議發生申告書가 들어오면 일단 形式的으로 瑕疵가 없으면 일단 접수해라 그 다음에 行政指導는 별도의 차원에서 하라 그렇게 公文으로 回示를 내려보낼 용의는 없습니까?

○**勞動部次官 鄭東佑** 17日 全國勞動委員會 委員長과 常任委員의 教育을 시키기 위해서 全員을 소집해 왔습니다.

왜냐 하면 비단 지적하신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勞動委員會의 常任委員 一部가 많이 交替되고 전번 國政監査를 통해서 業務가 미숙하다고 얘기를 直接 間接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教育을 集中的으로 시키기 위해서 全國 中央과 13個 市·道 常任委員 全員을 지금 中央으로 소집해서 教育을 시키기 위해서 모았는데 그 때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여러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나 業務處理가 미숙한 것이나 애매 모호한 판단 이런 것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教育합니다.

그 때 이 얘기도 같이 지시하겠습니다.

○**李相洙委員** 최근의 江原産業 같은 경우도 地勞委에서 반려되어 가지고 異議申請해 가지고 中勞委에서 또 다시 다루어 가지고 또 다시 반려해서 行政訴訟하겠다는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行政訴訟化되면은 勞動行政機關이 사실상 정말 法解釋을 어떻게밖에 못하는가 하는 의미에서 勞動行政機關이 사실 우스개機關이 될 可能性이 있습니다.

다행히 앞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 是正한다고 하니까 教育을 통하거나 回示를 보내거나 앞으로는 爭議發生申告書가 形式的인

瑕疵가 없는 경우에 일단 접수하고 반려하는 일은 안하겠다 이것은 믿겠습니다.

○**勞動部次官 鄭東佑** 教育을 통해서 지시하겠습니다.

○**李相洙委員** 또 回示를 통해서도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勞動部次官 鄭東佑** 教育에서 직접 지시하면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반려의 사유가 되는 것을 무조건 접수해서 民願에 지장을 주는 그런 일은 없겠지마는...

○**李相洙委員** 분명하게 다시 한번 물었는데 조정대상의 여부를 따져 가지고 반려하는 문제가 앞으로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勞動部次官 鄭東佑** 조정대상이 되는 것을 業務가 미숙하다든지 濫權으로 덮어놓고 반려하는 횡포는 있어서는 안되지요.

○**李相洙委員** 아니! 조정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차지하고 그런 審査는 別論으로 하고 일단 반려 안하겠다 이것이 아닙니까?

○**勞動部次官 鄭東佑** 예.

○**李相洙委員**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長官께 물어야 되는데 次官께서도 長官하고 같이 부임하셔서 長官의 勞動行政方針을 잘 알고 계신다고 믿기 때문에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한 마디로 얘기해서 최근에 勞動部나 政府當局의 勞動政策을 보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참으로 혼동을 일으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묻고 싶은데 政府當局이나 勞動部の 勞使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勞動部次官 鄭東佑** 勞使問題는 어디까지나 勞使 當事者問題로서 自律的인 교섭과 自律的인 해결에 바탕을 둥니다.

그러나 政府役割이라고 하는 것이 勞使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法을 지키고 또 서로 대화하고 교섭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한다든지 調整者로서의 공정한 입장에 서서 勞使問題가 원만하게 해결되어 나갈 수 있는 그런 調整者役割을 함으로써 勞使關係에 있어서 政은 거기에 勞使政의 三位一體를 이루면서

勞使의 어떤 「물」을 지키는 「게임」속에 공정한 審判者와 調整者役割을 해나가는 것이 올바른 勞使關係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李相洙委員** 그러니까 勞動部에서는 勞使關係에 대해서 올바른 공정한 調整者 내지 中裁者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을 規制하려 들거나 간섭하지는 않겠다는 취지가 근본이라는 말씀이 아니십니까?

○**勞動部次官 鄭東佑** 조정이나 심판이라는 것이 政府機能이 그렇듯이 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때로는 規制 또 規制가 보호도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이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李相洙委員**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不法의 어떤 爭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다스리겠다 그것은 바꾸어 얘기하면 적법한 爭議에 대해서는 보호하겠다는 취지이신데요.

○**勞動部次官 鄭東佑** 그렇습니다.

○**李相洙委員** 최근에 대운電子 아시지요?

○**勞動部次官 鄭東佑** 예. 있습니다.

○**李相洙委員** 도대체 거기에 지금 公權力投入해 가지고 爭議를 강제로 해산했는데 거기에 不法的 요소가 뭐가 있습니까?

適法的인 爭議는 보호하겠다고 했으니까 물어보고 싶은데 그 會社의 勞使紛糾에 있어서 勞動者들한테 不法性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勞動部次官 鄭東佑** 대운전자는 同 勞組에서 賃金引上交渉이 결렬이 되자 今年 9月12日 爭議發生申告를 하고 9月28日 爭議行爲 贊反投票를 실시해서 否決되자마자 이틀후에 바로 再投票를 실시해서 爭議行爲를 決議한 후 그날부터 농성에 들어가서 사실상 罷業에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 10月5日 이 會社에서 職場廢鎖申告를 하고 서로 勞使對話를 수차 시도했지만 勞動組合이 이에 응하지 않아서 서로 대화가 되지 않고 또 어떨 때는 會社가 응하지 않고 그래서 대화가 안됨으로써 爭點이 된 合意點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 11月3日 이와같은 농성 勤勞者 33名을 해산하기 위해서 警察이 投入되어서 연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李相洙委員**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더라도

도 冷却期間을 준수했고 또 爭議發生申告도 다 했고 贊反投票를 거쳤고 하등의 勤勞者側의 法律違反行爲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勞動者들의 爭議行爲에 대해서는 보호를 하지 않고 公權力이 介入되어 가지고 무자비하게 해산하는데 보고 있었습니까?

○**勞動部次官 鄭東佑** 具體的인 내용은 個別事例이기 때문에 擔當局長으로 하여금 答辯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勞政局長입니다.

대운전자 문제 질의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세한 拘束事由 등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일음 職場閉鎖中에 長期間 이 직장을 접거 농성한 것도 不法行爲다 이렇게 보아 집니다.

罷業이라는 것은 勞務提供의 거부에 그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간혹 罷業期間中에 직장을 접거하거나 이런 事例들이 많이 발생합니까만 이 會社는 勞組側의 爭議行爲에 대항을 해서 會社側에서 10月5日 職場閉鎖를 했는데 그 이후 職場閉鎖라는 것은 「록아웃」이기 때문에 전부 退去시키는 措置입니다만 계속해서 장기간 접거 농성을 하고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태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具體的인 拘束事由 등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李相洙委員** 이 사람들이 罷業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會社가 職場閉鎖를 후에 했지 않습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예. 그렇습니다.

○**李相洙委員** 그러면 局長님께서 職場閉鎖를 하면 일단 罷業勤勞者가 罷業場所에서 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法的으로 그렇습니다. 退去해야 합니다.

○**盧武鉉委員** 爭議는 事業場에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가서 하지요?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職場閉鎖라는 것은 職場正門을 봉쇄해서 사람을 出入을 금지하는 使用者側의 대항행위이기 때문에 原則的으로 退去해야 합니다.

○**盧武鉉委員** 罷業은 事業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디에 가서 합니까?

○**李相洙委員** 그리고 설사 그 안에 있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職場閉鎖를 하는 마당에는 業務妨害는 될 리가 없습니다. 業務를 하고 있으면 妨害가 되겠지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다섯 명이 拘束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유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李相洙委員** 그래서 제가 具體的인 내용을 가지고 따지자는 얘기는 아닌데 全般的인 勞動部의 勞政政策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現代重工業처럼 勞動爭議를 할 수 없는 形式的인 法違反이 있는 경우도 지켜 보면서 상당히 公權力介入을 자제했던 政府가 최근에는 조금만 長期的인 罷業을 하면 適法 不法 따지지 않고 무조건 警察力을 동원해서 해산시킵니다.

政府나 勞動部의 勞政政策에 상당히 인식의 변화가 있다는 감을 받습니다.

專門的인 용어를 쓴다면 6·29이후에 한 때 民主化가 되고 勞動者들의 어떤 욕구가 강하게 분출되니까 한 때는 政府가 양보해 가지고 開放主義的인 政策을 펴왔던 것처럼 보이는데 최근에 더 이상 양보못하겠다고 하면서 강경하게 彈壓政策을 다시 펴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그렇게 彈壓政策을 펴서 勞使間의 어떤 協力關係가 이루어지고 經濟發展에도 도움이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의문입니다.

지금 잘 아는 바와 같이 現代自動車 경주에 과거에는 自動車가 出庫됐을 때 合格率이 70%된다고 하는데 최근에 와서는 40%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것은 企業의 손해입니다. 요즘 상당히 勞動者들의 일이 技術的으로 高度化되어 가고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크게 보아서 企業도 손해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強壓的으로 억눌러서 단순노동을 시키는 企業도 이제는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自發的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협력을 구하면서 양보하는 정신으로 서로 관계를 맺어야만이 國家經濟發展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勞動部나 政府當局이 다시금 彈壓局面으로 돌아갈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것은 너무 지나치게 企業家들의 논리에 쉽게 동조해 버린 것이 아닌가 사실 企業으로 보아서 貨金引上이 많이 되니까 과거에 정말 過保護를 받고 있으면서 輸出을 하다가 압박있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企業도 어려운 점이 있을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과거처럼 政府가 過保護해 주기를 바라면서 계속해서 政府의 보호를 받아가면서 低貨金 政策을 펴 나가면서 輸出을 하겠다 이런 안이한 사고방식에 젖어서 마치 아까도 이노 同僚委員이 물어보니까 勞使紛糾로 인해서 막대한 어떤 손실이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리시면서 말씀하시는데 물론 손실이 있는것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KDI에서 나온 어떤 損失額이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算出方法입니다. 따라서 너무 企業家들의 논리에 쉽게 政府가 따르지 말고 이 企業家나 勤勞者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균형있게 이렇게 좀 유연하게 勞動政策을 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정말 저희들이 과연 政府에 勞動政策이 있느냐 이것을 의심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勞動部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할 것 같고 저는 그와 같은 政策의 전환이 과연 우리 經濟에 플러스 되겠느냐 시는 진정으로 勞使平租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으로서 사실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次官께서 아까 지난번 12日날 勤勞者大會에 대해서 全勞聯은 不純勢力이다 이렇게 규정을 짓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근거를 물어보겠습니다. 도대체 全勞聯이 왜 不純勢力입니까?

○**勞動部次官 鄭東佑** 全勞協이 不純勢力이라는 표현보다도 全勞協을 주도하는 人士들이 과거에 不法紛糾를 주도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集會에 필요한 油印物을 살포를 했는데 그 油印物內容을 보면 그야말로 자기네들 組織을 위한 내용뿐만이 아니고 다분히 鬭爭의이고 여러가지 勞動關係法

에 抵觸되는 그런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고 또 그들이 結成하려는 團體도 現行法으로서는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團體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李相洙委員** 우선 結成하려고 하는 團體가 不法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12日날 大會는 全勞聯의 結成만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닙니다. 勞動惡法의 철폐를 요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勤勞者들이 꼭 貨金引上鬭爭만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자신들이 勤勞條件에 제약을 가하는 勞動法에 대해서 請願도 하고 그 改正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勤勞者들의 그런 行爲는 政治的인 行爲입니다. 勤勞者들이 자기들의 어떤 生活條件과 관련해 가지고 政治的인 行爲를 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勤勞者들의 그와 같은 行爲는 政治的인 行爲다 이렇게 규정하시는데 사실 次官님께서 꼭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勞動運動에 대한 어떤 시각이 상당히 경직되어 있다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全勞協이나 지난번 12日날 勤勞者大會를 주최했던 사람들이 과거에 兇暴的인 示威를 한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前過者는 그러면 한마디로 계속 前過者입니까? 과거에 그랬다 하더라도 이번만큼은 정말 다르게 하겠다 示威도 안하겠다 단순히 平和的인 集會만 하겠다 그리고 學生들의 출입은 금지시키겠다 이렇게 우리한테 요구하면서 정말 集會를 보장해 주십시오 이렇게 와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不穩油印物 얘기 하셨는데 사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 주최하는 사람하고 關聯性이 없습니다. 누가 뿌렸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가지 여쭙어 보고 싶은데 이번 集會를 원천봉쇄할 때 勞動部가 그 審議에 참여했습니까?

○**勞動部次官 鄭東佑** 그것은 治安當局에서 어떠한 治安目的에 의해서 該當法律에 의해서 취한 조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조치는 勞動部로서도 필요한 조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李相洙委員**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번에 그와 같은 集會를 원천봉쇄할 때 勞動部가 政府協議次元에 참여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勞動部次官 鄭東佑** 그것은 治安當局判斷에 의한 것입니다.

○**李相洙委員** 참여 못 했습니까?

○**勞動部次官 鄭東佑** 예.

○**李相洙委員** 그런데 참 아쉬운 것은 그런 것은 勞動部가 指導力을 발휘해서 內務部나 이런 다른 行政機關에 얘기를 해 가지고 건전한 民主的인 集會文化를 형성하고 勞動運動을 過激化시키지 말고 온건하게 유도해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막지 말고 한번 두고 보자 昨年에도 延大에서 했던 集會 있지 않습니까? 政府에서 平和的으로 허용하니까 꼭 걸어서 平和的으로 集會 끝냈지 않습니까? 그런 예도 있고 아까 同僚委員이 얘기했지만 全教組集會도 平和的으로 끝났고 그렇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勞動部에서 「리더십」을 발휘해 가지고 그런 경우에 政府에 建議할 수 없습니까?

○**勞動部次官 鄭東佑** 아까 李康熙委員님께서 물으실 때에 11月5日 勞總의 集會와 11月12日 全勞協의 集會를 비교해서 물으셨기 때문에 비교해서 이야기를 한 결과 이것은 合法的인 團體가 질서있게 集會許可를 받아서 한 集會이고 12日 全勞協의 集會는 우리로서는 인정한 團體가 아닌 그와 같은 集會였다 하는 比較的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방금 李委員님께서 조금 제 이야기를 曲解하신 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勞動部가 그 集會도 강력하게 建議해서 왜 보장하게끔 안 했느냐 하는 말씀은 그 全勞協自體가 法으로서 특히 勞動部는 인정하는 團體가 아닙니다. 그리고 韓國勞總이 合法的인 團體로서 勞動法改正이나 賃金引上이나 勤勞條件改善 등등 모든 것을 며칠전에 大會를 열어서 주장했는데 全勞協이 인정된 團體도 아니면서... 그것뿐만 아니고 油印物 보십시오. 저희들이 상당히 용납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도 많이 있어서 後援團體라든지 그 내용에 보면 순수한 勞動者만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거기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고 또 그것은 저희들이 볼 때 勞總의 集會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럴 뜻이 없었습니다.

○**李相洙委員**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간단히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全勞協이 公認된 團體가 아니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法的으로 不法化된 團體도 아닙니다. 그런 任意團體가 集會를 열 수가 있습니다. 集示의에만 위배 안되면 됩니다. 저는 정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勞動者들이 모처럼 온건하게 平和的으로 公開的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펴려고 하는데 오히려 억압해 가지고 勞動運動을 陰性化시키고 過激化시키고 地下로 沈潛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 社會에 根本的인 어떤 위험요소로 심화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걱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현재 성장 추세에 있는 勞動運動의 어떤 힘으로 보아서 政府가 탄압하는 것이 能事가 아니라고 오히려 탄압을 하는 것이 國家發展을 위해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는 의미에서 根本的으로 勞動政策에 대한 再考가 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勞動部가 能動的으로 政府當局에 얘기해서 政策을 바꾸는 데 과감한 노력을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勞動部次官 鄭東佑** 저희들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李委員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制度圈 韓國勞總이 있고 韓國勞總이 全體勤勞者소리를 대변해서 그 일주일전에 大的인 集會를 열어서 여러가지 政府에 建議할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全勞協所屬 소위 民主勞組單位勞組도 韓國勞總傘下에 있는 勞動組合들입니다. 그 다음에 韓國勞總으로 하나로 묶이어서 건전하고 힘있는 또 合法的인 勞動運動을 하면 政府도 방금 말씀대로 지원도 하고 보호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조직이 두 갈래 세 갈래로 나누어져서 그와 같이 아직 인정을 받지 못한 團體가 자기네들이 소속돼 있는 既存團體를 御用視하고 第2 第3의 그런 集會를 절자없이 갖는다 하면 그것을 다 어떻게 권유하고 보장하고 보호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정리를 해서 어디까지나 合法的으로 순수한 건전한 勞動運動을 하는 團體를 보호하는 것이 政府의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洙委員 자꾸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새로 改正된 集示法을 보면 集會 및 示威를 禁忌하는 규정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集團의인 暴行 脅拍 損壞 防火 등으로 公共의 安寧秩序에 直接的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集會 또는 示威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 全勞聯이 任意團體라고 하더라도 그런 團體가 이 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集會를 하는데 勞動部가 그것을 탄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勞動部次官 鄭東佑 그 集會에 대한 許可與否는 治安當局에서 검토 판단할 일이고 勞動部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勞動運動의 보호 보장이라는 것은 合法的이고 건전하고 法을 지키는 團體가 勤勞者를 위한 참소리를 하는 거기에 보호가치가 있는 것이지 두 갈래 세 갈래로 法을 지키지 않고 任意的으로 團體를 만들어서 集會를 한다고 그래서 다 따라다니면서 보호할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李相洙委員 하여튼 입장에 차이가 있으니까 제가 더이상 논쟁은 벌이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운電子 이 「케이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勞使間의 平和的인 어떤 仲裁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할 생각이 계신가요?

○勞動部次官 鄭東佑 예. 알아보겠습니다.

○李相洙委員 그 결과를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勞動部次官 鄭東佑 약속을 드립니다. 대운電子하고 釜山의 BCTOC하고 그 두件은 빠른 시일안에 저희들이 具體的으로 검토해서 報告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李相洙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令培 더 質疑하실 委員 계십니까?

○李仁濟委員 예.

○委員長 金令培 李仁濟委員 發言하십시오.

○李仁濟委員 質疑가 아니고 오늘 常任委가 開會되기 전에 野黨幹事들로부터 馬山 昌原 地域勞使紛糾真相調查團構成을 위해서 協議가 있었습니다.

民正黨側에서 의견조정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常任委가 계속 되면서 이 真相調查團構成에 관한 決議案이 發議되지 못한 가운데 오늘 豫決委도 접치고 이래서 현재 議決定足數가 되지 않아서 결국 오늘 常任委에서 이 문제를 타결하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株式會社 통일 勞動組合 그리고 소위 馬·昌勞聯 이 두 곳에 대해서 10月末에서부터 11月初에 이어 있었던 公權力的 투입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11月1日과 2日 2萬餘名에 달하는 地域勤勞者들이 連帶로 罷業한 우려할만한 사태가 있었고 따라서 우리 勞動委員會로서는 그 사태의 진상을 알아보고 政治的인 對策을 마련하는 것이 必續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委員長님께서 조만간에 4黨幹事會議를 다시 소집해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委員長 金令培 예. 알겠습니다.

오늘 會議開議 直前 또 중간의 停會時間 幹事會議에서 이 문제가 원만히 합의 타결되기를 委員長으로서는 희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李仁濟委員께서 여러가지 유감의 뜻도 표시한 점 이해가 갑니다.

李仁濟委員께서 委員長에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馬·昌地域의 勞動界事態進展과 적절한 시간에 4黨幹事會議를 소집해서 충분히 協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韓光五委員 이 문제는 우리가 좀 정리 못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李仁濟委員께서도 얘기했고 또 金炳龍委員도 지금 자리에는 안 계십니다만 아까 우리 3野黨이 馬·昌地域의 勞使紛糾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한 勞動委 自體로서의 調查團을 구성하자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왕이면 民正黨도 같이 참여를 해서 합의를 해 가지고 원만하게 調查團을 구성하자 해 가지고 이야기가 진전이 되었습니다. 좀 時間的인 여유를 自體內의 조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요청에 의해서 시간을 드렸는데 결국 지금 與黨側의 委員님들이 계시지 않고 그래서 현재 同 調查團을 구성하기에는 좀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적에 참으로 섭섭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議政生活하는 데 있어서 서로의 입장과 또 이해를 구하고 또 인내하고 대화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이 이런 식으로 무산되고 또 時間적으로 불적에 지리한 처지에 놓인다 하는 것은 앞으로의 우리 勞動委員會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유감된 처사다 하는 것을 오늘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입장을 밝힙니다.

따라서 처음에 4黨幹事들이 이야기가 되었던 바와 마찬가지로 馬·昌地域의 勞使紛糾真相을 조사하기 위해서 우리 勞動委員會 次元에서 調查團을 구성해야 된다는 基本的인 입장을 다시한번 우리가 이자리에서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이 결정을 우리가 관철하기 위해서 빠른 시일내에 4黨幹事會議를 열어 주실 것을 아울러서 委員長께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金東仁委員 會議始作 直前に 4黨幹事會議에서 아마 있었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오늘 主要懸案 勞動問題報告書에 의하면 통일産業 問題도 해결이 되었고 또 기타 馬·昌地域의 勞動組合問題가 여기 報告書에 보면 대충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 幹事나 또는 우리 委員들이 좀 불 일이 있어서 갔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아서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또 幹事會議를 통해서 적절히 日程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명이 아니라 한 마디는 남기고 會議를 해야 안되겠다 혼자 있기 때문에 한마디는 남겨야 되겠다고 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委員長 金令培 잘 알겠습니다.

韓光玉委員님께서 委員長에게 요청한 내용은 李仁濟委員의 말씀과 동일하기 때문에 아까 李仁濟委員 要請 答辯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더 質疑하실 委員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여러 委員님들 그리고 次官 이하 勞動部 幹部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會議은 특별히 서울地下鐵公社 地域

醫療保險組合 株式會社 통일 및 馬·昌地域 勞動紛糾事件을 비롯한 懸案問題를 報告 받고 또 여러 委員님들의 質疑 또 答辯 이렇게 있었습니다.

제가 委員長席에 앉아서 質疑와 答辯 내용을 듣건대 오늘 주로 質疑한 내용은 앞으로 勞使紛糾에 있어서 勞動政策의 主務部인 勞動部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機能을 발휘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主宗입니다. 公權力 다시 말하면 警察力에 의존해 가지고는 안되겠다 勞動部가 더 적극적으로 勞使間에 啓導하고 지도해서 公權力이 아닌 방법으로 紛糾問題를 해결하고 勞使關係가 보다 더 안정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公權力을 개입해서 수습한다는 얘기는 物理的인 힘에 의해서 잠시 침묵이 강요될 뿐이지 根源的인 해결은 될 수가 없다 결과적으로 문제의 해결보다는 그로 인해서 새로운 문제를 많이 양산하게 된다 그래서 언젠가는 또 다시 감당하기 힘든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다분히 있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또 그런 뜻에 委員長인 本委員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勞動部 機能이 발휘돼서 公權力이 아닌 啓導와 지도로써 勞使關係가 안정되고 産業平和가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는 마음에서 勞動部에서는 여러 委員님들의 質疑 내용을 많이 참고해서 발전되어지기를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會議은 이것으로써 散會를 宣布합니다.

(21時10分 散會)

○出席委員

金 令 培	金 東 仁	南 載 熙
盧 仁 煥	李 康 熙	鄭 宗 澤
李 相 洙	韓 光 玉	盧 武 鉉
李 仁 濟	金 炳 龍	

○出席專門委員 및 立法審議官

專 門 委 員	卓 英 鎭
立 法 審 議 官	宋 芳 燮
立 法 審 議 官	崔 炳 億

○出席政府委員

勞 動 部	
次 官	鄭 東 佑

勞政局長
勤勞基準局長
産業安全局長
職業安定局長
職業訓練局長
勞動保險局長

具金尹孫徐曹
然龍錫元相舜

春昭春植善文